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민호 예산분석관
박승호 예산분석관
이석원 예산분석관
남명진 예산분석관

지원 | 김병규 예산분석관보
김정선 행정실무관
홍지훈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3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

II. 주요 사업 분석 / 14

<일반회계>

- 1. 정부출자수입 연례적 과소계상 및 추경재원 미활용에 따른 문제 14
- 2.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등 19
- 3.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예산 집행 부진 28
- 4. 예비비를 통한 자율기구 설립의 연례화 문제 31
- 5.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이전·신축계획 수립 필요 37
- 6. 열린재정 내 생성형 AI ‘열린질문’ 서비스 관련 문제점 41
- 7.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집행 부진 49
- 8.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52
- 9. 정책연구비 집행 관련 문제점 54
- 10. 재정사업평가 관련 문제점 59
 - 10-1. 재정사업심층평가 운영상 문제점 60
 - 10-2. 기금평가제도 관련 개선 필요사항 66



CONTENTS

- 11.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현실적인 교육 목표 수립 필요 78
- 12.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관련 문제점 82
 - 12-1.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연계적 이·전용 문제 83
 - 12-2.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일시차입비용 완화 방안 마련 필요 87
 - 12-3.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국고금 운용수익 세외수입 계상 필요 95

〈공공자금관리기금〉

- 13. 對러시아 경험차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회수 지연 99
- 14.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운영상 문제점 107
- 15. 매년 급증하는 국고채 이자비용 관리 필요 118
- 16. 지방채 인수 관련 문제점 124

〈국유재산관리기금〉

- 17.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적정 수준 관리 필요 131
- 18.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후 미흡한 특례에 대한 점검 필요 136

〈대외경제협력기금〉

- 19. 대개도국차관사업 분석 143
 - 19-1.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과다 등 개선 필요 145
- 20. 정책연구용역 수익계약 과다 및 비공개 관행 개선 필요 150
- 21. 대개도국차관의 미수납액 관리 강화 필요 155

〈복권기금〉

- 22.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안 조속 마련 필요 159
- 23. 복권기금 교부사업 불용액 정산·반납 관리 개선 필요 166

2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정소요 추계 강화 필요 17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분석 176

25-1.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178

25-2. 안정적 보증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182

〈외국환평형기금〉

26. 외국환평형기금 분석 188

26-1. 외환시장 대응역량 제고 노력 필요 189

26-2. KIC 위탁자산 수익 회수 관련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필요 194

26-3. 원화표시 외평채의 조달비용 절감 노력 필요 200

[국가데이터처]

I. 결산 개요 / 207

1. 현 황 207

2.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0

II. 주요 사업 분석 / 212

〈일반회계〉

1. 2025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 상승 문제 등 212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확대 방안 모색 필요 222

3. 통계조사 고용부담금 걱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227

[국세청]

I. 결산 개요	235
1. 현 황	235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9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0
II. 주요 사업 분석 / 241	
〈일반회계〉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제재대상 정합성 제고 필요	241
2. 징수위탁수수료 성과관리 및 위탁대상 조정 필요	247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체납자에 대한 상환능력별 단계적 징수관리 필요	253
4. 납부고지서 발송 예산 산출기준 정교화 및 비용 절감 관리 필요	259
5.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실효성 재검토 필요	265
6. 체납관리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순증 회수실적 마련 필요	270

[관세청]

I. 결산 개요 / 279	
1. 현 황	279
2.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83

II. 주요 사업 분석 / 284

〈일반회계〉

- 1. 과태료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284
- 2. 신규 통관감시장비 도입 이전 사전검증 절차 강화 필요 289
- 3. 해외통관애로 국가별·유형별 관리체계 구축 필요 294
- 4.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 목표시간 단축 및 복구체계 강화 필요 300

[조달청]

I. 결산 개요 / 309

- 1. 현 황 309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14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15

II. 주요 사업 분석 / 316

〈조달특별회계〉

- 1. 조달청 세입예산 관련 문제점 검토 316
 - 1-1. 시설계약사업수입 장기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필요 316
 - 1-2.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조정 필요 321
- 2. 비축창고 재건축 집행관리 강화 및 유사 문제 발생 방지 필요 324
- 3. 타소비축 품목 재조정 검토 및 집행률 제고 필요 330
- 4. 필리핀 결핵진단 ODA 사업의 KOICA 이관에 따른 성과 연계관리 필요 336
- 5.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가격관리 및 의무구매 범위 검토 필요 341
- 6. 혁신제품 구매 및 임차 관련 분석 350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2조 5,019억 9,600만원이며, 583조 9,364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5.6%인 499조 7,209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81조 5,199억 8,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조 6,955억 9,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487,121,193	487,121,193	568,574,729	484,359,150	81,519,987	2,695,591	8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380,803	15,380,803	15,361,760	15,361,760	-	-	100.0
합계	502,501,996	502,501,996	583,936,489	499,720,910	81,519,987	2,695,591	85.6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조 5,230억 6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39조 9,93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5,258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 기획재정부는 2026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으나, 2025회계연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각종 결산 서류의 제출은 모두 분리 이전의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하의 분석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시점이나 맥락에 따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44,078,021	41,523,006	39,993,125	4,081	1,525,800	9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합계	44,078,021	41,523,006	39,993,125	4,081	1,525,800	96.3

자료: 재정경제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95조 1,510억 3,200만원이며, 854조 4,393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853조 1,756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1조 2,637억 2,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304,829,990	339,726,285	339,726,285	649,826,050	649,628,084	197,966	-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3,481,995	3,482,355	3,482,355	6,529,280	5,614,184	915,096	-	86.0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2,599,717	14,099,349	14,085,998	13,351	-	99.9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35	2,272,735	2,272,735	4,189,338	4,052,551	136,787	-	96.7
복권기금	8,868,492	8,978,647	8,978,647	9,103,249	9,102,721	528	-	1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04	801,904	801,904	690,366	690,366	-	-	100.0
외국환평형기금	140,289,389	137,289,389	137,289,389	170,001,746	170,001,746	-	-	100.0
합계	463,246,222	495,151,032	495,151,032	854,439,378	853,175,651	1,263,728	-	99.9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495조 3,315억 4,600만원이며, 이 중 93.7%인 464조 996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1,703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조 7,727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304,829,990	339,726,285	339,726,285	333,812,184	-	5,885,347	98.3
국유재산관리기금	3,481,995	3,482,355	3,642,640	3,408,321	155,036	37,502	93.6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2,608,818	2,674,298	12,157	49,452	102.5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35	2,272,735	2,283,863	2,277,146	3,110	243,279	99.7
복권기금	8,868,492	8,978,647	8,978,647	9,102,721	-	2,502	10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04	801,904	801,904	690,366	-	12,160	86.1
외국환평형기금	140,289,389	137,289,389	137,289,389	112,134,565	-	18,542,497	81.7
합계	463,246,222	495,151,032	495,331,546	464,099,602	170,303	24,772,739	93.7

자료: 재정경제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조 8,661억 3,100만원(△0.7%)이 감소한 383조 2,888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0조 4,871억 4,900만원(11.8%)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332,112,585	374,922,956	372,028,244	△2,894,712	39,915,659
기금	10,689,087	11,231,996	11,260,577	28,581	571,490
합계	342,801,672	386,154,952	383,288,821	△2,866,131	40,487,149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조 2,146억원(△7.5%)이 감소한 39조 5,898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3,708억 2,300만원(6.4%)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1,733,929	4,936,693	1,924,421	△3,012,272	190,493
기금	35,485,115	37,867,774	37,665,445	△202,329	2,180,330
합계	37,219,044	42,804,467	39,589,866	△3,214,601	2,370,823

자료: 재정경제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기획재정부의 자산은 550조 5,429억원, 부채는 1,216조 5,790억원으로 순자산은 △666조 361억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515조 1,795억원, 유·무형자산 35조 1,360억원, 기타자산 2,274억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5조 4,938억원(9.0%) 증가하였다. 이는 지분증권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44조 5,454억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215조 5,765억원, 총당부채 753억원, 기타부채 9,272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29조 4,244억원(11.9%) 증가하였다. 이는 국채의 증가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129조 4,852억원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505,429	5,050,491	454,938	9.0
Ⅰ. 금융자산	5,151,795	4,706,340	445,454	9.5
Ⅱ. 유·무형자산	351,360	342,806	8,554	2.5
Ⅲ. 기타자산	2,274	1,344	930	69.2
부 채	12,165,790	10,871,546	1,294,244	11.9
Ⅰ. 차입부채	12,155,765	10,860,913	1,294,852	11.9
Ⅱ. 총당부채	753	756	△3	△0.4
Ⅲ. 기타부채	9,272	9,877	△605	△6.1
순 자 산	△6,660,361	△5,821,055	△839,306	△14.4
Ⅰ. 기본순자산	△9,625	△9,625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7,703,432	△6,734,532	△968,900	△14.4
Ⅲ. 순자산 조정	1,052,696	923,102	129,594	14.0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배분비용 - 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8조 9,478억원(119.8%) 증가한 16조 4,174억원이며, 이는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원가 등의 증가로 프로그램총원가가 2조 6,122억원(6.6%) 증가한 점 등에 기인한다.

총 7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29조 6,625억원), 차입금등원금상환 프로그램(1조 5,06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51억원과 경비 79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분비용은 이자비용 8,998억원, 기타국가운영비용 8,56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01,157	138,020	63,137	45.7
가. 프로그램 총원가	423,084	396,962	26,122	6.6
나. 프로그램 수익	221,927	258,942	△37,015	△14.3
II. 관리운영비	1,948	1,778	170	9.6
III. 비배분비용	19,250	19,844	△594	△3.0
IV. 비배분수익	58,180	84,945	△26,765	△31.5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64,174	74,696	89,478	119.8
VI. 비교환수익 등	△17,798	△21,541	3,743	17.4
VII. 재정운영결과(V-VI)	181,972	96,238	85,735	89.1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82조 1,055억 4,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66조 361억 4,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3조 9,306억 200만원(△14.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8조 1,972억 3,800만원 감소,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2조 9,594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8조 6,927억 7,2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7조 8,448억 5,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36조 5,376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조 2,194억 4,4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3,980억 200만원, 기타순자산의 증가 11조 3,419억 6,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582,105,541	△529,657,786	△52,447,755	△9.9
II. 재정운영결과	18,197,238	9,623,766	8,573,472	89.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8,692,772	△74,125,397	△4,567,375	△6.2
IV. 조정항목	12,959,408	31,301,408	△18,342,000	△58.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666,036,143	△582,105,541	△83,930,602	△14.4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의현금은 9조 996억원이고, 기말의현금은 6조 980억원으로 기초 대비 3조 16억원(33.0%)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10조 7,355억원 감소하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5조 1,387억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32조 8,726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7,355	-	△1,107,355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1,387	-	△251,387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28,726	-	1,328,726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30,016	-	△30,016	-
V. 기초의현금	90,996	-	90,996	-
VI. 기말의현금(IV + V)	60,980	-	60,980	-

자료: 재정경제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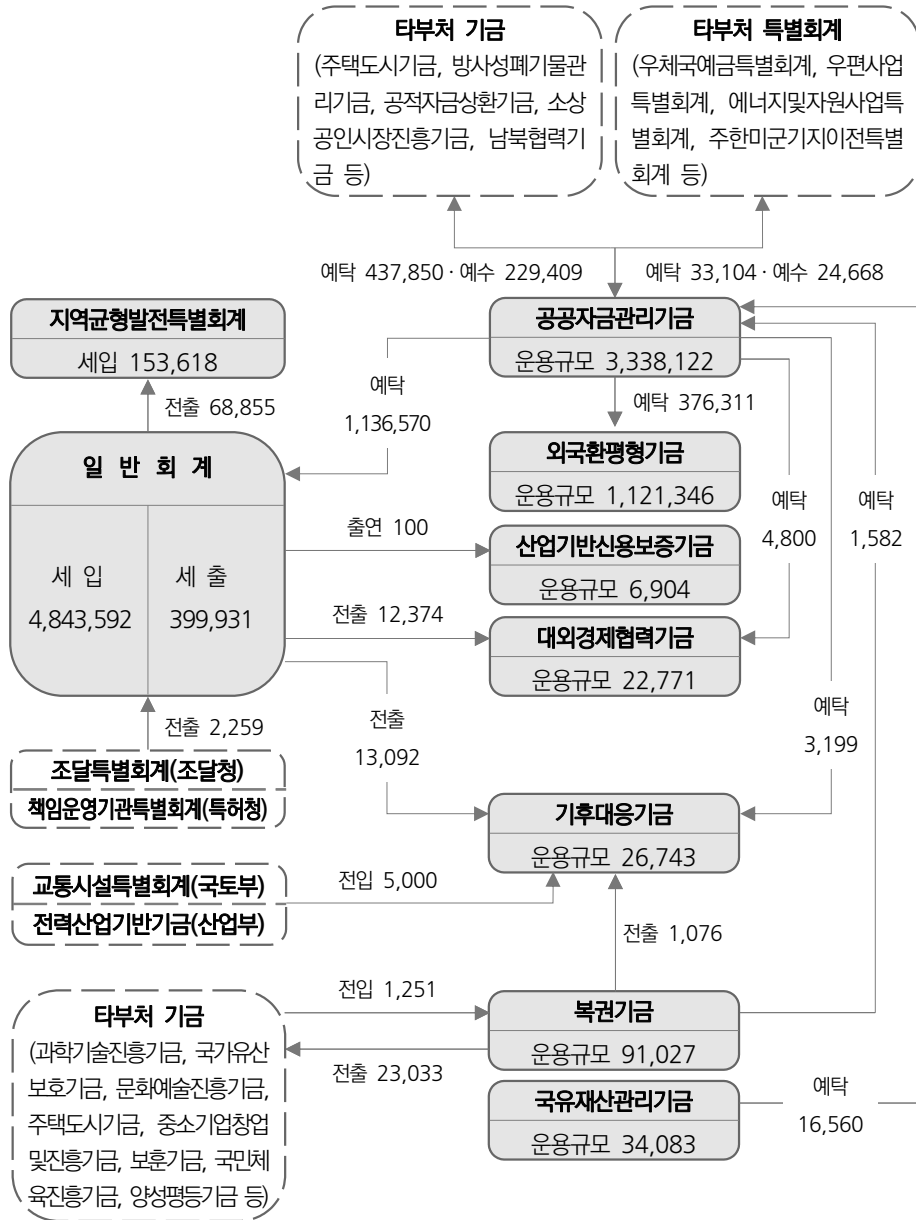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주요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6조 8,855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2,374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3,092억원이 각각 전출되었다. 일반회계는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로부터 2,259억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13조 6,570억원을 예수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에 각각 37조 6,311억원, 4,800억원, 3,199억원을 예탁하였으며, 타 부처 소관 기금으로 43조 7,850억원을 예탁하였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등으로부터 각각 1조 6,560억원, 1,582억원을 예수받고,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22조 9,409억원을 예수받았다. 한편, 복권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타 부처 소관 기금 등으로 2조 3,033억원을 전출하고, 1,251억원을 전입받았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예비비, ② 국고채이자상환, ③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용자)(ODA) 사업 등이 있다.

예비비는 2024년도 예비비 규모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목적예비비 2조 4,000억원이 감액(4조 8,000억원→2조 4,000억원)되었고,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5,000억원이 감액(30조 4,779억원→29조 9,779억원)되었으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용자)(ODA) 사업은 사업 관련 사전절차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50억원 감액(8,002억원→7,752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출자 등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은 “향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집행되는 여신이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반에 균형감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재정사업 평가 사업은 “성과가 저조한 재정사업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기획재정부는 ①물가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②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관리**, ③新대외경제전략 추진 및 수출 다변화 지원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④주력산업 맞춤형 지원과 신산업·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정부출자수입의 과소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확정된 초과 징수분을 2025년 제2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국고채 이자비용이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둘째, (주)NXC를 비롯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수입이 계획 대비 크게 저조하여 세외수입 3.9조원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2025년 연말에 발생한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개인투자용 국채의 2025년 발행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미달하였으며,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요 촉진을 위해 2026년부터 가산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였으나, 기존 발행분의 중도상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2022년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이 50% 증가하였고, 매년 그 증가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대규모 순발행 기조 지속 및 단기간 내 대규모 차환 수요 집중이 국고채 조달금리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채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

1

정부출자수입 연례적 과소계상 및 추경재원 미활용에 따른 문제

가. 현 황

정부출자수입¹⁾은 정부의 공공기관 등(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출자나 그 외 출자 형태의 투자행위를 통해 반대급부로서 정부가 수취하는 배당수입 등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454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조 7,126억원이며 이를 전액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본예산	추경
정부출자수입	1,045,447	1,045,447	1,712,632	1,712,632	1,450,094	1,450,094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출자수입의 과소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출자수입의 추계 시 주요 출자기관의 최근 배당 실적, 당기순이익 전망,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면 모두 본예산 대비 큰 폭의 초과징수가 발생하였다. 2024년에는 본예산 9,823억원 대비 6,210억원(63.2%)을 초과한 1조 6,033억원, 2025년에도 본예산 1조 454억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52-521

원 대비 6,672억원(63.8%)을 초과한 1조 7,126억원이 징수되어 본예산 대비 약 1.6배 수준의 초과 징수가 2년 연속 발생하였다.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2022	858,200	1,682,597	1,682,597	1,682,597	1,682,597	100.0	100.0
2023	1,078,749	1,078,749	1,078,749	941,196	941,196	87.2	100.0
2024	982,344	982,344	982,344	1,603,347	1,603,347	163.2	100.0
2025	1,045,447	1,045,447	1,045,447	1,712,632	1,712,632	163.8	100.0
2026.5	1,450,094	1,450,094	1,450,094	2,243,043	2,243,043	154.7	100.0

주: 2026년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산업은행 정책모펀드 회수자금(249,400백만원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5년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액 6,672억원의 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에서 본예산 대비 4,096억원(예산 대비 142.4%)이 초과 수납되는 등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 5개 기관에서만 6,506억원이 발생하여 전체 초과수납액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업은행 단독으로 전체 초과수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주요 기관별 초과수납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본예산	실제수취액	초과액	초과율	전체초과액 대비 비중
한국산업은행	2,876	6,972	4,096 ¹⁾	142.4	61.4
한국수출입은행	1,648	2,801	1,153 ²⁾	70.0	17.3
중소기업은행	4,309	5,053	744	17.3	11.2
한국주택금융공사	293	557	264	90.1	4.0
한국전력공사	-	249	249	순증	3.7
5개 기관 계	9,126	15,632	6,506	71.3	97.5
일반회계 전체	10,454	17,126	6,672	63.8	100.0

주: 1. 한화오션 대손충당금 및 주식 손상차손 환입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

2. 한화오션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정부출자수입의 구조적 과소편성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① 재정경제부는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에 대해 전체 배당수입 예상 총액 외 실제 배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명, 기관별 추정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구체적 산출근거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며, ②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9,0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조 72억원³⁾이 발생하는 등 일부 기관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며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추정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2025·2026년 4월말 기준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및 추경	4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초과수납
2025	1,045,447	1,712,632 ¹⁾	667,185
2026	1,450,094	2,243,043 ²⁾	792,949

주: 1) 한화오션 대손충당금 및 주식 손상차손 환입 등에 의한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증가가 징수결정액 증가의 주요 사유

2) 산업은행 정책모펀드 회수자금(249,400백만원)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2026년에도 본예산 1조 4,501억원 대비 7,929억원 초과한 2조 2,430억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 정부출자수입의 과소편성이 올해에도 반복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정부출자수입의 추계 시 주요 출자기관의 최근 배당 실적, 당기순이익 전망,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향후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기관별 배당수입 예상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세입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배당수입 예상액은 통상 '기관별 당기순이익×지분율×최근 3년간 배당성향'으로 산출하며, 기관별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지분율 및 연도별 배당성향은 매년 5월 국회보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설명이나, 차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기관별 추정 당기순이익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화오션 대손충당금 및 주식 손상차손 환입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

둘째, 확정된 초과 징수분을 2025년 제2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국고채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2025년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제2회 추경안은 2025년 6월 2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7월 4일 의결되었다.

정부는 제2회 추경안 편성을 위해, ①국고채 추가발행 22.7조원, ②기금 여유재원 및 자체 채권발행 2.5조원, ③지출 구조조정 5.3조원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였으며, 한국은행 잉여금의 초과 수납분 1.2조원, 일반회계 세제잉여금 0.2조원은 제1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정부는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분을 제1회 및 제2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제1회 추경안은 2025년 4월 21일에 제출되었는바, 추경안의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초과수납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나 제2회 추경안의 경우, 6월 23일에 제출되었으므로 편성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분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지 않은 것은 세입경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변동 (세출 증액)	20.2 (14.9)	- 국고채 추가발행	22.7
		- 차입금 ⁵⁾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감축 별도)	0.1 (△3)
- 세입 경정	10.3	- 기금 여유재원 및 자체 채권발행	2.5
		- 지출 구조조정	5.3
합 계	30.5	합 계	30.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4) 물론 4월 말에는 징수결정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논의하였다면,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5) 추경안의 재원인 차입금(0.1조원)은 국가가 중앙정부 소관의 기금이 아닌 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차입금은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 이전인 2025년 4월 말에 정부출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되어 이미 국고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추경 편성 시점에 가용한 재원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조달한 결과, 불필요한 국채 이자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안 편성 시점에 정부출자수입 초과징수분 6,672 억원을 세입예산에 경정 반영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추가 국채발행을 감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2025년 하반기 국고채 조달금리(약 2.8%) 기준으로 추산하면 국채 이자부담 절감효과가 연간 약 18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대비 초과징수가 확정된 재원을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제1회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2026.3.31.)에서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3월 기준 이미 정부에 납입이 완료되어 국고에 수납된 한국은행 잉여금을 추경안의 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⁶⁾

추경안 재원의 확실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수납이 완료된 정부출자수입(2025년 제2회 추경)이나 한국은행 잉여금(2026년 제1회 추경)이 보다 적합한 재원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세입경정에 포함시킬 경우 적자국채 순발행 규모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추경안의 재원 구성은 예산편성 주체인 정부의 재량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고 수납이 완료된 확정적 재원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취지,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정된 모든 가용 재원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후 활용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4) 참고

가. 현황

국세물납주식매각대¹⁾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대금을 국고로 수납하는 세외수입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3조 7,441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307억원이며 이를 전액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3,744,140	3,744,140	130,743	130,743	-	-	1,063,783	1,063,783

자료: 재정경제부

국세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²⁾에 따라 ①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③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현금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³⁾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73-73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3) 국세 중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 중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 방법]

구분	내용	
현금 납부	자진납부	• 원칙적인 납부방법 : 1회 완납의 원칙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일반재산 :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기업상속재산 :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물납	•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충당순위: ①국채 및 공채 ②상장 유가증권(①제외) ③국내 소재 부동산 ④비상장유가증권(①제외) ⑤상속인 거주주택과 부수토지 * 2023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미술품 물납 대상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물납증권 종류]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으로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 비상장증권으로 구분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수익증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장증권 매각 절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분석의견

첫째, (주)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초래된 바, 2027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NXC 잔여 지분 평가액 전체를 수입으로 계상하기보다는 결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물납주식매각대의 2025년 및 2026년 본예산은 각각 3조 7,441억원과 1조 638억원으로 2년간 총 4조 8,079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주)NXC 주식의 물납규모 4조 7,149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NXC의 물납주식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2회 계연도에 걸쳐 나누어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5~20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사업 예산안 현황]

구분	(주)NXC 물납주식 가치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수입예산		
		합계	2025년	2026년
금액	47,149억원	48,079억원	37,441억원	10,638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주)NXC 관련, 2024년 12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여 2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하였음에도 유찰되었다. 2025년에는 재정경제부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에 따라 매각자문단을 선정하고 법률 및 회계실사 후 예비입찰을 진행했으나 역시 유찰됨에 따라 연내 지분 매각에 실패하였다.

[(주)NXC 매각 절차 추진 경과]

(단위: 주, 억원)

연도	회차	방식	입찰기간	구분	주식수	매각예정 가액	비고
2024	1회	공개경쟁 ¹⁾	12.18~12.19	비상장	851,968	47,149	유찰
	2회	공개경쟁 ¹⁾	12.25~12.26	비상장	851,968	47,149	유찰
2025	본공고	공개경쟁 ²⁾	6.30~8.25 ³⁾	비상장	851,968	-	유찰
	재공고	공개경쟁 ²⁾	8.27~9.08 ³⁾	비상장	851,968	-	유찰

주: 1) 온비드 국유증권 공개경쟁입찰 진행건

2) 매각주간사를 통한 주식 매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진행건

3) 2단계 절차(예비입찰절차 및 최종입찰절차) 중 예비입찰절차 기간 해당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2025년 12월 (주)NXC가 1,512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단행하였는바, 정부도 이에 참여하여 보유 증인 7,967주⁴⁾를 463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중 438 억원은 2025년도 세입으로, 나머지 25억원은 2026년도 세입으로 각각 귀속되었다.

[2025년 12월 (주)NXC 자사주 취득 관련 개요]

- (거래 방식) (주)NXC가 자사주 이익소각 목적 취득을 단행하면서 전체 주주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주식 매입(자본금 감소 없는 배당가능이익 재원의 이익소각 방식)
- (거래 규모) (주)NXC 자사주 취득 총액 1,512억원
 - 오너일가 보유분: 1,023억원
 - 정부 보유분: 약 463억원
 - 와이즈키즈 보유분: 26억원
- (주당 매각가) 581만 5,000원
 - 물납 당시 평가액(553만 4,000원) 대비 약 5.1% 상회
- (소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

자료: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를 포함하여, 2025년에 매각된 국세물납주식은 1,333억 5,100만원 규모이다.

[2025년 국세물납주식 매각대금 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종목명	금액
서***재(주)	292
제***건설(주)	1
(주)스***은행	928
(주)엔**씨	43,828 ⁵⁾
(주)엘***에스	3,058
(주)오*	376
(주)전***로지스	363
(주)케*****홀딩스	820
지*리조트(주)	23,617
청*건설(주)	68
티***광(주)	60,000
합 계	133,351

자료: 재정경제부

4) 물납주식 85만 1,968주의 1% 미만

5) 매각대 463억원 중 25억원 납입 유보(2026.1 국고납입 완료)

2025년 세외수입 결손⁶⁾ 규모는 3.9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주로 (주)NXC 물납 주식 매각 실패에서 기인한다. 물납주식 평가액 4.7조원 중 2026년 5월에 약 1조 원 가량이 매각되면서 2026년도에는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수입이 원활하게 징수되었으나(후술 예정), 여전히 남아있는 3.7조원 규모의 잔여지분 처리 계획은 미지수이다.⁷⁾ 특히 정부가 보유한 (주)NXC 지분가치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이를 현금화 하지 못할 경우, 재정수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결산	예산(A)	결산(B)	B-A	(%)
■ 총세입	535.9	600.0	597.9	△2.1	△0.3
•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0.5
• 세외수입	199.4	227.9	224.0	△3.9	△1.7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정부는 2027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NXC 잔여 지분 평가액 전체를 수입으로 계상하기보다는 결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정부가 (주)NXC 측에 물납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2026년도 물납주식매각대 결손 우려는 해소되었으나, 비상장회사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현금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매각 시장의 부재로 정부가 사실상 자산보관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준다.

2026년 5월 11일 정부는 물납받은 (주)NXC 지분 중 일부를 (주)NXC 측에 1조 227억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였다. (주)NXC 측의 취득 주식수는 18만 4,001주, 취득단가는 주당 555.8만원이며 이는 물납 당시 평가액(주당 553.4만원)을 소폭 상회

6) 특히, 세외수입 결손에 따른 총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20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 및 불용사태가 촉발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총괄II」에서 다루었다.

7) 물납주식의 국부펀드 이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분율은 기존 30.64%에서 23.96%로 변동되며, 2026년 6월 (주)NXC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정부의 지분율은 25.68%로 소폭 조정될 예정이다.⁸⁾

[2026년 5월 (주)NXC 자사주 취득 관련 개요]

구분	내용
매각 대상	NXC 보통주 184,001주(총 발행주식의 6.68%)
매각 단가	5,558천원/주 (물납가 5,534천원/주 대비 +24천원, +0.43%)
매각 규모	1조 227억원
매수 주체	NXC(발행회사 자사주 매입)
정부 지분율	30.64% → 23.96% → ('26.6월 자사주 소각 후) 25.68%
잔여 지분	약 3,700,000백만원 규모(660,092주, 25.68%) 정부 계속 보유

자료: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간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주)NXC가 비상장 사이고 매각대상 지분을 전량 인수하더라도 경영권 확보가 곤란한 구조로 인해 수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매각에 대해, “물납 당시 평가액을 상회하여 매각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하였으며,⁹⁾ 세외수입 확보와 외환시장의 안정화¹⁰⁾에도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2026년에 편성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수입 약 1조원의 징수가 확정됨에 따라 2025년과 달리 결손 우려는 사라졌다. 또한, 물납 당시의 평가액보다 주당 24,000원 높게 매각하여 국유재산 ‘혈값 매각’ 우려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거래로 매각 불발 상태는 일단 해소되었으나 거래의 본질은 ‘제3자 시장 매각’이 아닌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다수의 잠재적 매수자가 가격 경쟁을 통해 자산의 진정한 시장가치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8)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었다.

9) '26.5.11. 재정경제부 기자간담회

10) 재매입 자금 일부가 해외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조달되어 달러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 가능 주체가 사실상 NXC가 유일했고, 매수자가 협상력을 독점하는 매수자 우위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물납 당시 대비 NXC의 현재 기업 가치, 넥슨 재팬 등 자회사 가치 변동을 반영한 적정가치 등에 대해 시장의 평가를 거치지 못한 채 사실상 NXC가 제시하는 매입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¹¹⁾

만약 정부의 설명대로 이번 거래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면, 향후 비상장회사는 주식으로 일단 상속세를 물납하고, 정부가 매각에 실패할 경우 수년 뒤 회사가 자사주로 재매입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상속세제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¹²⁾

종합하면, 이번 (주)NXC 물납주식 매각은 2026년도 세외수입 결손 우려를 해소한 측면에서 성과가 일부 인정되나, 매각가의 시장가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곤란한 구조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 및 물납주체가 재매입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평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잔여 지분 약 3.7조원(자사주 소각 후 25.68%)에 대해서도 ① 제3자 매각이 곤란한 본질적 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점, ② 잔여 지분 비중이 종전보다 더 낮아 매각 매력도가 추가로 저하된 점, ③ 국부펀드 활용 방안의 법적 기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주)NXC의 자사주 매입 외에는 현실적 출구가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24년 중 폐기된 무가치 물납주식이 23건, 최초물납금액 기준 92,940백만원에 달하는 등 비상장 물납증권의 매각 지연이 영구적 국고손실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수납 단계의 환금성 심사 강화 등 단계별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물납으로 수납된 증권은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하고 있으며, 물납증권 매각 시 「국유재산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평가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물납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에게는 수납가액 미만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11)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그간 해당 물납주식에 대해 수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평가를 거쳐왔으며, 금번 NXC 매각에서도 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NXC의 주요 자산가격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설명이다.

12) 실제 현금납부 방식과 비교하면, 납부자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에 소요되는 리스크, 정부 입장에서는 매각에 소요되는 각종 직간접적 비용과 불확실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2023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법인의 법인격 소멸 및 잔여재산 부존재로 폐기된 물납주식은 23건, 최초물납금액 기준 92,940백만원에 달한다.

[2023년 이후 법인격 소멸 및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 물납주식 폐기 내역]

구분	종목명	물납시기	최초물납금액(백만원)	비중(%)
상위 5건	에****피(주)	2008.04.08	69,719	75.0
	(주)평*	2011.03.03	7,124	7.7
	전**업(주)	2007.10.24	4,303	4.6
	송**설(주)	2006.10.11	2,952	3.2
	대***공업(주)	1997.04.30	1,840	2.0
극소액 사례(2건)	청***금융(주), 쌍***금융(주)		0.4	0.0
기타(16건)	-		7,003	7.5
합계(23건)			92,940	100.0

주: 위 폐기 내역은 2024년에 일괄 처리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에****피(주) 1건의 최초물납금액이 69,719백만원으로 폐기총액의 75.0%를 차지하는 한편, 수납가액이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액 주식(청***금융 0.2백만원, 쌍***금융 0.2백만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환금성 검증 없이 수납된 비상장주식이 관리비용만 발생시키다 소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2015~2025) 캠코의 물납 업무 관련 예산은 총 410.7억원이 소요되었다.

[최근 10년간 캠코 물납 업무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용	29.3	30.3	27.2	26.9	29.0	33.7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비용	36.7	37.0	38.3	65.2	57.1	410.7

주: 2024년은 고액 물납주식 매각 진행을 위해 필요경비 예비비 27억원을 편성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물납주식의 폐기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수납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전액 소멸하여 세수 일실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수의계약·공매를 반복하더라도 매각이 곤란하고, 보유가 장기화되는 동안 발행법인의 휴·폐업, 자본잠식, 청산 등으로 가치가 소멸할 위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는 NXC 물납주식이 4회 연속 유찰되며 약 3.7조원의 세외수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적 문제로서, ▲수납 단계의 환금성 심사 미흡, ▲수납 가액 기반 매각가격의 경직성, ▲보유 장기화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비상장 물납주식의 경우 매각 지연이 단순한 세입 지연에 그치지 않고 폐기를 통한 영구적 국고손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위 폐기내역이 보여주고 있다.

물납제도는 일차적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이나,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즉,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 등 환금성이 낮은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현금납부만을 강제하면 납세자의 체납 및 징수불능으로 이어져 조세채권 자체를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에 의하더라도 정부는 결국 동일한 환금성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물납은 징수불능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가 조세채권의 일부라도 현물 형태로 확보하는 보충적 징수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이 보충적 징수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납된 자산이 궁극적으로 국고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납 단계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납 시점에 발행법인의 재무건전성·계속기업가능성 등 환금성 심사를 실질화하여 무가치화 개연성이 높은 주식의 수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유·매각 단계에서 유찰 반복 시 분할 매각, 전문 운용기관 활용 등 매각방식을 다양화하여 무가치화 이전에 조기 처분을 도모하고, 물납주식 폐기 현황 및 누적 국고손실 규모를 결산 시 투명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¹⁾은 바이오 정책·규제·R&D 등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바이오위원회²⁾의 실무 지원단 운영비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를 통한 예산현액은 20억 6,100만원이나 이 중 1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운영	-	2,061	2,061	1,508	15	538	2,129	2,129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신규 추진되었으나, 예비비사용계획서와 달리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정부는 2024년 11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 제10조³⁾를 근거로 202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 20억 6,100만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432-301

2) 참고로, 설립 당시 명칭은 국가바이오위원회(대통령 직속)였으나, 정부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새롭게 출범하였다(2026.4.16.).

3)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현재 폐지된 규정)

제10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원을 배정받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을 설립하였다(2025.2).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연혁]

입법과정	소요기간
입법예고	2024. 9. 27. ~ 2024. 10. 7.
법제처 심사	2024. 10. 21.
차관회의 심의	2024. 10. 24.
국무회의 심의	2024. 10. 29.
공포	2024. 11. 5.

자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칙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거 법령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정부는 2025년 2월 예비비를 배정하였다.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목에서 불용이 발생하여 집행액은 15억 800만원에 불과하였다(집행률 73.2%).

[2025회계연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 주요 비목별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비	이·전용 등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일반수용비(210-01)	347	△110	121	116	정책여건변화에 따른 회의개최 축소 등
임차료(210-07)	591	-	356	235	사무실 임대료 10개월치 반영 7개월치 임대료 납입
일반용역비(210-14)	100	-	65	35	전체회의 1회 개최
관리용역비(210-15)	67	-	20	47	유지보수비용 미발생
공사비(420-03)	180	-	164	16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자료: 재정경제부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관련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임차료는 약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무실 및 사무기기 임차료가 대부분임에도 집행률이 60% 수준에 그친 것은 당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도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의개최가 축소되면서 집행액은 1억 2,100만원에 불과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 주요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비	이·전용 등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수용비(210-01)	347	△110	121	-	116
임차료(210-07)	591	-	356	-	235
관리용역비(210-15)	67	-	20	-	47
직책수행경비(250-02)	51	14	63	-	2
정책연구비(260-02)	-	50	35	15	-
자산취득비(430-01)	216	96	312	-	-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일반수용비와 직책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정책연구비와 일반연구비 간 자체전용이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는 등 당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와 달리 자의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원단은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¹⁾은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대사를 보좌하며 대외신인도 및 해외투자자 관리 협력채널 운영 등을 위한 자율기구 운영비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를 통한 예산현액은 4억 4,500만원이나 이 중 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협력대사 지원단 운영	-	-	445	445	379	-	66	-	-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은 예비비 사용요건 중 보충성에 부합하지 않고, 하반기부터는 국제협력대사의 공식적인 업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조직을 연말까지 유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자율기구 설립 및 예비비 배정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율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 해외투자자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국제투자 협력대사를 각각 임명하였다.²⁾ 국제협력대사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131-314

2) 대외직명대사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24.12.27일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 '25.1.6일 최종경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지원단은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대사를 보좌하며 대외신인도 및 해외투자자 관리 협력채널 운영, 주요국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자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율기구³⁾로, 기획재정부훈령인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국제협력대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및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편성 필요성도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내에 글로벌 금융협력,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령이 아닌 훈령 제정을 통해 국외업무여비와 사업추진비가 대부분인 동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예비비를 배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⁴⁾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 주요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수용비(210-01)	58	58	-	-
임차료(210-07)	65	52	-	13
국외업무여비(260-02)	196	168	-	28
사업추진비(240-01)	70	57	-	13

자료: 재정경제부

실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ASEAN+3 및 글로벌 주요국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협력사업’ 58억 9,100만원,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위한 ‘국제 금융외교 및 G20협력’ 사업 20억 3,2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는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원단의 기능 중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설명회 등 홍보·행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행사, 외국 정부·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력 채널 운영과 실질적으로 중첩된다.

3) 국제금융국 산하 과 단위 기구로 7명의 정원으로 구성

4) 예비비 배정일은 2025년 2월 18일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성과]

□ 운영성과

□ (상반기) 국금협력대사와 총 3회 국외출장(홍콩·싱가폴(2월), 美(3월), 日(4월)),

① 한국경제설명회* ② 글로벌 신평사 면담, ③ 금융 인사 면담** 등 진행

- * 싱가포르(2.13일), 뉴욕(3.11일)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설명
- ** WGBI 편입 관련 FTSE CEO 및 일본공적연금(GPIF) CIO,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MSCI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자본/외환시장 제도 개선 사항 등 설명
- 국투협력대사의 총 2회 국외출장*(카타르·사우디·UAE(2월), 美(3월)) 관련 대사 활동비 지원(대사 활동 보좌는 산업부 담당)
- * 중동 국부펀드 면담, 美 7개주(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등) 배터리 아웃리치, 美 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 피터슨 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등) 면담 등 진행

□ (하반기) 9월 뉴욕 VIP 주재 「대한민국 투자 씨밋」지원, 11월 싱가포르 한국 기업 IR 참석 등 새정부 경제정책 홍보 활동 진행

- 「대한민국 투자 씨밋」 관련 VIP 모둠·마무리말씀 등 행사 콘텐츠, 행사장 최종 점검 등 현지 행사 로지 지원
- 11.6일 싱가포르 IR*에 참석하여, 한국 경제 동향 및 새정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기관과 1:1 면담 진행
- * 「2025 Korean Corporate Global IR」 : The Bell 개최, 우리부, 수은, 주금공, KT, 포스코, SK(주), SK 하이닉스, 해진공,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기관 참석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성과로 발표한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국제협력대사의 공식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초 지원단의 존속기한이 6개월(~8월 21일)이었으나, 이를 2025년 12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하였다.5)

5)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로 명시되어있는 국외출장 외에도 '25년 중 해외투자자, 국내소재 글로벌 IB,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상시 소통 등 대사는 임명기간 동안 대외 소통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2025년 국제협력대사의 공식 업무 수행 현황]

구분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1월	국내 글로벌 투자은행 관계자 간담회(2월 해외 IR 사전 준비)	-
2월	홍콩·싱가포르 방문(2.11~14):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3대 글로벌 신평사·HSBC 등 면담	민관합동 배터리 사절단, 미국 7개 주 순회 아웃리치 개시(2.28~), 주정부 인사 면담(IRA 투자환경 보호 설득)
3월	뉴욕 방문(3.10~14):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FTSE Russell·MSCI 등 주요 금융기관 면담(WGBI 편입·자본시장 선진화 논의)	배터리 순회 아웃리치 완료(~3.5), 삼성SDI-스텔란티스 JV 공장 방문(3.6), 워싱턴 D.C. 방문(3.10~14): 헤리티지 재단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주요 썬크뱅크 순방(美상공회의소·피터슨·KEI 등)
4월	일본 도쿄 방문(3.31~4.1): GPIF CIO 등 주요 투자자 면담(WGBI 편입 관련 제도개선 홍보)	-

자료: 재정경제부 및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2025년 11월 ‘2025 Korean Corporate Global IR’에는 국제협력대사가 아닌 지원단장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매년 개최되는 연례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국제협력대사를 보좌한다는 지원단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정경제부는 동 행사가 ‘연례적인 행사’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연례적·예측가능한 지출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예측불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해당 출장에 대사가 직접 동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행사 전 주요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행사 콘텐츠 점검 등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설명이나, 동 행사 관련 예산이 타 세부사업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을 경우 이중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도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세부사업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신규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국제투자협력단에 소속된 인력이 국제협력대사지원단으로 연이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투자협력단 및 국제협력대사지원단 관련 규정]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다른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이하 "국제투자협력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투자협력단"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쏠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p>3조(기능) "국제투자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3. 투자제안의 발굴 및 전달 관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투자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투자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고 다른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하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쏠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p>제3조(기능)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설명회 등 국내외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통상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외국인 투자자,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외국의 언론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대외신인도 관리,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정책 등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자율기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제4항에 따르면,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시 소멸하나,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입장에서 자율기구 설치를 통한 임시정원의 확대는 종료 이후에도 별도 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자율기구 설립 및 예비비 배정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율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¹⁾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유물·자료 전시와 체험·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식협력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95억 8,300만원 중 9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식협력단지 운영	9,583	-	-	9,583	9,580	-	3	9,913	9,913

자료: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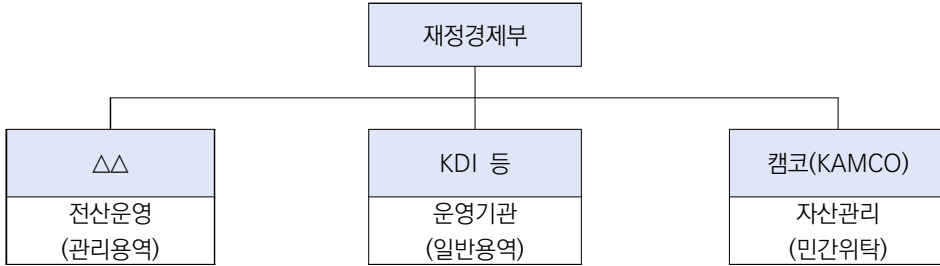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는 2013년에 KDI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남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2018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 협력국과 세미나·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식협력단지의 일반운영과 전산운영은 KDI 등을 통해 단년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25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식협력단지 사용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239-301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위탁구조]



자료: 재정경제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위탁계약별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계약 체결
일반 용역비	2024~26년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국제협력 운영 위탁(장기 2차)	'25/1/1~ 12/31	1,999	KDI	'24/11/28
	2024~26년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전시 및 교육 운영 위탁(장기 2차)	'25/1/1~ 12/31	3,976	KDI 등	'24/11/28
관리 용역비	2024~26년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장기 2차)	'25/1/1~ /12/31	699	△△	'24/12/4
민간 위탁사업비	지식협력단지(대한민국경제발전관) 사용협약서	'17/5/1~ '42/4/30	2,815	한국자산 관리공사	'17/5/1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재정경제부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변경사용협약을 통해 잔여 위탁기간의 관리보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146억원을 선투입한 시설이 통상의 내용연수에 크게 못 미치는 기간만 활용된 채 멸실되고 이를 대체할 신축 투자가 병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 기능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와 국방연구원(KIDA)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주택공급 대상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공급 부지 지정에 따른 부지 및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GKEDC는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2028년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중 관련 내용]

- ◆ 국방연구원과 인접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총 5.5만m² 규모 부지에 주택 1,500호 공급
- **(입지여건)** 희기역, 고려대역과 근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경희대, 고려대, KAIST(서울캠퍼스) 등 대학교와 인접
- **(개발구상)**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기업형 창업 지원, 인재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재구성
- **(향후계획)** '28.上까지 이전을 완료(국방·재경부)하여, '29년 착공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1.29.

GKED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42년까지 총 25년간이다. 재정경제부는 매년 캠코에 시설운영비(임대료²⁾)와 민간위탁사업비(건물관리 등)로 각각 4억 9,500만원 및 28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GKEDC가 2028년 상반기에 이전하게 될 경우, 당초 체결되어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장기 민간위탁 계약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캠코와의 최초 사용협약서’(17.5.1), 위탁개발사업계획서(15.10) 및 준공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기간 내 국가의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관리를 철회, 중단, 취소할 경우 총괄청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2) 임대료는 사실상 캠코의 관리보수로, 재산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연 4억 9,500만원을 위탁기간 중 매년 건물임차료(일반용역비) 형태로 지급한다.

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단축 및 관리비 수정을 위한 변경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다만, 재정경제부는 변경사용협약서 체결 계획만을 밝히고 있을 뿐, 협약 체결 시점과 위탁기간 단축의 구체적 범위, 잔여 위탁기간(~2042.4)에 해당하는 관리보수(연 4억 9,500만원)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용협약서 등에 '총괄청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일반 조항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캠프와의 협상 일정과 변경사용협약(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14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선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로, 개관(2018.10.) 후 약 10년 만에 이전·철거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미회수 개발잔액이 없어 정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기관(캠프)과의 정산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회계로 조성한 시설이 통상의 내용 연수에 크게 못 미치는 기간만 활용된 채 멸실되는 점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활용 실적과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동 기능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축 시설로 대체할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참고로, 본 사업은 초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총사업비 146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선지급하여 개발을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 조기 종료 시 수탁기관에 상환해야 할 미회수 개발 잔액은 존재하지 않아, 개발 비용 일시 정산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현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¹⁾ 사업은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209억 3,000만원 중 20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20,770	160	348	20,930	20,685	-	245	22,317	22,317

자료: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현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 예산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출연금과 장비 임차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 AI 대전환’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재정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통합적인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25년 10월 정부는 현행 ‘열린재정’ 시스템을 ‘모두의 재정’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국민제안·교육 등 각종 재정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재정 DB 축적으로 AI 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보 안내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3-500

[모두의 재정 사업 추진 경과]

일정	주요 내용
~'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열린재정 → 모두의재정)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상세 과업지시서 작성 및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원가계산보고서 산출 과업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기간 등 사업 적정성 검증
'2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 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업증복 검토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나라장터 사업 발주의뢰 및 사업자 선정 공고
'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열린재정 → 모두의재정) 사업 계약 체결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는 4월 중에 조달청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재정정보 콘텐츠 제작 및 AI 서비스 고도화, 모두의 재정 기능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연내 플랫폼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재정 사업 추진계획 대비 진척 사항]

일정	당초계획	실제진척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편사업 계획 수립 및 조달발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 및 상세 과업지시서 작성 완료 원가계산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26년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협의 마무리 및 모두의재정 구축사업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성검토(국정원), 사업증복 검토(행안부) 조달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완료(4.6)
'26년 2~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정보 콘텐츠 제작 및 AI 서비스 고도화 모두의재정 구축 및 검증 등 	-
'26년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재정 기능 점검·보완 모두의재정 오픈 및 안정화 등 	-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모두의 재정 총사업비(16억 1,300만원) 중 열린질문 및 통계 분석, 보고서 분석 등 AI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는 5억 3,100만원이다. 2025년도 '열린재정, 열린질문' 서비스 구축에 소요된 비용은 6,600만원이다.

[모두의 재정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 사업	1,493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 사업 감리	100
조달수수료, 원가계산, 외부위원 수당 등	20
합계	1,613

자료: 기획예산처

나. 분석의견

시범운영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 '열린질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성형 AI 서비스인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당초 네이버의 Hyper CLOVA-X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시범운영 개시 후 수개월 만에 기반 모델을 교체한 만큼, 기반 모델 선정의 적정성 및 향후 모델 선정·교체에 관한 기준 마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국내 생성형 AI 언어모델인 Hyper CLOVA-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정분야에 특화된 대화형 에이전트이다.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종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받거나 재정보고서를 요약 분석할 수 있으며 답변에 활용된 보고서 파일 등을 직접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의 직업별·연령별 정보 등을 입력 후 정보 검색 시,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각종 보고서 요약뿐만 아니라, AI Multi Modal 기능을 활용한 웹툰·영상·카드뉴스 등 자동 시각화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가 국산 AI를 활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²⁾을 고려하여 네이버의 Hyper CLOVA-X 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열린재정, 열린질문 도입 경과]

일정	주요 내용
~'25.5.	■ 열린재정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25.10.	■ AI 서비스를 위한 DB 구축 및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구축 * (8월) DB 구축, (9월) 서비스 개발, (10월) 테스트 및 성능 점검
'25.11.	■ 시범오픈 전 대·내외 테스트 추진 및 성능 시험 점검
'25.12.2.	■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서비스 오픈

자료: 기획예산처

다만, 당초 기반 모델로 채택된 Hyper CLOVA-X에 대해서는 경쟁력 및 독자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어 온 측면이 있다. 동 모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네이버가 동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어, 재정 특화 공공서비스의 기반 모델로서 지속적 고도화 및 안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동 서비스의 답변 품질 및 정보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델 외 다른 LLM 모델의 답변을 비교·평가한 결과, 현재는 기반 모델을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 3(Solar Pro 3)'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다른 LLM 모델로 추가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체된 솔라 프로 3는 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평가를 통과한 모델로, 앞서 제기된 독자성·지속가능성 측면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시범서비스 개시(2025.12.)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반 모델을 교체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당초 기반 모델 선정 단계에서 모델의 성능·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국산 AI 활용을 우선하는 것은 데이터 주권 및 공급망 종속 위험 관리 차원에서 타당한

2)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5.10.2.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성능·안정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대체하는 선정 기준으로 작동할 경우, 잦은 모델 교체와 그에 따른 재검증·재학습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가 향후 다른 LLM 모델로의 추가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 모델의 선정·평가·교체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기반 공공서비스는 일반 정보서비스와 달리 답변의 정확성·신뢰성·보안성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며, 재정정보와 같이 정책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오류 정보 제공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적지 않다. 모델 교체만으로 답변 품질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획예산처는 기반 모델 선정 및 교체 시 적용할 품질·보안 평가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모델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및 서비스 안정성 관리 방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예산처는 생성형 AI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의 시범운영의 목적과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정식 서비스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품질 기준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서비스 오픈 시 본인인증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증 페이지가 호출되어 접속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조치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NABO 점검 결과, 2026년 5월 기준 접속 장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연속 질문 시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등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외부 위협, 클라우드 자원 안정성,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 관리중이며, 시스템 로그를 무작위 샘플링 및 분석하여, 서비스 진입 실패 등 오류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관리중인 체제 하에서는 오류 관련 통계는 파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답변 품질 측면에서도 문제가 확인되었다. 예컨대, "최근 10년간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요청"에 대해 해당 서비스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만 제시하였으며 이마저도 부정확한 답변이 산출되었다.

6월부터 답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ChatGPT, Gemini 등)와 비교하더라도 아직 낮은 수준으로, 재정 특화 서비스로서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열린재정, 열린질문 답변 사례(2026.05.28.)]

최근 10년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추이를 알려줘.

최근 10년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추이

제공된 문서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고채 평균조달금리(표면금리)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연도별 주요 금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5% ~ 5.75% (평균 약 3.0% 이상)
- **2017년:** 1.875% ~ 3.75% (평균 약 2.5% 수준)
- **2018년:** 1.1% ~ 2.25% (평균 약 1.5% 수준)
- **2022년:** 0.75% ~ 4.125% (평균 약 2.0% 수준)

다만, 정확한 연도별 평균조달금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발행된 모든 국고채의 표면금리를 가중 평균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2018년, 2022년 등 일부 연도의 평균금리만 추정할 수 있으며, 2016년~2017년 사이의 구체적인 평균금리 수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상승하는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저금리 기조가 두드러졌으나, 2022년에는 2년물, 3년물, 5년물 등 다양한 만기의 국고채가 발행되면서 평균금리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연도별 평균조달금리 추이를 확인하려면 각 연도별 발행된 모든 국고채의 표면금리와 발행금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문서에서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22년의 일부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어 전체 10년간의 정확한 평균금리 추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2022년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pdf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현재 서비스가 약 4천건의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범 단계이며, 정식 서비스 전환 시 약 8만건 이상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대할 예정이므로 답변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양적 확대가 곧 답변 정확도의 향상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 특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검색 대상 문서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반 모델 자체의 추론 능력과 환각(hallucination) 억제 성능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 AI 생성형 문답 서비스의 한계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특화 서비스의 답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시범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비스 개시 직후인 2025년 12월에는 사용자 585명, 질문 5,897건이 기록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6년 4월에는 사용자 106명, 질문 246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26년 1월 본인인증 절차를 폐지하였음에도 이용량이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용자 이탈의 원인이 접근성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있음을 의미한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운영 실적]

구분	사용자(명)	질문(개수)
'25년 12월	585	5,897
'26년 1월	92	535
'26년 2월	88	234
'26년 3월	120	296
'26년 4월	106	246

자료: 기획예산처

월 100명 안팎의 이용자와 300건 미만의 질문 건수는 재정 특화 공공서비스로서 실질적인 수요 창출에 사실상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수준의 이용량으로는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피드백 자체가 축적되기 어렵다.

시범운영의 취지는 실제 이용 환경에서 오류를 발굴하고 품질을 검증하여 정식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 현재의 시범운영은 품질 검증이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 서비스 전환 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현재 시범운영의 실질적 의미는 더욱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현재 시범운영의 목적과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정식 서비스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품질 기준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원단 운영 사업¹⁾은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경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1억 1,500만원 중 2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경제 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4,115	-	-	4,115	2,218	198	1,699	3,196	3,196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원단 운영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된 바, 정부는 향후 자문회의의 구성시 자문위원의 위촉 및 분과 구성에 이르는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자문회의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원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3조²⁾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구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431-301

2)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25회계연도 동 사업의 결산 결과, 집행률은 54% 수준에 불과하였는바, 비상
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국 불안과 조기 대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회계연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상용임금(110-03)	309	309	-	309	282	-	27	341
- 일용임금(110-04)	24	24	-	24	-	-	24	24
- 일반수용비(210-01)	393	393	-	393	133	-	260	32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	50	41	-	10	44
- 특근매식비(210-05)	4	4	-	4	1	-	3	3
- 임차료(210-07)	748	748	+61	809	809	-	-	395
- 유류비(210-08)	4	4	-	4	1	-	3	4
- 복리후생비(210-12)	6	6	-	6	5	-	1	6
- 일반용역비(210-14)	530	530	-	530	-	-	530	530
- 관리용역비(210-15)	436	436	△61	375	354	-	21	490
- 기타운영비(210-16)	27	27	-	27	20	-	7	21
- 국내여비(220-01)	20	20	-	20	1	-	19	20
- 국외여비(220-02)	132	132	-	132	4	-	128	8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0	100	-	100	50	-	50	80
- 직책수행경비(250-02)	61	61	-	61	51	-	10	61
- 일반연구비(260-01)	30	30	-	30	-	-	30	20
- 정책연구비(260-02)	390	390	-	390	339	-	51	244
- 고용부담금(320-09)	60	60	-	60	31	-	29	67
- 실시계비(420-02)	40	40	-	40	35	-	5	-
- 공사비(420-03)	740	740	-	740	60	198	482	440
- 자산취득비(430-01)	10	10	-	10	2	-	8	5

자료: 재정경제부

일반용역비 및 공사비의 대규모 불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2월 초 계
엄 선포 이후 정국 불안으로 행사(세미나) 개최가 불가능하였고, 자문위원이 임명되
지 않아 전체회의·분과회의 개최도 어려웠으며, 당초 2025년 11월로 계획하였던

사무실 이전 시기가 202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용역비·공사비 등이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조기 대선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자문 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까지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고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증첩되면서 상당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1년³⁾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2027년 제2기 자문회의 구성 시 자문위원 위촉 및 분과 구성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자문회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원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현황

국유재산관리 사업¹⁾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6억 2,100만원이나 이 중 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관리	621	-	-	621	217	9	395	568	568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국유재산 관련 소송 배상금 및 반환금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유재산관리, 소송에 따른 각종 비용,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집행률이 매년 60% 미만에 불과하다.

불용 사유와 관련하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 확정 판결까지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소송 패소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간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이 현액 대비 38.1%에 불과하고 불용액도 연간 4~5억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 자체가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34-302

[최근 5년간 국유재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807	807	44		851	188	23.3	22.1	50	613
2022	807	807	50		857	492	61	57.3	30	335
2023	751	751	30		781	382	50.8	48.9	-	399
2024	701	701	-		701	173	24.5	24.5		528
2025	621	621	-		621	217	35.0	35.0		395
5년 평균	737	737	25		762	290	39.4	38.1	16	454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재정경제부 설명대로 소송 최종 확정까지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패소 배상금이 집중 지출되는 시기가 적어도 1~2회는 나타나야 할 것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50%를 상회한 연도는 2022년(57.3%)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본예산 규모를 2021년 807백만원에서 2025년 621백만원으로 약 23% 축소하였음에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여전히 3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본예산 감축 폭이 실제 지출 소요의 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47조 및 예산총칙에 따르면 배상금 등 법정 의무지출은 세항·목 간 예산의 이용이 허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배상금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소요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청구금액·진행단계·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측하지 못한 배상금 발생 시에는 예산의 이용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정책연구비(260-02)¹⁾는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93억 9,600만원이나 이 중 7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정책연구비(260-02)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비 (260-02)	8,145	1,047	205	9,396	7,391	1,068	937	4,869	4,869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정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비공개 비중이 높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²⁾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등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즉, 정책 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정책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공개 건수가 2025년 26건으로 2021~2025년 사이 가장 적은 건수(2021년과 동일)를 기록하였다. 공개 비율은 같은 기간 35.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³⁾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연구 공개율 추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건수	78	77	83	89	75
공개 건수 (비중)	26 (33.3%)	30 (39.0%)	34 (41.0%)	30 (33.7%)	26 (35.1%)

자료: 재정경제부

비공개 사유 측면을 살펴보면, 2025년에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중 비공개는 49건으로, 대부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2025년 정책연구결과 비공개 현황 및 사유]

연구용역 주제	비공개 사유
관세 징수 및 통관 질서 확보를 위한 제재 체계 연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청년 고용여건 변화 및 경제활동 촉진방안 연구	
경제혁신을 위한 AI 등 이공계 인재양성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방안 연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OECD 필리핀 경제검토회의 대응 방안 연구	
AI를 활용한 부동산 경기진단체계 구축	
경제형별 합리화를 위한 유형 연구 및 개선과제 발굴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기관 구분회계 확대방안 마련	

3) 다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연내 공개 예정인 11건을 추가하면 공개비율은 5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용역 주제	비공개 사유
2025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분석과 시사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추가·변경사항 법제화 연구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운영 전략	
한국 및 주요국의 국제수지와 환율 분석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연구(첨단모빌리티 분야)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연구(사이버보안 분야)	
국가신용등급이 거시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조세조약 제·개정을 위한 양자간 국제조세협약체 운영	
2025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2025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지원	
아세안+3 전략방향 업데이트 연구	
조세지출 관리 개선방안	
근로장려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자체 청렴체감도 측정	
조달특례 종합평가 및 적격성 심사 체계 마련 연구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 규율방안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담배소매인 실태조사 및 제조업 허가기준에 관한 연구	
'신성장 4.0 전략' 정책추진 성과 분석 및 확산전략	
경제전망용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고도화	
경제이해력 측정을 위한 조사문항 개편 및 예비조사 연구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및 환급 현황 등 분석	
미래융복합경제재정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ASEAN+3 디지털 금융안정성 제고 연구	
공공부문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방안 연구	
세수추계 관련 주요동향 및 개선방안 연구	
2024년도 제3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2024년도 제3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중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 연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GVCM) 추진 로드맵 연구	
G20 다자금융협력 연구 지원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위한 정량지표 분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예비 경제안보품목 발굴 및 모니터링	
공급망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공급망안정화 통계작성 및 하위법령 마련 용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경제공급망 위기 대응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TTX] 실시)	
2025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단순 반복적인 조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제4호)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형별 합리화 연구’ 등의 일부 주제는 그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처럼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포괄적 비공개 사유로 원용되고 있다.

제5호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되면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용역 완료 후에도 비공개가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중복 연구 방지에도 기여하는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전환 절차를 체계화하고,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경쟁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정책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일반경쟁입찰 건수가 매년 5건 이하에 불과하다. 제한경쟁이나 경쟁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정책연구는 3년간 총 225건(91.1%)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책연구 수의계약 비중]

(단위: 건,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의계약	79	95.2	77	86.5	69	92.0	225	91.1
경쟁후수의	3	3.6	8	9.0	2	2.7	13	5.3
제한경쟁	0	0.0	3	3.4	1	1.3	4	1.6
일반경쟁	1	1.2	1	1.1	3	4.0	5	2.0
합계	83	100.0	89	100.0	75	100.0	247	100.0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평가 사업¹⁾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및 보조사업평가, 기금 및 부담금평가 등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34억 6,200만원 중 29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정사업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사업평가	3,311	116	35	3,462	2,928	90	444	5,229	5,229
재정사업 성과관리	734	-	6	740	740	-	-	3,943	3,943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514	-	-	-	451	-	63	468	468
보조사업 연장평가	533	-	-	533	533	-	-	-	-
기금 및 부담금 평가	453	-	-	453	453	-	-	-	-
재정사업 심층평가	720	116	-	836	420	76	340	-	-
재정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100	-	105	205	168	14	23	100	100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비	257	-	△76	181	163	-	18	718	718

자료: 기획예산처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4-300

10-1. 재정사업심층평가 운영상 문제점

가. 현황

재정사업평가의 내역사업인 재정사업 심층평가¹⁾ 사업은 주요재정 사업의 운영 성과를 심층분석·평가하여 제도 개선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하나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8억 3,600만원 중 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정사업심층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사업평가	3,311	116	35	3,462	2,928	90	444	5,229	5,229
재정사업 심층평가	720	116	-	836	420	76	340	-	-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훈령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4-300의 내역사업

[재정사업심층평가의 근거 법령]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분석의견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성과평가제도의 개편 논의를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5년 하반기 심층평가 과제 선정 자체를 보류함에 따라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수요조사, 심층평가 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심층평가 예비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군을 결정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5년 심층평가 과제는 ①무탄소 확산 지원, ②산림복지서비스 지원, ③기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총 3개의 사업군이 선정되었으며, 2026년 6월 중에 최종 완료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6개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제로 7억 2,000만원(전년도 이월액 미포함)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 과제를 수행하여 4억 2,000만원만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720 (836 [*])	720 (836 [*])	420	420	420	420	420	420	58.3

* 전년도 이월액(116백만원)을 포함한 금액
자료: 기획예산처

불용 사유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에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에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6월경 '재정사업 통합평가' 신설 등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심층평가 과제 선정도 보류되었고, 이후 성과평가 제도개편 방안이 2026년 초에 확정되면서 2025년 하반기 심층평가 과제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초기 성과평가 제도개편 논의 과정에서 심층평가 제도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심층평가 제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제 선정이나 평가 진행을 보류할만한 타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시점일수록 기존 재정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개편 논의를 이유로 평가 자체를 보류한 것은 제도 개편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계획에 맞추어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은 지침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심층평가를 종료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층평가 보고서 대부분이 차년도 7월 이후에 발간되어 평가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제 선정의 조기화와 평가 진행단계의 지연 해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부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0조제5항은 심층평가 수행기관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심층평가를 종료하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19조제2항은 심층평가 대상 부처·기관이 평가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요구 시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중 관련 규정

제10조(심층평가 수행기관) ⑤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심층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하되 **다음 연도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제19조(지출성과 제고방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국가재정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 등 대상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의 예산편성은 5월말~6월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6~8월 기획예산처의 부처 예산 협의·심사, 8월말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확정, 9월초 국회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한인 5월말 이전까지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심층평가 보고서는 대부분 차년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발간되어, 차년도 예산편성에 평가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더욱이 회계연도 종료 전에 평가를 종료한 과제가 없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심층평가를 종료하도록 한 제10조제5항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발간시점]

사업 연도	연구과제	과제선정	계약체결	보고서 완료
20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22.11.	'23.01.	'23.10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군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2023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지원 사업군	'23.08.	'23.10	'24.07.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하수도 관리 사업군			
2024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	'24.06.	'24.07.	'25.07.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2025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	'25.05.	'25.06.	'26.06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			
2026	고교·대학생 취업연계 지원 사업군	'26.05.	'26.06.	'27 中
	산업재해 예방 사업군			
	전통시장 지역상권 육성 사업군			

자료: 기획예산처

발간 지연의 원인은 과제 선정 시기의 지연과 선정 이후 평가 소요기간의 장기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제 선정 시기를 보면 2022년에는 해당 사업연도 11월에야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이후 2023년 8월, 2024년 이후 5월로 점차 앞당겨졌다. 다만 5월 선정은 이미 평가대상 회계연도가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이고, 차년도 예산요구서 제출시한(5월말)과도 약 1년의 간격에 불과하여 적기 환류를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선정 이후 소요기간을 보면 2025년 과제는 2025년 5월 선정·6월 계약체결 이후 2026년 6월에야 최종 완료될 예정으로, 선정에서 완료까지 약 13개월이 소

요된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당초 일정(5월 과제선정 → 익년 1월 중간보고 → 3월 최종보고 → 4월 결과 도출)보다 결과 도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장기화로 최종 결과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시점에 평가결과가 충실히 환류되도록 착수 시기 조기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 선정을 현행보다 앞당기더라도 선정 이후 소요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차년도 예산편성 시한 내 발간은 어려운바, 기획예산처는 ① 과제 선정을 조기에 실시하고, ②평가 소요기간 단축 또는 중간·잠정 평가결과의 조기 환류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심층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2. 기금평가제도 관련 개선 필요사항

가. 현황

재정사업평가의 내역사업인 기금 및 부담금 평가¹⁾ 사업은 기금·부담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함으로써 기금·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하나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억 5,3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금 및 부담금 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사업평가	3,311	116	35	3,462	2,928	90	444	5,229	5,229
기금 및 부담금 평가	453	-	-	453	453	-	-	-	-

자료: 기획예산처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²⁾제1항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평가는 자산운용평가와 존치평가로 구분되는데, 자산운용평가는 기금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4-300의 내역사업

2)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함이며, 존치평가는 무분별한 기금 확장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기금존치평가는 매년 전체 기금의 약 1/3을 대상으로 기금존치의 타당성,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기금존치의 타당성	기금목적의 유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ii.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가? iii.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나 역할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i. 기금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재원구조의 적정성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ii.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 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자료: 「202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6년 기금존치평가는 전체 67개 기금 중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2개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4개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 조 건부존치 권고가 이루어졌다.

나. 분석의견

기금존치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폐지·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청산이 예정된 재정성·연금성기금까지 형식적으로 기금존치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금의 성격에 따라 존치평가의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금존치평가는 전체 67개 기금 중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5개, 19개 기금에 대하여 존치평가가 수행되었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기금존치평가 대상 기금]

연도	소관 부처 및 기금	
2024 (25개)	고용부(5)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과기부·원안위(2)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교육부(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기재부(4)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농식품부(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복지부(3)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외교부(2)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기부(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025 (19개)	국방부(1) 군인연금기금 국토부(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위(6) 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재부(1) 기후대응기금	보훈부(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중기부(2)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해수부(1) 수산발전기금 여기부(2)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인척처(1) 공무원연금기금 문체부(1) 지역신문발전기금 대법원(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26 (24개)	과기부·방미통위(2)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보훈부(1) 보훈기금 국방부(1) 군인복지기금 유산청(1) 국가유산보호기금 기후부(7)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체부(5)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법무부(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산업부(2) 무역보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재경부(2)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통일부(1) 남북협력기금 농림부(1) 양곡증권정리기금

자료: 연도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예산처는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하여 평가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기금을 해당 지표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이에 해당하여 기금존치의 타당성 부문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³⁾과 외국환평형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등 계정성기금⁴⁾이 동일하게 제외된 바 있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대면평가 및 재원구조 적정성 미평가 기금]

평가연도	기금
2024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2025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2026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자료: 연도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기금존치평가의 평가방식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구분되는데, 기획예산처는 계정성·연금성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치목적이 명확하고 자금관리 외에 별도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의 실익이 적다는 사유로 서면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2024~2026년) 공공자금관리기금·국민연금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서는 대면평가가 생략된 채 서면평가만 시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구조의 적정성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존치의 타당성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동 평가의 실익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202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①정부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정부 회계 및 기금 운용을 지원하는 자금증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서 이

3)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개가 있다.

4) 계정성기금은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5개가 있다.

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경우, 과거 정부가 양곡 수매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관련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해당 채무의 체계적인 상환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양곡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내용은 직전 주기인 2023년 기금존치평가의 결과와 사실상 동일하며, 특히 2025년부터 기금 내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계정성·연금성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평가의 실익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과 같이 일몰 또는 청산이 예정된 기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어떠한 실효적 의미를 갖는지도 의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평가대상 기금과 평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폐지·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청산이 예정된 기금까지 형식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존치평가의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계정성·연금성기금 및 청산·상환 목적 기금과 같이 존치 타당성 평가의 실익이 낮은 기금의 유형과 그에 대한 평가지표 제외·서면평가의 기준을 평가지침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금중개·청산 등 기금 본연의 기능이 명확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에 대한 형식적 평가를 반복하기보다, 자금운용의 효율성 또는 부채 상환·청산 진도에 대한 점검 등 기금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존치평가의 권고가 반복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평가결과의 실효적 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금존치평가는 1년 주기로 실시되는 다른 재정사업평가와 달리 기금별로 3년 주기로 실시되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부여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직전 주기의 평가대상 기금에 대한 3년 후 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 기금이 직전 주기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평가·권고를 받고 있어 평가결과의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통합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 권고는 2020년과 2023년 평가에 이어 2026년 평가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었는바, 통합권고가 거듭 되었음에도 실제 통합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2년 평가대상 기금에 대한 2025년 재평가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폐지권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2022년 통합권고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5년에는 조건부존치로 권고 내용이 변경되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조건부존치 권고를 받았다.

[2022년 및 2025년 기금존치평가 중 존치 타당성 평가 결과]

기금명	2022년 평가	2025년 평가	비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폐지	폐지권고 반복 (미이행)
양성평등기금	통합	조건부존치	통합 미이행, 권고 내용 변경
청소년육성기금	통합	조건부존치	통합 미이행, 권고 내용 변경
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존치	조건부존치	조건부존치 반복

자료: 연도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2023년에 중기가용자산이 여유 또는 과소하다고 평가받은 기금 다수가 2026년 평가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화발전기

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중기가용자산 과소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원조성방법 까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원구조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및 2026년 기금존치평가 중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결과]

기금명	2023년 평가	2026년 평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조성 부적정·과소	재원조성 부적정·과소
영화발전기금	과소	재원조성 부적정·과소
정보통신진흥기금	과소	재원조성 부적정·과소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여유
언론진흥기금	여유	여유
군인복지기금	여유	여유
보훈기금	여유	여유
금강수계관리기금	여유	여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여유	여유

자료: 연도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존치평가는 재원조성방법이 부적정하거나 중기가용자산이 과소·여유한 기금에 대하여 수입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 부채상환, 신규 사업 발굴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고 일부 기금은 재원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기금존치평가가 권고에 그칠 뿐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환류 수단을 갖추지 못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기금의 통합·폐지가 관계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및 법률 개정을 수반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원구조의 개선 또한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권고가 매 주기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참여하는 심사단의 참여 유인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평가 및 보고서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는 기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예산안 편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획예산처는 2025년부터 기금존치평가 내에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를 간소화하여 사업 내용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종전까지 개별사업별로 산출되던 표준화된 처분 권고(존치·개선·이관·통합·폐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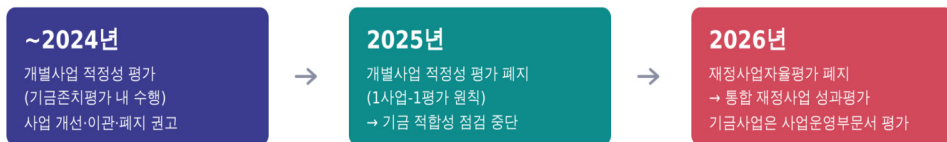
2024년까지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이 수행하는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운영의 적합성,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평가하는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를 운영하였다. 동 평가를 통해 2023년에는 18개 기금의 60개 사업, 2024년에는 16개 기금의 34개 사업에 대하여 개선·폐지·이관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기금 단위의 존폐가 아닌 사업 단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를 간소화하여, 2025년 평가부터는 사업 내용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평가하고 사업의 개선·폐지·이관 권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2025년 및 2026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개별사업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만 검토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평가지표 간소화의 근거로 1사업-1평가 원칙(하나의 사업에 대한 평가 중복을 최소화)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기금사업의 사업 단위 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다른 평가체계가 담당하므로, 기금존치평가에서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사업 평가 관련 제도 변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 단위 평가체계의 변천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그 전제가 되었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가 2026년부터 전면 개편되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종전의 부처 자체평가(재정사업자율평가) → 재정당국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를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였다.⁵⁾ 따라서 기금준치평가에서 개별사업 평가를 제외하는 근거였던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더 이상 종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부터는 자산운용부문과 사업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이 중 사업운영부문은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준용하여 56개 기금의 592개 사업을 평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업을 망라하여 실시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상 사업(2,487개) 중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금운용평가의 사업운영부문으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592개 사업 중 228개 사업이 감액, 12개 사업이 통합 판정을 받는 등 사업 성과에 기초한 지출 효율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 단위 평가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틀로 일원화되면서, 종전 기금준치평가의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가 수행하던 기능을 온전히 대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평가의 성격이 상이하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가로서,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의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통합으로 유형화하고, 성과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감액(감액15% 이상, 폐지전액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통합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각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뿐만 아니라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의 환류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개별평가*까지도 연계·통합하여 자율평가 대상인 1,855개에 비해 늘어난 총 2,487개 세부사업**(26년 185.4조원 규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 재난안전평가(행안부)·균형발전평가(지방위)·일자리평가(고용부)·중소기업평가(중기부)

**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법정교부금, R&D평가 대상사업, '26년 종료·신규사업, 소액사업 등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 제외

[기금사업 평가방식의 변화 -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 vs 사업운영부문 평가]

구분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2024)	사업운영부문 평가(2025~)
평가 소속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평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연계)
평가 관점	사업의 기금 적합성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 자체의 성과 (일반 재정사업과 동일 기준)
평가 항목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운영의 적합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집행의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결과 유형	존치 / 개선 / 이관 / 통합 / 폐지	정상추진 / 사업개선 / 감액 / 통합 / 폐지
주요 환류수단	사업수행방식 개선·이관·폐지 권고	예산 감액(감액 15%↑, 폐지 전액삭감)
사업 단위 정비기능	기금 간 사업 이관·조정 가능	성과 기반 감액 중심, 기금 간 이관 관점 부재

자료: 각 연도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및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주체·운영의 적합성, 유사성·중복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기금이라는 재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던 종전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의 명확성이 약화되었다. 즉 기금 사업이 일반 재정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됨에 따라, 사업의 기금 적합성·이관 필요성을 점검하는 기금 고유의 관점은 평가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지역신문발전기금 내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또는 민간으로의 사업 이관이 권고되는 등 2022~2024년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11개 사업의 통합 또는 이관이 권고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평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2022~2024년 기금존치평가에 따른 사업 이관 및 통합권고 사례]

연도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2022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	이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	이관
	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치료재활	이관(타기금)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이관(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통합	

연도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2023	언론진흥기금	인권증진보도지원(내역사업)	통합(기금내)
	영화발전기금	한아세안영화기구설립운영(내역사업)	통합(기금내)
	방송통신발전기금	주파수수급및정비체계구축	통합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파수활용여건조성(단위사업)	통합
2024	응급의료기금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	이관(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KF아세안문화원(내역사업)	이관(일반회계)

자료: 각 연도별 「기금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평가대상이 기금사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 사업운영부문의 기금별 평가대상 사업 수는 평균 10.6개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50개)·기후대응기금(41개) 등 일부 기금에 평가대상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1개 사업만 평가받은 기금이 4개, 2개 이하인 기금이 10개에 이르고, 5개 이하인 기금이 전체 56개 기금 중 22개 (39.3%)에 달하는 등, 통합 성과평가가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선별됨에 따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이 사업 단위로 점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 -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이하인 기금]

기금	평가대상 사업	기금	평가대상 사업
지역신문발전기금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
무역보험기금	1	청소년육성기금	4
석면피해구제기금	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4
국유재산관리기금	1	영화발전기금	4
임금채권보장기금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
사학진흥기금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
근로복지진흥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	원자력기금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	양성평등기금	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국제교류기금	5
언론진흥기금	3	대외경제협력기금	5

자료: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된 개별사업 단위의 정비기능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이관되었으나, 동 평가는 사업의 성과에 기초한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기금 적합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며, 평가대상 또한 기금사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자체의 폐지·통합 권고는 이행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기금 적합성·이관 필요성을 점검하던 수단이 축소된 것은 기금 재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 수행시 기금사업의 기금 적합성 및 이관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¹⁾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 국민 등 대상으로 태안정책연수원을 활용한 체험형·집중형 경제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19억 2,800만원이나 이 중 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미래융복합 경제교육	1,928	-	-	1,928	811	-	1,117	3,857	3,857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신규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인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인 동 사업의 집행률은 42.1%로 매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을 통해 소속 공무원 3,040명(연인원 기준)을 대상으로 직무기본교육, 직무전문교육, 국제교육, 시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7135-310

[2025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목표인원]

과정명		인원(명)	
합계		3,040	
직무 기본 교육	소계	240	
	1	7급 신규·전입자 교육	40
	2	5급 신규·전입자 교육	40
	3	5급 승진자 교육	30
	4	4급 승진자 교육	30
	5	청년인턴 교육	100
직무 전문 교육	소계	2,500	
	1	경제정책 과정	100
	2	경제구조개혁 과정	100
	3	개발금융 과정	100
	4	국제경제의 이해	100
	5	금융시장의 이해	100
	6	세법 교육과정	100
	7	정책소통 역량강화	100
	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	100
	9	예산의 이해	100
	10	복권기금사업의 이해	100
	11	국유재산정책 과정	150
	12	국가재정법의 이해	150
	13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교육과정	150
	14	공공기관 주요제도 교육과정	150
	15	국채시장의 이해	150
	16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의 이해	150
	17	국가계약 주요제도 해설 과정	150
	18	재정직무 기본교육	150
	19	재정성과관리 기본과정	150
20	재정투자평가사업 교육과정	150	
국제 교육	소계	100	
	1	국제회의 과정	50
	2	국제정세와 협상 과정	50
시책 교육	소계	200	
	1	국정철학과 역동경제 과정	100
	2	공직가치 교육과정	100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기획재정부 정원 대비 교육 목표 인원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내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2025년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면교육은 1,687명에 불과하여 목표 대비 55.5%에 그쳤고, 교육 시기도 4~5월 및 11~12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다.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월별 교육실적]

구분	인원(계)	기획재정부	타부처 등	국민·학생
합계	3,290	1,687	659	944
1월	47	29	18	-
2월	68	33	3	32
3월	44	1	43	-
4월	394	378	16	-
5월	978	617	253	108
6월	115	16	66	33
7월	311	7	80	224
8월	435	4	13	418
9월	148	86	62	-
10월	99	94	5	-
11월	379	240	10	129
12월	272	182	90	-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교육과정별 실적]

구분	인원(계)	기획재정부	타부처 등	국민·학생
합계	3,290	1,687	659	944
국민경제교육	1,233	12	277	944
경제캠프	452	-	-	452
지역경제교육센터 연수·워크숍	494	2	-	492
기타	287	10	277	-
전문직무교육	1,780	1,468	312	-
기본교육	77	77	-	-
전문역량강화	1,703	1,391	312	-
융복합교육	277	207	70	-

자료: 재정경제부

교육과정별로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의 실적은 대부분 전문직무교육 중 전문역량강화에 집중되었고 목표 인원 2,500명 중 1,391명만 이수하였다. 직무기본교육의 경우에도,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간 교육인원을 예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에도 당초 목표인 240명 중 77명만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주요 분야별 정책이슈와 경제·재정정책을 연계한 융복합교육의 경우 교육목표인원을 1,000명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융복합교육 실적도 연간 277명에 불과하였다.

재정경제부는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 설명회 및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나,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하였는바, 이는 대면교육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일정 등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은 온라인 영상 강의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현장 수업으로만 가능한 토론 수업, 분임토의, 발표 등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강의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입장이나, 세법 교육과정 등 단순 이론교육에 가까워 대면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은 과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직무교육 등을 위한 조직을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 기획·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문 교육기관 직제를 신설하여 국정과제 성과 및 공무원의 경제·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융복합경제재정교육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²⁾

이와 별개로, 재정경제부는 사전에 면밀한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을 통해 현실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으로, 세종시 이전 부처 중 교육기관이 없는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4.9월 태안 정책연수원이 건립(준공)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5.7월 교육원 출범을 목표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행안부 등과 교육원 신설을 위한 직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탄핵정국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원 설립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교육원 출범을 위하여 행안부와 '27년도 정기직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활동 과정에서 세입의 징수 시점과 세출의 집행 시점 간에는 필연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예컨대, 통상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납은 특정 월에 집중되는 반면 인건비, 사업비 등 정부 지출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시점 불일치로 인해 국고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1항1)에 근거하여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며,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2)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기존에 발생한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수익금을 우선 활용한 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은 회계연도 내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단기 자금 융통 방식이며,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장기적 자금조달 방식인 국가채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12-1.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

가. 현황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¹⁾은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은 992억 9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2,090억 4,400만원이며, 이 중 2,06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99,209	-	109,835	209,044	206,307	-	2,737	110,000	110,000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최근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10.3조원 규모의 세입감액경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8.5조원 규모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고, 조기집행 실적도 전년 대비 상향되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20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567억원의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시차입비용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수익금을 우선 활용한 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2025년에는 전체 이자비용 3,567억원 중 1,504억원을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2,063억원을 동 사업을 통해 지급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72-561

[2020~2025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연도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합계	
	누적 발행 (조원)	평균조달 금리(%)	이자비용 (억원)	누적 차입 (조원)	평균조달 금리(%)	이자비용 (억원)	발행+차입 (조원)	이자비용 (억원)
2020	45.3	0.740	610	97.2	1.004	523	142.5	1,133
2021	28.9	0.550	275	7.5	0.704	18	36.4	293
2022	16.3	1.430	394	34.2	1.339	273	50.5	668
2023	44.5	3.560	2,747	117.6	3.562	1,497	162.1	4,244
2024	49.8	3.510	2,964	165.0	3.537	1,901	214.8	4,865
2025	48.0	2.620	2,026	155.5	2.736	1,541	203.5	3,567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당초 2025년 본예산은 99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고금 운용수익과 동 사업의 본예산으로도 일시차입비용을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3차례의 자체이용을 통해 1,098억원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2025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세부사업	
'25.7.1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71,823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 이자비용 지급 필요
'25.9.24		7,580		
'25.12.24		30,432		
합계		109,835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최근 3년(2021~2023) 일시차입(재정증권 포함) 연평균 잔액 7.2조원, 예상조달비용 3.4%를 적용하여 총 예상 이자비용을 2,448억원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에 '24년말 운용수익금의 차년도 예상이월액(B) 486억원과 '25년 상·하반기 운용수익금 등(C) 970억원을 차감하여 순이자비용 소요 예상액을 99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025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본예산 산출 근거]

(산출) '25년도 순이자비용(이자 - 운용수익) 소요 예상액 : 992억원

- '25년 총 예상 이자비용(A) : 2,448억원
 ('21~'23년 일시차입 연평균잔액 7.2조원 × 예상이자율 3.4%)
- '24년말 운용수익금의 차년도 예상이월액(B) : 486억원
- '25년 상/하반기 운용수익금 등(C) : 970억원
- 이자비용(A) - 운용수익(B+C) = 992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2021~2025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차입실적 (평잔, 조원)	재정증권 발행	4.9	2.8	7.5	8.2	7.6
	한은 일시차입	0.1	1.8	4.4	5.9	5.8
	합계	5.0	4.5	12.0	14.2	13.4
이자상환 (억원)	국고금 운용수익	212	668	4,244	2,758	1,504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	81	-	-	2,107	2,063
	합계	293	668	4,244	4,865	3,567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러한 예산안 산출 방식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단기차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원 부족을 초래하였다. 최근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 평잔 금액은 2023년 12조원, 2024년 14.2조원, 2025년 13.6조원 등 세수결손 등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예산안 제출 시점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2024년 집행현황을 통해 평잔이 14조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예상조달금리는 보수적으로 높게 설정하였으나, 차입 물량은 매우 과소하게 계상하였다. 2025년 실적 기준 합산 평잔은 13.4조원으로 본예산 편성 기준(7.2조원)의 약 1.9배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이자비용(3,567억원)은 본예산 예상치(2,448억원)를 1,119억원(45.7%) 초과하였다.

이러한 과소 편성에 따라 자체이용에 의한 사후 보전이 반복되고 있다. 2025년에는 본예산 992억원으로는 부족하여 3차례에 걸쳐 총 1,098억원의 자체이용을 실시하였는바, 그 규모가 본예산을 초과(110.7%)하는 수준이다.

2024년에도 본예산 99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누적 기준 사상 최대치(165조원)의 한은 일시차입이 발생하면서 1,115억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용한 바 있다.

2026년에도 5월 20일까지 집행액이 본예산 1,100억원에 근접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5월 22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으로부터 558억 2,8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현액은 1,658억 2,800만원이다. 참고로 6월 말까지 이를 전액 집행하였으며, 7월부터 지급해야하는 재정증권 발행 이자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A)	이·전용(B)	예산현액(A+B)	결산
2024	99,209	111,500	210,709	210,709
2025	99,209	109,835	209,044	206,307
2026.6	110,000	55,828	165,828	165,828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연례적이고 과도한 이·전용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2-2.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일시차입비용 완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2011년 이후 정부의 연도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은 일시차입¹⁾ 현황을 살펴보면,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누적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반기에 12조원의 세입감액경정을 포함하여 19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있었던 2013년에는 111.2조원(누적 기준)의 일시차입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도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 따라 142.5조원의 일시차입이 있었다.

[2011~2025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연도	재정증권			한국은행 일시차입			합계	
	누적 발행 (조원)	평균조달 금리(%)	이자비용 (억원)	누적 차입 (조원)	평균조달 금리(%)	이자비용 (억원)	발행+차입 (조원)	이자비용 (억원)
2011	11.7	3.220	289	8.0	2.880	11	19.7	363
2012	22.4	3.300	1,372	37.0	3.463	257	59.4	1,815
2013	36.7	2.640	1,669	74.5	2.734	975	111.2	2,644
2014	38.0	2.560	1,685	33.0	2.648	165	71.0	1,850
2015	37.5	1.690	1,112	51.0	1.985	196	88.5	1,308
2016	20.9	1.450	529	9.0	1.664	26	29.9	555
2017	7.9	1.340	159	2.0	1.522	2	9.9	160
2018	2.0	1.570	24	-	-	-	2.0	24
2019	48.7	1.710	1,369	36.0	1.796	280	84.7	1,648
2020	45.3	0.740	610	97.2	1.004	523	142.5	1,133
2021	28.9	0.550	275	7.5	0.704	18	36.4	293
2022	16.3	1.430	394	34.2	1.339	273	50.5	668
2023	44.5	3.560	2,747	117.6	3.562	1,497	162.1	4,244
2024	49.8	3.510	2,964	165.0	3.537	1,901	214.8	4,865
2025	48.0	2.620	2,026	155.5	2.736	1,541	203.5	3,567

주: 음영처리된 연도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이하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4조원과 30.8조원의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간 발생한 일시차입 이자비용은 총 9,109억원에 달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우에도 관련 이자비용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5년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10.3조원 규모의 세입감액경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기집행 실적도 전년 대비 상향되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20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567억원의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나. 분석의견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일시차입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시차입이 발생하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시차입은 주로 상반기에 발생하나 2025년에는 하반기에도 7~9월을 중심으로 대규모 일시차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10.3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과 경기진작(17.3조원) 및 민생안정(5.3조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31.8조원의 제2회 추경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즉, 국고채 추가 발행(22.7조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여 일시차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2025년 월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재정 증권	누적	-	8.0	8.0	10.0	8.0	8.0	2.0	2.0	2.0	-	-	-	48.0
	평잔	-	3.6	12.0	17.6	17.7	17.7	14.5	5.2	2.4	-	-	-	7.6
	말잔	-	8.0	16.0	18.0	18.0	18.0	8.0	2.0	2.0	-	-	-	-
한은 일시 차입	누적	5.7	1.5	31.5	23.0	-	17.9	25.3	31.6	14.0	-	-	5.0	155.5
	평잔	1.8	0.4	13.9	8.7	-	4.0	11.1	10.1	11.5	-	-	0.5	5.8
	말잔	5.4	1.3	24.0	-	-	17.9	0.2	22.9	14.6	-	-	5.0	5.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연도별 국고금 운용수익 및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고금 운용수익(A)	1,433	1,628	824	253	1,170	2,857	2,762	1,310	1,147
운용수익 총당 이자비용(B)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504
한은 일시차입	2	-	280	387	10	273	1,497	740	981
재정증권 발행	159	24	1,368	564	202	394	2,747	2,018	523
적립금 증감(A-B)	1,273	1,604	△824	△698	958	2,189	△1,482	△1,448	△357
운용수익 적립금(말잔)	2,059	3,662	838	141	1,099	3,287	1,805	357	0
일반회계 세입 납입액	-	-	2,000	-	-	-	-	-	-

주: 1. 차입 이자비용(B)은 총 발생 이자비용 중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한 금액이며, 잔여분은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에서 지출

2. 운용수익 적립금(말잔) = 전년말 적립금 + 적립금 증감(A-B)

자료: 재정경제부

일시차입은 국고금 운용과정에서의 단기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인 만큼, 국고금 운용수익을 통해 그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일시차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22년 이전까지는 운용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한 차입이자 부족분을 일부 보조하는 보충적 재원으로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이 활용되었다. 반면 최근 발생하는 일시차입 이자비용은 연간 발생하는 국고금 운용수익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기존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2024년말 기준 357억원의 국고금 운용수익이 적립되어 있었으나, 2025년 운용수익 1,147억원을 합해서도 연간 발생한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다.

이마저도 2025년 4분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157억원은 2026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을 통해 집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2025년 이자비용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²⁾

2) 이자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있으나, 이는 이자지급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일시차입 이자비용의 발생 및 자원별 총당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발생 이자비용(①)	293	668	4,244	4,865	3,567
운용수익 총당(②)	212	668	4,244	2,758	1,504
사업비 지출(①-②)	81	-	-	2,107	2,063
운용수익 총당률(②/①)	72.4	100.0	100.0	56.7	42.2
운용수익 적립금(말잔)	1,099	3,287	1,805	357	0

주: 1. 총 발생 이자비용(①)은 재정증권 발행 및 한은 일시차입 이자비용 합계

2. 사업비 지출은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결산금액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6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일자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집행액	산출 근거
2026.01.15	15,745.5	'25.10~12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26.02.19	868.8	'26.1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26.04.08	11,652.5	재정증권 1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4.10	7,682.8	'26.3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26.04.15	11,392.5	재정증권 2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4.23	11,435.0	재정증권 3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4.29	11,565.0	재정증권 4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5.06	11,522.5	재정증권 5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5.13	15,046.0	재정증권 6차 발행분(2.5조원) 및 '26.4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26.05.20	11,565.0	재정증권 7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5.27	11,565.0	재정증권 8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6.02	11,522.0	재정증권 9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2026.06.10	11,480.0	재정증권 10차 발행분(2.5조원)에 대한 이자
합계	143,042.6	-

주: 재정증권은 상환일 전날에 이자를 납부해야 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에 더해 2025년말 기준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 잔액이 없으므로, 2026년에 발생하는 일시차입 비용은 2026년 국고금 운용수익³⁾과 동 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1,100억원이나, 한 차례 자체전용을 통해 예산현액이 1,658억 2,800만원까지 증가하였음에도, 2026년 6월 중순 기준 1,430억 4,260만원을 집행하여 추가적인 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42.5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에 수반되는 이자비용만 2026.7월 말 기준 최소 1,955억원으로, 본예산을 크게 상회한다.

[2026년 월별 재정증권 발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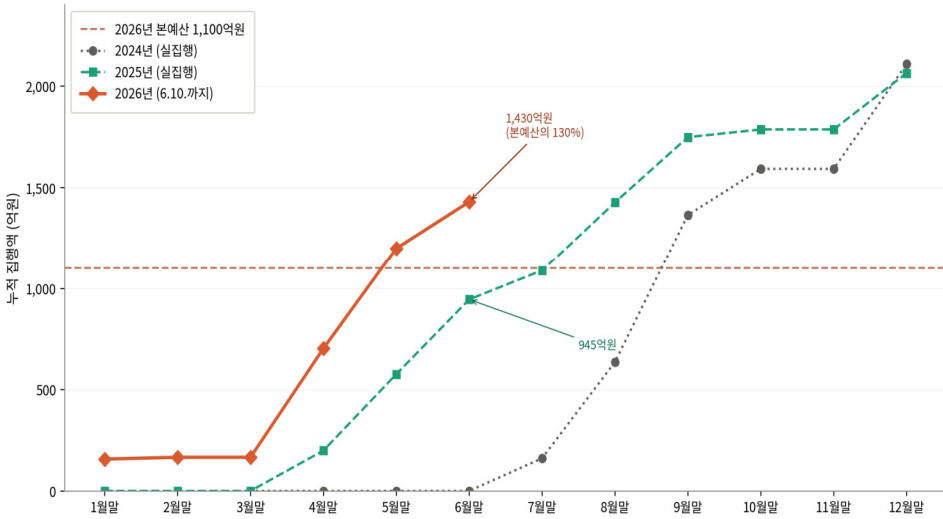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재정증권 발행규모	-	10조원	10조원	12.5조원	10조원	42.5조원
예상 이자비용 (2개월 후 지출)	-	460억원	460억원	575억원	460억원	1,955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2025년과 비교하면 2026년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지출 진도율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24년에는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상반기 차입이자를 모두 충당하고 7월부터 동 사업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에도 4월부터 첫 집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년 대비 세수여건이 좋은 상황임에도 국고금 운용수익 잔액이 없는 2026년에는 1월부터 157억원이 집행되었고, 5월말 기준 이미 본예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아래 그래프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3) 국고금 운용수익은 매년 6월과 12월 말에 국고로 귀속된다.

[2024~2026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진도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26년에는 예년과 달리 국고금 운용수익금 잔액이 없어 1월부터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것이며, 상반기 지출이 집중되는 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1월부터 사업을 집행하여 5월말 기준 본예산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출 진도율이 우려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4년은 3월말까지, 2025년은 6월말까지 국고금 운용수익금으로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사업 진도율이 느리게 나타난 것일 뿐, 운용수익금 잔액이 없어 1월부터 사업을 집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5월말 기준으로는 2026년 지출 진도율을 오히려 상회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쟁점은 연간 발생하는 국고금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일시차입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적립된 운용수익마저 고갈되었고, 그로 인해 2026년에는 상반기부터 자체전용이 발생하는 등 지출 진도율이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상반기 지출이 집중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했다면,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시 보다 여유있게 재원을 확보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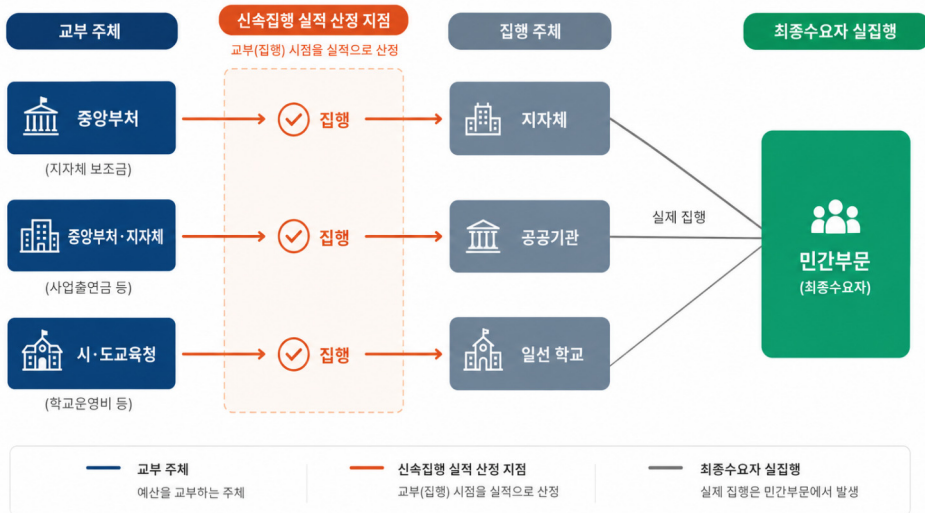
나아가 본예산 초과에 따른 자체전용 의존은 결과적으로 국회가 승인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일시차입 이자비용으로 사후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결산 단계에서 비로소 그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본

예산 단계의 국회 심사 시점에는 실제 비용이 과소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바, 재정 투명성 관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일시차입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확립된 연구결과가 부재하고, 신속집행 대상사업 중 출연·출자·보조의 경우에는 정부가 교부한 금액이 실제 민간의 경제적 효과로 연결되기에는 시차가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 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 비용과 재무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신속집행에 따른 추가적 이자비용보다 신속집행의 민간 이자비용 보조 효과가 더 크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⁴⁾ 즉, 재정집행을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자금공급이라고 해석하면, 민간의 자금 조달금리는 무위험 이자율인 정부의 자금조달 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수록 균등집행 대비 그 차액만큼 민간은 이자율 보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교부성 예산의 집행방식과 신속집행 실적 산정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구체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신속집행의 이자비용 보조 효과는 이자비용의 1.48~6.39배로 분석함

그러나 이는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즉각 전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간 국회예산정책처⁵⁾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에 교부된 후 실제 현장 집행(실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한 한계가 있다.

감사원 역시, 외형상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높아지나 일부 자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실제 집행되지 못한 채 공공부문에 장기간 묶여 있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없이 재정운용의 효율성만 저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

결론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일시차입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시차입이 발생하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5)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 등

6) 감사원(2020), 「재정조기집행 점검」

12-3.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국고금 운용수익 세외수입 계상 필요

가. 현황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①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② 금융회사 등 예치 또는 단기 대여, ③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매매, ④ 그 밖의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와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연도별 국고금 운용수익 및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고금 운용수익(A)	1,433	1,628	824	253	1,170	2,857	2,762	1,310	1,147
운용수익 총당 이자비용(B)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504
한은 일시차입	2	-	280	387	10	273	1,497	740	981
재정증권 발행	159	24	1,368	564	202	394	2,747	2,018	523
적립금 증감(A-B)	1,273	1,604	△824	△698	958	2,189	△1,482	△1,448	△357
운용수익 적립금(말잔)	2,059	3,662	838	141	1,099	3,287	1,805	357	0
일반회계 세입 납입액	-	-	2,000	-	-	-	-	-	-

주: 1. 차입 이자비용(B)은 총 발생 이자비용 중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총당한 금액이며, 잔여분은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에서 지출

2. 운용수익 적립금(말잔) = 전년말 적립금 + 적립금 증감(A-B)

자료: 재정경제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나. 분석의견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7조²⁾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3조³⁾는 그 예외사항으로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 출자, 전대차관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국고금 운용수익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2항⁴⁾은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가가 보유한 자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명백한 재정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처리됨에 따라 국가 재정 총괄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 2)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은 예산 외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사전에 그 발생 규모와 예측 적정성, 사용 내역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월별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	-	-	2	4	912	-	3	7	6	3	1,826
2024	-	-	3	-	4	694	-	122	-	-	-	487
2025	-	-	2	-	-	731	-	-	-	-	-	414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국고금 운용수익은 세입여건, 금리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2항은 국고금 운용수익의 사용처를 ①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지급, ② 국고금 운용 관련 경비지급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입법 취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변동성 문제는 운용수익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세입 항목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출자수입,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등 다수의 세입 항목이 시장여건·경기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다. 특히 2021~2025년 운용수익의 변동성은 한은잉여금 등 주요 변동성 세입 항목과 비교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2019년에는 운용수익 적립금 중 2,000억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입된 바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상의 운용수익 사용처 제한이 형식적 통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등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2항이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임의로 확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과 세입세출 외 처리 사이에는 논리적 관계가 부족하다. 즉, 사용처 제한은 문언 그대로 자금의 용도를 통제하는 수단일 뿐, 국회의 재정 감독을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고금 운용수익 전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거나,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⁵⁾

5)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020호, 제2217109호)

가. 현황

기타재산이자외수입¹⁾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원금)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은 797억 2,700만원이며, 1,745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미수납되었다.

기타재산이자수입²⁾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이자) 및 공자기금 총괄계정 운용수익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은 2,610억 9,900만원이며, 3,358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24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234억 2,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79,727	79,727	79,727	174,545	-	174,545	-	-
기타재산 이자수입	261,099	261,099	261,099	335,832	312,411	23,422		373,726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공자기금)가 채권자에 대하여 대지급을 실시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유하게 되며, 동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공자기금 총괄계정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구조이다. 이때 구상금 원금은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세목으로, 구상금 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목으로 각각 구분 계상된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54-547

2)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54-546

2025회계연도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미수납액 234억원은 모두 구상금 이자이며, 원금(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모두 미수납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한 미수납액은 1,979억 6,700만원이다. 해당 구상금 원리금은 정부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회수해야 할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경협차관' 보증채무 관련 사안이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 직후,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구 소련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1992년까지 구 소련에 총 14.7억달러(은행단 현금차관 10억달러, 한국수출입은행 소비재차관 4.7억달러)의 경제협력차관을 공여하였다. 이 중 은행단차관 10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의 90%를 지급보증하였다.

1991년 12월 구 소련의 해체에 따라 채무를 승계한 러시아연방이 외환사정 악화 등으로 약정된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양국은 1995년 양국 정부간 협정을 통해 무기 현물상환 방식에 합의하여 같은 해 7월부터 T-80U 전차,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 등을 도입하는 제1차 불곰사업(1995~1998년)을 추진하였다.³⁾

1997년 11월 20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무기·기술 현물상환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제1차 불곰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까지 회수된 차관은 약 2.1억달러에 그쳤다.

2003년 6월말 기준 누적 회수 4.6억달러를 제외한 약 22.4억달러의 원리금이 미상환 상태로 남게 되자, 양국은 20여 차례의 장관급·실무급 회담을 거쳐 2003년 6월 20일 미상환 차관의 채무재조정에 최종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약 6.6억달러의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잔여 채무 약 15.8억달러를 2003년 7월 1일부로 재조정하여 2025년까지 22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상환방식은 2003~2006년 방산물자 등 현물상환 2.5억달러, 2007~2025년 현금상환 13.3억달러로 구성되었다.

3) 양국은 '95.7.10일 양국 간 협정(홍재형 부총리와 Davydov 부총리 서명) 공식적으로 체결하여 '93년 末 연체원리금(387.5백만불), 연체이자(4.3백만불) 및 유예이자(58.9백만불)를 '95~'98년간 헬기, 방산물자, 원자재로 상환하기로 합의

[대러 경험차관(보증채무) 공여 및 회수 추진 경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채무재조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200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되는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러시아 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4년 3월 국채 16.6억달러를 발행하여 채권은행단(한국산업은행 등 9개 기관)에 대지급을 실시하였고, 채권은행단의 러시아에 대한 채권을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대러 구상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게 되었다. 정부가 인수한 채권은 채무재조정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2년간 러시아로부터 회수(11.7억달러)하여 국채상환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부족액 약 4.9억달러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⁴⁾

한편, 2003~2006년 방산물자 현물상환 단계에서는 제2차 불곰사업이 추진되어 카모프 Ka-32 탐색구조헬기 등이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현금상환이 개시되었다. 제2차 불곰사업 종료 이후 제3차 불곰사업 추진이 논의되었으나 양국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해경 헬기 등 제한적 추가 현물상환에 그쳤다.

나. 분석의견

첫째, 단기간 내 회수가 어려운 본 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는 소멸시효 중단 등 채권 보전 노력을 지속하고, 채권 잔액·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결산서를 통하여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소멸시효 중단 조치, 재협상·회수 노력 등 향후 처리방향에 관한 별도 설명자료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가 후속 조치를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채무재조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인수한 채권은 2007년부터 현금상환이 개시되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금 3,000만 달러와 이자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3년 6월 상환분부터 회수가 전면 중단되어, 2025년 12월 도래분까지 6회분(원금 1.8억 달러, 수은 상환분 제외)의 원금 및 이자가 미회수 상태이다.

4) 상환 조건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금 3,500만 달러와 Term SOFR+0.5%p의 이자 지급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중 500만 달러는 수출입은행이 상환받는 금액이다.

2025회계연도는 2003년 채무재조정 약정상 분할상환의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현재 2개 세목에서 매년 발생하는 징수결정액은 동 분할상환 약정에 근거한 정기적 채권 인식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지 못해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납 원금은 원화 환산 2,289억원이며, 협정상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본 예산에 구상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對 러시아 경험차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원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달러)

연도	원금		이자		비고
	원화	달러	원화	달러	
2023	71,956	59	5,404	9.7	2023년 6월·12월분
2024	174,545	59	23,422	6.6	2024년 6월·12월분
2025	174,545	59	23,422	2.4	2025년 6월·12월분
합계		178		18.8	-

주: 미수납액 중 원화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서 상의 금액으로 실제 연간 미수납액과 다른
자료: 재정경제부

문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본 구상채권에 대한 현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등 국제 제재 강화로 양국 간 정상적인 외환결제 경로가 제약되고 있다. '22.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대러 차관 상환에 대한 특별허가를 발급받아 5차례에 걸쳐 갱신(현재 보유한 특별허가는 '27.6.15일까지 유효)함으로써 미국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차관을 상환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가 한시적으로 확보되었으나, 同 특별허가의 추가 갱신여부는 불투명하다.

둘째, 러시아 정부는 자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한 외화채무를 자국 통화(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자국 법령을 근거로 우리 측에 루블화 상환 입장을 통보한 반면, 우리 정부는 당초 차관 공여통화인 달러화 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결제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루블화의 높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루블화로 수취하더라도 실질 회수액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 제재 환경의 장기화로 단기간 내 결제방식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물론 정부로서는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만기연장이나 금리 재조정 등을 위한 재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무기·천연자원 등 현물로 회수하는 방식도 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반면, 본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장부금액이 0원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 법적 청구권은 존속하고 있어, 이를 결손처분하여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회수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외교적·재정적 부담도 크다.

한편 정부는 본 구상채권에 대하여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약 2,535억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약 18억원)을 설정하여 구상채권액 약 2,553억원 전액의 장부금액을 0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동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회계상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직전 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장부금액이 0원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채권의 회수 불확실성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공공자금관리기금 대러 구상채권의 회계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구상채권액(A)	261,552	255,307
현재가치할인차금(B)	△1,814	△1,771
대손충당금(C)	△259,738	△253,536
장부금액(D=A+B+C)	0	0

- 주: 1. 구상채권액(A): 정부가 러시아에 대하여 보유한 청구권의 명목금액
 2. 현재가치할인차금(B): 장기채권의 명목금액을 현재가치로 조정하기 위한 차감 항목
 3. 대손충당금(C): 구상채권액(A)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차감 표시한 것
 4. 장부금액(D): 0원이라는 것은 채권의 명목금액 전액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채권 자체(법적 청구권)는 그대로 존속함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러시아로부터의 구상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재정경제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구서를 송부하는 등 채권 보전 노력을 지속하고, 소멸시효 중단 조치, 재협상·회수 노력 등 향후 처리방향에 관한 별도 설명자료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가 후속 조치를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⁶⁾

5) 다만, 2024회계연도에 비해 2025회계연도의 구상채권액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하도록 한다.

둘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이 부정확하게 계상되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다.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총괄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징수결정액이 곧 수납액과 연결되므로 미수납액은 대리 보증채무 구상금 이자부분의 미납액이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해당 항목 전체가 대리 보증채무 구상금 원금 미납액이다.

즉, 두 세목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수납액은 모두 대리 보증채무 구상금 원리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각 세목의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2023~2025회계연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2023	71,956	71,956	71,956	71,956	-	71,956	-
	2024	77,239	77,239	77,239	174,545	-	174,545	-
	2025	79,727	79,727	79,727	174,545	-	174,545	-
기타재산 이자수입	2023	164,305	164,305	164,305	523,193	517,789	5,404	-
	2024	212,805	312,805	312,805	426,676	403,254	23,422	-
	2025	261,099	261,099	261,099	335,832	312,411	23,422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원금은 매년 5,900만달러로 3년간 총 17,700만달러이다.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전년도 미수납액 이월분 + 당해연도 신규 발생 미수납액'으로 합산 계상되고, 수납액이 없으면 그 전액이 다시 미수납으로 계상된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단식으로 원금 및 이자 미수납액이 증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경우, 2024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1,745억 4,500만원)에 2025년도 미수납액 797억 2,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이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구상금 이자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對러 차관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 재무제표 내의 구상채권 항목에서는 구상채권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해당 감소분은 2024년말 대비 2025년말 기준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재무제표 중 기타금융자산 구상채권]

〈구상채권 당해연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말			
	구상채권액 (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 (C)	장부금액 (D=A+B+C)
공공자금 관리기금	255,306,752,470	(1,770,795,920)	(253,535,956,550)	-

〈구상채권 직전연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전기말			
	구상채권액 (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 (C)	장부금액 (D=A+B+C)
공공자금 관리기금	261,551,973,050	(1,814,112,490)	(259,737,860,560)	-

자료: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재무제표」

이처럼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이 2024년과 동일한 상황인데, 이는 2025년 미수납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투명한 결산 심사를 위해 2026년 징수결정액은 3개년치의 누적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공채원금상환¹⁾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개인투자용국채 포함)의 만기도래에 따른 원금상환 및 조기상환 금액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117조 5,350억 5,300만원 중 114조 4,91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3조 436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공채원금상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이전용등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공채 원금상환	117,535,053	-	117,535,053	114,491,448	3,043,605	116,217,993	117,245,524

자료: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를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장기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여, 2024년 6월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되었으나, 장기물에 대한 수요 부족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년물이 추가로 발행되기 시작했고, 2026년 4월부터는 3년물(이표채, 복리채)도 신설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2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9862-981

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2)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2억원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물, 5년물,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투자용 국채의 2025년 발행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미달하였으며,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요 촉진을 위해 2026년부터 가산금리를 급격하게 인상 하였으나, 기존 발행분의 중도상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총 1조 2,057억원이 발행되어 2024년 대비 0.5조 원이 증가하였고, 2025년 연간 발행 목표인 1.3조원 대비로는 0.1조원 미달하였다.

2) 단, 2026년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3년물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연도별 발행 실적]

(단위: 억원)

발행연도	5년물		10년물		20년물		발행액 합계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2024	미발행		7,900	5,979	2,600	1,397	7,376
2025	6,600	7,502	4,900	3,793	1,200	762	12,057

주: 2024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년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발행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발행액 합계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2025.01	미발행		800	737	200	131	868
2025.02			800	432	200	73	505
2025.03	600	790	500	353	100	57	1,200
2025.04	700	912	400	240	100	48	1,200
2025.05	800	933	400	314	100	52	1,299
2025.06	900	1,095	400	231	100	51	1,377
2025.07	900	606	400	262	100	63	931
2025.08	900	945	400	345	100	83	1,373
2025.09	900	932	400	316	100	72	1,320
2025.10	900	511	400	236	100	54	801
2025.11	900	778	400	327	100	78	1,183
합계	6,600	7,502	4,900	3,793	1,200	762	12,057

주: 1. 2025년 12월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2.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상품별로는 5년물의 발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있는 10년물·20년물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이 지속되었다. 다만, 정부의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25.10월부터 5년물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부진하였다.

한편, 2026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10년물 167억원 등 총 248억원 규모의 중도환매가 이루어졌다.

반면, 2026년에는 1월에만 10년물 200억원 등 총 337억원의 중도환매가 발생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도환매 물량보다도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5년물의 중도상환이 시작된 2026년 4월에는 5년물 85억원을 포함해 총 376억원의 중도상환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2025년 3월 5년물 발행액은 790억원으로, 이 중 10.7%인 85억원에 대한 중도환매가 발생한 것이다.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추이]

(단위: 억원)

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합계
2025.07	-	15	17	32
2025.08	-	24	16	40
2025.09	-	37	9	46
2025.10	-	29	17	46
2025.11	-	35	13	48
2025.12	-	27	9	36
2026.01	-	200	137	337
2026.02	-	221	115	336
2026.03	-	205	87	292
2026.04	85	234	57	376
2026.05	109	185	56	350
2026.06	158	209	53	420

주: 1. 2024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

2.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므로 5년물은 2026년 4월부터 중도환매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중도환매 급증의 주된 요인은 가산금리의 급격한 조정에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금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채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의 미세조정을 통해 합산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왔다. 실제 2025년 7월 이후 10년물 합산금리는 3.385%, 20년물은 3.50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6년 1월 발행분부터 10년물 합산금리가 4.410%, 20년물이 4.615%로 각각 약 1.0%p 이상 상향 조정되었다. 2026년 5월 20년물의 가산금리는 1.30%까지 상승하였다.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추이]

(단위: %)

발행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2025.01	미발행			2.665	0.500	3.165	2.750	0.500	3.250
2025.02				2.840	0.350	3.190	2.770	0.500	3.270
2025.03	2.685	0.350	3.035	2.840	0.350		2.705	0.500	3.205
2025.04	2.680	0.350	3.030	2.830	0.350	3.180	2.700	0.500	3.200
2025.05	2.440	0.590		2.700	0.480		2.560	0.640	
2025.06	2.480	0.550		2.695	0.485		2.715	0.485	
2025.07	2.655	0.375	3.030	2.885	0.500	3.385	2.825	0.675	3.500
2025.08	2.625	0.405		2.835	0.550		2.805	0.695	
2025.09	2.580	0.450		2.820	0.565		2.865	0.635	
2025.10	2.585	0.445		2.835	0.550		2.805	0.695	
2025.11	2.735	0.295	2.885	0.500	2.945	0.555			
2026.01	3.245	0.300	3.545	3.410	1.000	4.410	3.365	1.250	4.615
2026.02	3.385	0.200	3.585	3.520	1.000	4.520	3.565	1.100	4.665
2026.03	3.390	0.200	3.590	3.710	1.000	4.710	3.580	1.280	4.860
2026.04	3.735	0.100	3.835	3.695	1.050	4.745	3.840	1.100	4.940
2026.05	3.530	0.300	3.830	3.715	1.050	4.765	3.610	1.300	4.910
2026.06	3.940	0.100	4.040	4.295	0.500	4.795	4.145	0.800	4.945

주: 1. 2025년 12월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2. 2026년 4월부터 3년물(가산금리 X) 발행을 시작하였으나, 분석의 편의상 제외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가 복리로 가산되는 수익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합산금리 1%p의 차이가 만기 시점의 실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 상대적 저금리 조건하에서 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 채권의 기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발행분을 중도환매한 후 신규 발행분으로 교체 매입하려는 차익 실현 유인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매-재매입 행태는 가산금리 대폭 인상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과 같이 시장금리 변동과 괴리된 인위적 가산금리 체계가 유지되는 한, 2025년 기발행분에 대한 중도환매 압력은 2026년 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상반기 발행분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2026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도래하므로, 중도환매 가능 물량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중도환매 규모는 현재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발행 수요의 일부는 2025년 기발행분의 중도환매에 수반되는 대체 수요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를 발행 초기 투자자의 자산 재조정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용 국채가 장기보유 유도를 위해 분리과세·복리이자 등의 유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발행 후 단기간 내 중도환매 증가는 제도 본래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안정적 성장과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의 객관적 제도화 등 발행 조건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설정·조정에 있어 시장금리와 연동성을 강화하고, 조정 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금리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으로 구성되며, 표면금리는 발행 직전 시장에서 형성된 동일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가산금리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다. 제도 설계의 본래 취지상 가산금리는 개인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적 유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2026년 1월 이후 가산금리 운용 양상을 살펴보면, 그 조정 폭과 방향이 시장금리의 변동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하반기 10년물 가산금리는 0.500~0.565% 수준이었으나 2026년 1월부터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20년물 역시 동 기간 0.555~0.695%에서 1.10~1.30%로 급등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시장금리에 해당하는 10년물 표면금리는 2.885%(2025.11)에서 3.715%(2026.05)로, 20년물 표면금리는 2.945%에서 3.610%로 변동하여, 가산금리 인상 폭이 시장금리 변동 폭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가산금리의 조정 방향에서도 시장금리와의 정합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4월 대비 5월 2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는 3.84%에서 3.61%로 23bp 하락하였음에도 가산금리는 오히려 1.10%에서 1.30%로 20bp 인상되었다. 이는 20년물 표면금리가 10년물에 비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반면, 2026년 6월에는 국채 발행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표면금리가 급등하면서 결국 정부는 가산금리를 1%p 이상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이는 10년물 및 20년물의 합산금리가 5% 이상 초과하는 것은 향후 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추이]

(단위: %)

발행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2025.07	2.655	0.375		2.885	0.500		2.825	0.675	
2025.08	2.625	0.405		2.835	0.550		2.805	0.695	
2025.09	2.580	0.450	3.030	2.820	0.565	3.385	2.865	0.635	3.500
2025.10	2.585	0.445		2.835	0.550		2.805	0.695	
2025.11	2.735	0.295		2.885	0.500		2.945	0.555	
2026.01	3.245	0.300	3.545	3.410	1.000	4.410	3.365	1.250	4.615
2026.02	3.385	0.200	3.585	3.520	1.000	4.520	3.565	1.100	4.665
2026.03	3.390	0.200	3.590	3.710	1.000	4.710	3.580	1.280	4.860
2026.04	3.735	0.100	3.835	3.695	1.050	4.745	3.840	1.100	4.940
2026.05	3.530	0.300	3.830	3.715	1.050	4.765	3.610	1.300	4.910
2026.06	3.940	0.100	4.040	4.295	0.500	4.795	4.145	0.800	4.945

주: 2025년 12월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러한 가산금리 운용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시장성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채는 시장금리에 기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금리부 채권으로서, 그 수요 역시 시장의 금리 전망과 투자자의 위험선호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가산금리가 개인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적 유인으로서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산금리는 시장금리(표면금리)의 등락과 무관하게 10년물 1.0% 내외, 20년물 1.1~1.3% 수준에서 고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가산금리가 하향 조정된 것은 표면금리 급등으로 합산금리가 5%에 근접하여 기금 운용 부담이 현실화된 2026년 6월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가산금리가 보완적·탄력적 유인이라기보다, 발행 실적과 기금 부담에 연계된 정책 변수로 운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설정하는 가산금리가 합산금리의 주된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하에서는, 투자자의 매입 의사결정이 시장금리 전망보다 정부의 가산금리 정책 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시장성 투자상품 본연의 성격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정부가 금리 조건을 조정하는 정책적 상품에 가깝게 운영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기준 금리 변동 내역]

(단위: %, %p)

구분	2025.11.	2026.01.	증감폭	증감률
표면금리	2.945	3.365	+0.420	+14.3
가산금리	0.555	1.250	+0.695	+125.2
합산금리	3.500	4.615	+1.115	+31.9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실제로 2026년 4월 기준 20년물 합산금리 4.94%는 동일 시점 시중 정기예금 금리(3%대) 대비 상당한 금리 우위를 점하고 있어³⁾, 국채 투자가 아닌 고금리 저축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요 구조 하에서는 향후 가산금리가 하향 조정될 경우 발행 수요가 감소하는 등 정책 변수에 대한 과도한 민감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2026년 월별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발행액과 중도환매액]

(단위: 억원)

발행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신규발행	중도상환	신규발행	중도상환	신규발행	중도상환
2026.01	900	-	400	200	100	137
2026.02	600	-	800	221	300	115
2026.03	600	-	900	205	300	87
2026.04	500	85	1,100	234	300	57
2026.05	518	109	1,100	185	282	56
2026.06	600	158	634	209	144	53

주: 5년물은 2026년 4월부터 중도환매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특히 분리과세·복리 효과를 고려한 세후 실효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가산금리 설정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개인의 자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연금저축펀드, IRP, ISA, 저축성 보험, 리츠, TDF 등)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투자용 국채발행을 통하여 저축 및 장기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달성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목표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인위적인 가산금리 체계를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저축성 국채) 해외 사례]

국가	국채명	구조
미국	Series EE	· 연 2.4% (만기 30년 고정금리, '26.5월 기준) - 20년 이상 보유시 원금 2배 보장
	Series I	· 연 4.26% ('26.5월 기준) - 고정금리(0.9%) + 6개월마다 바뀌는 물가상승률 합산
영국	Income Bonds	· 연 3.4% (변동금리, '25.5월 기준) - 영국은행 기준금리 + 일반 저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싱가포르	Savings Bond	· 1년차 1.46% ~ 10년차 2.47%('25.5월 기준) - 매달 발행 직전 시점의 10년물 유통 국채금리를 반영하되, 연차별로 금리가 올라가는 Step-up 구조
뉴질랜드	Kiwi Bonds	· 만기별 연 2.25%(6개월 만기) ~ 연 3.5%(4년 만기) - 뉴질랜드 국내 전체 금리의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

자료: 재정경제부

가산금리는 본래 장기보유 유인을 보완하는 부수적 수단으로 설계된 것임에도, 현재는 합산금리의 주된 변동요인이자 매입 의사결정의 핵심변수로 기능하고 있어 시장성 투자상품으로서의 정체성과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설정·조정에 있어 시장금리와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조정 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2021.9)

나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일반 국고채 대비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산금리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2026년 4월부터 신규 발행된 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이표채·복리채)는 분리과세·가산금리 등 핵심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에도 거래제한은 그대로 부과되어, 만기별 혜택 체계가 일관되지 않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종전 5년물·10년물·20년물 중심으로 운영되던 개인투자용 국채에 더하여, 2026년 4월부터 3년물 이표채 및 복리채를 신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2026년 6월 발행분 기준 종목별 발행한도는 3년물 이표채·복리채 합산 100억원으로, 5년물(500억원), 10년물(1,100억원), 20년물(300억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발행 추이]

(단위: 억원)

발행연월	3년물 이표채			3년물 복리채		
	발행한도	발행금리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금리	발행액
2026.04	100	3.47%	100	100	3.47%	100
2026.05	50	3.45%	50	50	3.45%	50
2026.06	30	3.565%	20	70	3.565%	39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3년물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의 핵심 설계 요소인 ①만기보유 시 분리과세 적용, ②일반 국고채 대비 가산금리 부여, ③가산금리의 복리 산입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발행분 3년물의 적용금리는 표면금리 3.565% 단일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 결과 동 상품의 현금흐름은 일반 3년 만기 이표채 국고채와 사실상 동일하며, 복리채 역시 표면금리만으로 복리 계산되어 동일 금리 수준의 시중 저축성 상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개인투자자가 일반 국고채를 액면가로 직접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3년물 신설은 개인의 국채시장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다만 동 상품이 접근성 제공을 정책 목적으로 한다면, 이를 위해 부과되는 거래제한(소유권 이전 금지, 질권 설정 금지, 발행 후 1년간 환매 제한)과 그에 걸맞은 보상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 5·10·20년물의 경우 거래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분리과세·가산금리·복리 산업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3년물은 동일한 거래제한을 부담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구조이다.

또한 동일한 제도 내에서 만기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양분되는 점은 제도 설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만기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이 다르다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타당함에도, 3년물에 대해서만 핵심 혜택을 일괄 배제한 현행 구조는 만기별로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동일한 '개인투자용 국채' 명칭 하에 인센티브 적용 상품(5·10·20년물)과 인센티브 부재 상품(3년물)이 혼재함에 따라,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표와 상품 라인업이 서로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한편, 3년물 발행한도가 다른 만기 상품에 비해 크게 낮게 책정된 데 대하여, 정부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전월 수요 등을 보아 발행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민간 예금 상품에 대한 구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3년물 금리를 민간 예금 평균 금리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산금리·분리과세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금리 수준을 시장 및 민간 예금 금리에 준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의 국채 접근 경로를 넓히고 국채 수요기반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가산금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확보하는 여타 만기 상품과 구별되는 긍정적 측면이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은 3년물의 금리 수준이 시장금리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정부는 3년물을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되, 인센티브 부재와 거래제한 간 균형, 만기별 혜택 체계의 일관성 등 제도 설계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고채이자상환¹⁾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30조 4,690억 3,800만원 중 30조 2,736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953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고채 이자상환	29,977,898	-	-	30,469,038	30,273,698	195,340	34,315,479	34,422,079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당초 계획액은 29조 9,778억 9,800만원이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및 연말 자체변경에 따라 4,91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

[2025회계연도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계획액	당초	제1회 추경 증감분	제2회 추경 증감분	자체변경 증감분	수정
		29,977,898	142,687	288,453	60,000

자료: 재정경제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80

나. 분석의견

2022년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이 50% 증가하였고, 매년 그 증가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대규모 순발행 기조 지속 및 단기간 내 대규모 차환 수요 집중이 국고채 조달금리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채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

2025년 결산 기준 국고채²⁾ 이자비용은 30.3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조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 비해서는 50%가 증가하였다. 또한, 2026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은 34.4조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국고채 잔액 및 이자비용]

연도	국고채 잔액		국고채 이자상환	
	금액(조원)	전년 대비 증가율	금액(백만원)	전년 대비 증가율
2020	726.8	-	17,273,739	-
2021	843.7	16.1%	18,225,615	5.5%
2022	937.5	11.1%	20,120,245	10.4%
2023	998.0	6.5%	24,030,807	19.4%
2024	1,047.1	4.9%	27,724,637	15.4%
2025	1,159.4	10.7%	30,273,698	9.2%
2026(계획)	-	-	34,422,079	13.7%



주: 이자상환은 결산 기준(단, 2026년은 계획현액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개인투자용국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이 있으며, 본 사업은 국고채와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국고채 잔액은 2020년 726.8조원에서 2025년 1,159.4조원으로 5년간 59.5% 확대되었으며, 전체 채권 대비 비중도 35.5%에서 41.9%로 높아졌다. 2023~2024년 중 순발행 규모가 각각 60.5조, 49.2조로 다소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국고채 발행량은 총 226.2조원으로 연간 발행 규모 200조원을 사상 처음 돌파하였으며, 국가채무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112.3조원)는 전년(49.2조원) 대비 63.1조원 급증하였다. 이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26년 이후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추이]

(단위: 조원)

구분	국고채 발행	국고채 상환	순발행
2020	174.5	59.2	115.3
2021	180.5	63.6	116.9
2022	168.6	74.8	93.8
2023	165.7	105.2	60.5
2024	157.7	108.5	49.2
2025	226.2	113.9	112.3

자료: 재정경제부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20년 1.38%에서 2022년 3.17%, 2023년 3.57%로 급등한 후 2025년 2.66%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잔존만기가 2014년 7.11년에서 2025년 13.74년으로 매년 장기화되고 있어, 2022~2023년 고금리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30년대 중반까지 지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평균잔존만기]

연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2020	1.38%	11.31년
2021	1.79%	11.66년
2022	3.17%	12.00년
2023	3.57%	12.64년
2024	3.22%	13.16년
2025	2.66%	13.74년

자료: 재정경제부

발행잔액 만기 구조를 보면, 30년물 비중이 2020년 21.8%에서 2025년 36.0%로 상승하였으며, 10년 초과 장기물이 전체의 54.1%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장기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차환 부담 분산을 위해 장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해온 정책적 결과이나, 이자 지출이 수십 년에 걸쳐 장기 고착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자비용의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기별 국고채 발행잔액 구성 추이]

(단위: 조원, %)

만기	2020		2022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년물	-	-	30.4	3.0	28.7	2.7	35.9	3.1
3년물	62.7	8.6	82.0	8.7	67.4	6.4	82.9	7.2
5년물	109.1	15.0	122.9	13.1	128.0	12.2	132.8	11.5
10년물	240.9	33.1	272.1	29.0	273.0	26.1	275.2	23.7
물가	8.5	1.2	6.4	0.7	6.7	0.6	6.1	0.5
20년물	136.7	18.8	154.1	16.4	167.1	16.0	171.5	14.8
30년물	158.1	21.8	253.0	27.0	346.8	33.1	417.2	36.0
50년물	10.8	1.5	19.7	2.1	29.4	2.8	37.8	3.3
합계	726.8	100.0	937.5	100.0	1,047.1	100.0	1,159.4	100.0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2025년 말 기준 2026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는 90.5조원, 2027년은 108.0조원으로 2년간 합계 198.5조원(전체의 17.1%)에 달한다. 이 물량의 차환 발행 시 당해 시점 금리가 적용되는데, 최근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은 신규발행분 외에 올해 차환 물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2025년말 기준)]

(단위: 조원, %)

연도	만기도래액	비중	비고
2026	90.5	7.8	대규모 만기
2027	108.0	9.3	대규모 만기
2028	88.1	7.6	
2029	63.2	5.5	
2030	85.3	7.4	

(단위: 조원, %)

연도	만기도래액	비중	비고
2031	51.6	4.5	
2032	30.1	2.6	
2033~2035	103.0	8.9	
2036~2040	46.5	4.0	
2041~	493.1	42.5	장기물 집중
합계	1,159.4	100.0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월별 국고채 발행액 및 조달금리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발행잔액	1,152.6	1,166.8	1,178.9	1,159.4	1,176.8	1,198.7	1,189.3	1,208.9	1,231.3
발행액	21.5	17.7	15.6	5.4	17.9	22.4	21.2	22.6	22.9
평균 조달금리	2.61	2.68	3.01	3.15	3.18	3.40	3.50	3.60	3.87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년 국채시장은 美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하 행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하방 경직성 등 복합 요인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았다. 특히 추경 편성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가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여, 5~6월 및 9~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다. 2026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외 여건에 따른 조달금리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이다. 다만 같은 의무지출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험급여·지방교부세 등은 당해연도에 국민의 생활 안정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반면, 국채이자 지출은 과거의 재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에 수반되는 사후적 금융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새로운 재정 서비스나 직접적 수혜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과거 재정운용의 결과로 고착된 경직성 지출의 성격을 가지며, 그만큼 당해연도의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할 재정여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자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5%에서 2025년 4.31%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26년 계획 기준으로는 4.57%에 달할 것으로 전

망된다. 총지출 753.1조원 중 34.4조원이 이자 지급에 소요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재원이 교육·복지·인프라 등 생산적 재정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채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 하에서 이자지출 비중의 상승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지속적으로 잠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연도별 총지출 및 국고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총지출(A)	국고채 이자상환(B)	비중(B/A)
2020	549.9	17.3	3.15
2021	601.0	18.2	3.03
2022	682.4	20.1	2.95
2023	610.7	24.0	3.93
2024	638.0	27.7	4.34
2025	703.3	30.3	4.31
2026(계획)	753.1	34.4	4.57

자료: 연도별 결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와 WGBI 편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2026년 1분기에 5조원 규모의 긴급바이백을 실시하였으며, 제1회 추경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실시하는 등 시장 수급 부담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 시장 안정에 방점이 놓여 있고, 정부가 기대하는 국채시장의 구조적 안정 요인은 사실상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수요 확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자비용 급증의 근본 원인인 국채 순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에 대한 중장기 관리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정 당국은 국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 만기구조 평탄화를 통한 차환 리스크 분산, 조달·운용 금리 구조 개선 등 이자비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방채 인수(용자) 사업¹⁾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용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100억원이나,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통해 각각 2,000억원 및 1조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1조 2,100억원이며 이 중 1조 71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388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방채 인수(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당초	수정						
지방채 인수(용자)	10,000	1,210,000	-	1,210,000	1,071,164	-	138,836	200,000

자료: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2)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사업은 「공공자금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31-100

2)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리기금법」³⁾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것이다.

공자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자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조건은 통상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이다.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자체가 시장에서 직접 발행⁴⁾하는 경우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산불 복구 지원 목적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경상북도의 발행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를 증액하였으나, 정작 경상북도에 대한 인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재해 대응 목적의 지방채 인수 편성 시 피해 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실제 집행 및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충남(1,407억원), 경기(1,346억원), 전북(1,313억원) 등 총 1조 71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인수하였다.

[2025년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계획액	집행액	지자체별 지방채 인수규모
12,100	10,712	강원 800, 경기 1,346, 경남 637, 경북 900 , 광주 630, 대구 60, 대전 590, 부산 630, 세종 299, 인천 979, 전남 375, 전북 1,313, 제주 338, 충남 1,407, 충북 407

자료: 재정경제부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지방채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7월 다음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발행 한도액과 발행계획안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확정·통보(~10.31.)한다. 회계연도 개시 후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자체는 장관 승인이 각각 필요하다.

[2025년 지방채 인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계획액	당초	제1회 추경 증감분	제2회 추경 증감분	수정(A)
	10,000	200,000	1,000,000	1,210,000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25년 3~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제1회 추경(2025.4.)을 통해 지방채 인수 사업을 당초 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하였으며, 당시 증액분 2,000억원은 경상북도의 지방채 발행수요만을 반영한 것이었다.⁵⁾

[2025년 제1회 추경안 세부 편성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수요조사 결과, 경상북도에서 2,000억원의 지방채 수요 제출 ○ 피해 복구비 추정액(4.10 기준)은 약 1.2조원(국비 7,000억원, 지방비 5,400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202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경상북도 지방채 인수는 450억원에 불과하였다(6월). 즉,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2,000억원을 경북 지역에 배정했음에도 실제로는 450억원 규모의 인수 수요만 발생했던 것이다.

[2025년 경북지역 지방채 인수 배정 현황]

(단위: 억원, %)

연간 배정액	인수액			미집행	집행률
	6월	12월	계		
2,220	450	450	900	1,320	40.5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결론적으로 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도 경북 지역의 지방채 인수 규모는 연간 900억원에 그쳤다. 이 중에 산불 복구의 긴급성에 부합하는 상반기(6월) 인수는

5) 2025년 제2회 추경안 편성시 1조원 증액 사유는 2023~2024년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재원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강 차원이었다.

450억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450억원은 12월에야 인수되어 재해 복구의 적시 지원이라는 편성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간 경북 지역의 배정액 2,220억원 대비 1,320억원이 불용되었는바, 해당 미집행 규모는 2025년 사업 전체 미집행액 1,388억원의 약 95.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년 지방채 인수사업의 미집행은 사실상 경상북도 한 곳에서 발생하였다. 공자기금의 재원 마련은 주로 국고채 발행에 의존하므로, 이처럼 미흡한 계획 수립은 불필요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025년 지방채 인수 지역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배정액	인수액		미집행	집행률
		6월	12월		
경상북도	2,220	450	450	1,320	40.5
그 외 14개 시·도	9,880	-	9,812	68	99.3
합계	12,100	450	10,262	1,388	88.5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상 긴급성이 있다고 해서 인수 자체를 상반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발행계획 및 절차에 따라 인수 요청시 요청하는 것이므로, 상반기가 아닌 연간 미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지방채 인수 시기가 지자체의 발행계획 및 인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의견과 같이 연간 미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차 추경 증액분 2,000억원의 근거가 된 경상북도 발행수요(2,000억원)와 실제 인수실적(900억원) 간에 1,1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이는 피해조사 결과만으로 추산한 발행수요를 충분한 검증 없이 편성에 반영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재해 대응 목적의 지방채 인수 편성 시 지자체의 실제 집행 가능성과 재정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편성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인수는 대부분 12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및 2023~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 조치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지방채 인수 사업의 월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12월에 집중(95.8%)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20년 이후 지방채 인수 실적 중 4분기 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2025년 분기별 지방채 인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집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	1,800,000	1,556,642 (100%)	395,250 (25.4%)	271,400 (17.4%)	131,700 (8.5%)	758,292 (48.7%)
2021	2,100,000	1,995,644 (100%)	1,101,093 (55.2%)	348,307 (17.5%)	141,340 (7.1%)	404,904 (20.3%)
2022	10,000	7,900 (100%)	2,800 (35.4%)	2,280 (28.9%)	-	2,820 (35.7%)
2023	10,000	10,000 (100%)	4,300 (43.0%)	-	-	5,700 (57.0%)
2024	2,600,000	2,596,204 (100%)	446,686 (17.2%)	593,878 (22.9%)	94,900 (3.7%)	1,460,740 (56.3%)
2025	1,210,000	1,071,164 (100%)	-	45,000 (4.2%)	-	1,026,164 (95.8%)

주: 괄호 안은 집행액 대비 비중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국고보조금)을 우선 투입하고, 잔여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므로 연중 세입 실적과 사업 집행 실적이 상당 부분 확정되는 하반기, 특히 출납정리 시점이 임박한 연말에 가서야 실제 발행 소요액이 확정되는 현실적 측면도 인정된다.

다만, 2025년 2차 추경 편성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보조사업을 위해 약 3.7조원⁶⁾ 규모의 대응지방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하여 각각 8.2조원, 2.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되었으며, 2025~2026년 역시 각각 2.9조원, 2.1조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6) 2025년 2차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지자체 대상 보조금은 11조 248억원이며 이에 상응하여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의 규모는 3조 7,147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 이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등을 위해 기존 재원을 선투입하고 연말에 가서야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⁷⁾

[연도별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및 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채	신규매입·인수	670	15,566	19,956	79	100	25,962	10,712
	평균금리	2.25	1.36	1.44	1.63	3.91	3.23	2.71
	이자수입	40	113	410	587	574	777	1,343
	잔액	2,047	17,501	37,025	35,241	35,210	59,798	70,509
지방 교육채	신규매입·인수	-	-	-	-	-	-	-
	평균금리	2.07	1.94	2.22	1.92	-	-	-
	이자수입	530	315	298	63	-	-	-
	잔액(연도말)	16,957	15,095	3,683	-	-	-	-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말 기준 공자기금의 지방채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2,912	4,612	4,947	2,975	4,286	8,504	3,775	7,600	5,091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34	-	8,009	2,987	3,848	3,762	3,451	1,716	70,509

나아가,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지방채 인수 계획액을 증액하면서, 이에 연동되는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⁸⁾ 항목도 당초 1,448억원에서 150억원 증액하였으나 지방채 인수 시기가 4분기에 집중되면서 이자수입도 계획 대비 감소한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하였다.⁹⁾

7) 일례로, 서울시는 2025년 8월, 소비쿠폰 시비 부담분 등을 마련하기 위해 1조 7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중 3,500억 원을 순수하게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는 매년 7월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8)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54-541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상 4분기 인수분의 예약이자는 다음 연도 3월부터 수납된다.

[2025회계연도 공자기금의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5	144,789	159,789	159,789	134,267	134,267	84.0	100.0

자료: 재정경제부

지방교부세는 지방채무를 수반하지 않는 무상 이전재원인 반면 지방채 인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감소를 용자성 재원인 지방채 인수로 보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수결손의 부담을 지방채무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재정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전수단의 성격(무상 이전재원과 용자성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지방채 인수 규모 산정 시 지자체별 발행수요 조사의 정확성과 분기별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동 기금은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뺀 여유자금을 매년 운용 중에 있다.

나. 분석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최근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보유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취득·개발 등 기금 목적사업에 계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취득·개발·관리·처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도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기금의 여유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¹⁾

그러나 최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적립액과 운용평잔이 주요지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여유자금 보유 규모가 실제 사업수요와 자금집행 일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적립액은 2021년 결산 기준 6,583억원에서 2025년 결산 기준 1조 9,981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운용평잔 역시 2021년 8,948억원에서 2025년 2조 2,22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조(건전재정의 원칙) 기금청,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매 회계연도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기금의 여유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및 운용평잔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초 여유자금 적립액(A)	7,402	6,583	9,877	14,864	17,477
기금 수입(a)	13,255	20,266	24,475	27,453	29,740
기금 지출(b)	14,074	16,972	19,488	24,840	27,236
결산잉여금 (B=a-b)	△819	3,294	4,987	2,613	2,504
결산여유자금 적립액(A+B)	6,583	9,877	14,864	17,477	19,981
운용 평잔	8,948	9,239	13,325	17,461	22,227
전년 대비 운용평잔 증감률	△4.2	3.3	44.2	31.0	27.3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여유자금 누적 속도가 주요지출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산여유자금 적립액은 2021년 6,583억원에서 2025년 1조 9,981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지출은 같은 기간 9,323억원에서 1조 675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주요지출 규모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음에도 적정 보유수준 산정 기준이나 초과 여유재원 활용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실제 국유재산 취득·개발 및 관리 수요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국가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및 주요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결산여유자금 적립액(a)	6,583	9,877	14,864	17,477	19,981
주요지출(b)	9,323	8,362	9,888	9,840	10,675
편차(a-b)	△2,740	1,515	4,976	7,637	9,306

주: 주요지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사업비+기금운영비임

자료: 재정경제부

여유자금 확대에는 최근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²⁾을

2) 대한민국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2022.8.

발표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토지매각 대 수입은 2023년 1조 6,886억원, 2024년 1조 9,012억원, 2025년 1조 7,29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수입이 기금 여유자금 누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관유물매각대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관유물매각대	1,039,806	1,101,043	1,469,408	1,709,907	1,949,146	1,787,152
토지매각대	1,013,574	1,091,964	1,430,389	1,688,662	1,901,248	1,729,820
건물매각대	26,232	9,079	39,019	21,245	47,898	57,332

주: 결산액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과 낙찰액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 매각 낙찰 건수는 2021년 146건에서 2025년 891건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감정평가액 3,024억원 대비 낙찰액이 2,232억원으로 나타나 약 792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액 비율도 2021년 102.0%, 2022년 104.0%에서 2025년 73.8%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매각 낙찰 수	감정평가액(a)	낙찰액(b)	차액(b-a)	최저가 낙찰 수 ¹⁾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액(b/a)
'21	146	16,601	16,938	337	3	102.0
'22	114	17,284	17,970	686	1	104.0
'23	349	133,059	120,821	△12,238	31	90.8
'24	795	289,542	224,806	△64,736	166	77.6
'25	891	302,386	223,205	△79,181	206	73.8

주: 1)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입찰한 낙찰 수를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매각은 유희·저활용 재산의 정리, 민간 활용 촉진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매각 낙찰액이 감정평가액을 지속적으로 크게 하회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처분이 국가 자산가치 보전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³⁾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심의 강화, 수의매각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⁴⁾ 이러한 점은 향후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역]

구분	주요 내용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자산 매각 심사·보고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 이상 매각전문 심사, 300억원 이상 국무회의·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②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및 고액 감정평가 심사 강화 ③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검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 신설 ④ 매각정보 공개 확대 및 온비드 사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정보 온비드 공개 및 공공기관 온비드 사용 의무화 ⑤ 민간매각 전 공공활용 가능성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매각 전 지방정부·공공기관 활용 가능성 사전검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26.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상 자체심의,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정책심의 ②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지 수의매각 삭제 및 유찰 후 수의매각 대상 제한 ③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찰 후 예정가격 감액 가능 대상을 일부 재산으로 제한

주: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기획재정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12.15.

4)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 수의매각 정비 등 국유재산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6.3.17.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취득·개발 및 관리·처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결산여유자금 적립액과 운용평잔이 주요지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여유자금 전액을 단기 사업집행에 필요한 유동성으로 보기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중기 사업계획, 연도별 집행 가능액, 대규모 취득·개발사업의 지출 시기 등을 반영하여 적정 여유자금 보유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 등을 확인하여 비축토지신규매입 등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양여 등을 의미한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 특례를 운용할 수 없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래 2025년 말 기준 184개 법률, 219개의 규정이 특례로 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 특례규정 현황]

(단위: 개)

구 분	'11년	'13년	'14년	'16년	'17년	'20년	'21년	'23년	'24년	'25년
법 률	170	172	170	175	176	184	182	182	183	184
조 항	195	198	197	204	206	218	216	216	218	21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위와 같은 국유재산특례조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재정지원액)을 의미한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양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6개 법률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은 제외한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국유재산특례지출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 정	제외 내역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감면	· 행정재산 목적의 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면	· 일반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양여	· 도로 등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공익사업의 사업지구내 편입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률(6개)에 따른 감면·양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3조 제2호)	·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면제 등 * 도로공사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
	· 「하천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 * 비영리사업 또는 공익사업으로 하천을 점유하는 경우 등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 * 공익사업으로 소하천공사 또는 소하천을 점유하는 경우 등
	·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 *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등
	· 「어촌·어항법」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등 * 어촌계가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등
	· 「항만법」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등 *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자료: 각 법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간 국유재산특례지출에 따른 재정지원액은 2024년까지 점차 증가하여서 1조 2,332억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 8,596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768,604	802,140	1,045,831	1,233,164	859,606
사용료등 감면	768,583	796,674	877,651	1,213,904	859,606
(면 제)	561,812	614,636	663,315	650,116	768,684
(감 경)	206,771	182,038	214,336	563,788	90,922
양 여	21	5,466	168,181	19,260	-

자료: 각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국유재산 특례가 다른 지원 방법보다 적절한지,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을 개별 근거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장기 사용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현행 국유재산특례 규정 대부분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이전에 도입된 것이라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적어 실효성 있는 일몰주기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간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지원액이 2020년 말 기준 1조 2,629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 제도가 정비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기본원칙(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특례를 신설·운용함에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 별표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③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국유재산특례 효과성·타당성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24년 11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²⁾을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당해 연도 말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존치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정되며, 평가 시 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존치 필요성을 점검한다. 특례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당초 입법목적의 달성 기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 여부, 최근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과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특례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정부정책 및 법령상 필요성과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및 타 지원시책과의 비교분석 등을 실시한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기준 (가중치)	평가내용
효과성 (50)	목적달성도(10)	- 특례가 당초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활용계획(20) 및 실적(10)	- 최근 3년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실적 - 향후 3년간 특례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특례의 활용 가능성 평가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10)	- 특례 운영실태점검 결과 등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특례 소관 부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타당성 (50)	정부정책 필요성(30)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특례지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시 현재 상황에서도 특례지출의 법적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10)	- 재정지출, 세제지원 등 다른 지원수단과 비교 시 지원방법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관련 지원시책 간 비교(10)	- 국유재산특례 지원대상 및 목적 고려 시 국유재산 특례를 통한 지원의 적절성 - 특례를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 검토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20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조건부 존치된 특례가 이후 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는 활용실적이 미흡한 특례를 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한 15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해 존치평가를 실시하였으며³⁾, 이 중 5개 특례는 효과성이 낮아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해당 특례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향후 특례 수요, 제도 활성화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례 폐지 시 국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특례들을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조건부 존치 대상 결과]

소관 부처	근거법률	효과성	타당성	총점	결과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10	24	34	조건부 존치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10	24	34	조건부 존치
산업 통상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6	27	33	조건부 존치
산업 통상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6	27	33	조건부 존치
산업 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6	24	30	조건부 존치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조건부 존치된 특례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동안 실제 활용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특례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수혜가 발생하고 있는지, 소관 부처가 제도 흥

3) 자세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는 재정경제부 누리집(mofe.go.kr)에 공개된 「20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를 참고

보 및 활용 촉진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활용실적 미흡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된 특례가 이후 국유재산특례 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존치평가 결과와 사후관리 체계가 연계되지 못하여 조건부 존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⁴⁾,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⁵⁾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조달청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실시하는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는 중앙관서의 특례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발굴·시정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2026년 2월 조달청이 제출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 계획을 보면, 전년도 특례결산 총 18,860건 중 산림청 등 15개 중앙관서 산하 재산관리기관 195개소의 5,467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해당 점검 대상에는 20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에서 조건부 존치 대상으로 평가된 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존치평가 당시 일부 국유재산특례는 효과성이 낮음에도 향후 특례 수요, 제도 활성화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조건부 존치 특례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존치평가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유재산특례지출 운용실태점검 대상에 해당 특례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⁶⁾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6) '미흡' 줘놓고 다 연장 국유재산특례...조달청이 눈 부릅뜨고 본다, SBS biz, 2025.12.

이는 효과성이 낮아 조건부 존치된 특례에 대해 후속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실제 운용실태점검 계획에는 해당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지적된 이후 재정경제부는 2025년 조건부 존치로 평가된 5개 특례에 대해 2026년 5월 조달청에 추가 점검을 요청하였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당초 운용실태점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건부 존치 특례가 점검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유재산특례는 202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특례가 106건에 이를 정도로 평가 대상이 집중될 예정이므로 존치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관리 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향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존치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존치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거나 조건부 존치된 특례가 후속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대상 선정기준과 협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국유재산특례 일몰 도래건수]

(단위: 개)

일몰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5	합계
특례 수	106	1	6	91	7	1	2	6 ¹⁾	1	221

주: 1)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2033년 일몰 예정 특례 2개가 추가됨에 따라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상 특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사업¹⁾은 지역 및 분야별로 구분된 5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민간·국제기구협력)으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으로, 2025년 당초 계획액은 2조 1,499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조 8,709억 8,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0%를 나타냈다.

[2025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년				2026	
		계획		결산(B)	집행률(B/A)	당초	수정
		당초(A)	수정				
대개도국차관	1,848,544	2,149,950	2,069,950	1,870,988	87.0	1,900,600	1,900,600
아시아차관(융자)(ODA)	631,608	870,189	728,689	592,671	68.1	823,517	823,517
아프리카차관(융자)(ODA)	405,278	380,458	704,172	694,087	182.4	622,965	622,965
중동-CIS차관(융자)(ODA)	107,143	85,999	160,499	157,064	182.6	163,411	163,411
중남미차관(융자)(ODA)	23,849	38,089	30,089	29,106	76.4	17,641	17,641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ODA)	680,666	775,215	446,501	398,061	51.3	273,066	273,066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장기간 저리의 양허성 차관 방식의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으로, 1986년 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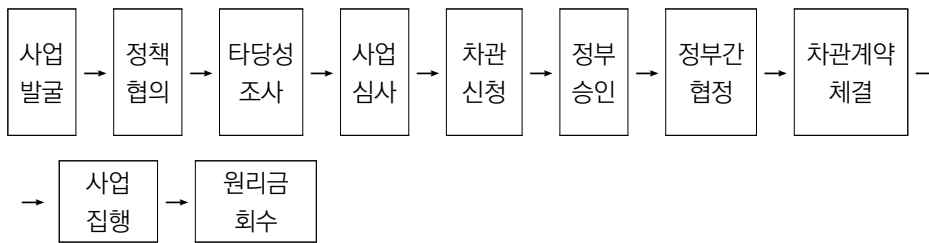
동 기금은 동 사업을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3,845달러 이하인 국가가 보건·인프라·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업 발굴, ②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 ③ 수원국의 공식적 차관신청 이후 수출입은행의 사업심사, ④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사업승인, ⑤ 수원국과 외교부의 정부간 협정체결, ⑥ 수출입은행과 수원국 간 차관계약 체결, ⑦ 수원국의 컨설턴트 고용 → 구매 → 사업실시 및 자금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사업 절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1.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과다 등 개선 필요

대개도국차관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대륙별 차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4개와 민간·국제기구협력 1개의 구분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세부사업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한 세부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변경 규모는 2020회계연도 1,139억 5,500만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2023회계연도에는 4,187억 6,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1,407억 6,800만원을 나타냈고 2025회계연도에는 재차 증가하며 3,982억 1,400만원을 기록하였다.

2025회계연도 자체변경 규모 3,982억 1,400만원은 2020~2024년 기간 연평균 자체변경액 2,343억 3,700만원을 1,639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며, 당초 대개도국차관 사업 계획액 대비 자체변경 비중도 18.5%를 기록하며 평균 수준인 16.6%를 1.9%p 상회하였다.

[2020년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A)	1,184,879	1,258,196	1,333,423	1,502,976	2,031,979	2,149,950
자체변경 규모(B)	113,955	315,131	183,061	418,769	140,768	398,214
비율(B/A)	9.6	25.0	13.7	27.9	6.9	18.5
자체변경 시점	2020.12.1	2020.12.16 2020.12.31	2022.11.10 2022.12.19	2023.08.07 2023.12.22	2024.09.12 2024.11.21	2025.05.09 2025.11.26

주: 1.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감액한 후 증액한 금액을 기재함

2. 사업비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당초계획액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과 아프리카차관의 자체변경이 과다하게 나타나는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567억 1,400만원과 아시아차관 1,415억원을 감액하여 아프리카차관 3,237억 1,400만원과 중동-CIS차관 745억원을 증액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변경시점	규모	합계
감액	아시아차관	2025.11.26	△141,500	△398,21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025.5.9	△226,714	
		2025.11.26	△30,000	
증액	아프리카차관	2025.5.9	226,714	398,214
		2025.11.26	97,000	
	중동-CIS차관	2025.11.26	74,5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사업별 집행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감액한 아시아차관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이 68.1%, 51.3%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차관과 중동-CIS차관의

경우 당초계획 대비 자체변경비율이 85.1%, 86.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도 각각 182.4%, 182.6%로 당초 계획의 1.8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대개도국 차관 사업 자체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자체변경 (B)	계획현액	집행액 (C)	자체변경 비율(B/A)	당초대비 집행률 (C/A)
	당초(A)	수정					
아시아차관	870,189	728,689	△141,500	728,689	592,671	△16.3	68.1
아프리카차관	380,458	704,172	323,714	704,172	694,087	85.1	182.4
중동-CIS차관	85,999	160,499	74,500	160,499	157,064	86.6	182.6
중남미차관	38,089	30,089	-	30,089	29,106	-	76.4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775,215	446,501	△256,714	446,501	398,061	△33.1	51.3

주: 중남미차관의 당초계획 대비 수정은 제2회추경에서 80억원 감액,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도 제2회 추경에서 720억원 감액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기금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도 있으나,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고려할 때 연례적 자체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각 대륙별 차관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각 대륙별 차관사업에 편성된 긴급차관은 2024회계연도 뿐 아니라 2025회계연도에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대부분 감액되었고, 집행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므로 개별 수원국의 수요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비 성격으로 여타 방식을 통해 긴급차관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긴급차관의 계획액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 동 기금은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대륙별 세부사업에 각 10억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긴급차관 사업을 계획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동 기금은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긴급한 차관 집행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긴급차관 사업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긴급차관 사업의 2025회계연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금이 기금 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긴급차관 사업에 편성된 예산 40억원 중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억원은 추정편성시 감액된 가운데 남은 3,000만원도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중 긴급차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대부분 감액하였다는 입장이다.

[2025회계연도 긴급차관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아시아차관	870,189	728,689	-	728,689	592,671	-	136,018	81.3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아프리카차관	380,458	704,172	-	704,172	694,087	-	10,085	98.6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중동-CIS차관	85,999	160,499	-	160,499	157,064	-	3,435	97.9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중남미차관	38,089	30,089	-	30,089	29,106	-	983	96.7
긴급차관	1,000	-	-	-	-	-	0	-

자료: 재정경제부

이는 2025회계연도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며 2024회계연도에도 대륙별 차관사업에 편성된 긴급차관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2024회계연도에도 자체변경을 통해 대륙별로 각 10억원씩 편성되었던 긴급차관에 대해 자체변경을 통해 99% 감액한 바 있다.

[2024회계연도 긴급차관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아시아차관	849,890	717,780	-	717,780	631,608	-	86,172	88.0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아프리카차관	416,981	416,981	-	416,981	405,278	-	11,703	97.2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에티오피아 의료기자재	179	393	-	393	393	-	-	100.0
중동-CIS차관	112,383	133,575	-	133,575	107,143	-	26,432	80.2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중남미차관	43,864	35,206	-	35,206	23,849	-	11,357	67.7
긴급차관	1,000	10	-	10	-	-	10	-

자료: 재정경제부

긴급차관 사업은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차관 승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별 수원국의 수요,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며, 최근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수원국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수원국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긴급차관 사업의 특성,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대응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긴급차관 사업의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업심사평가연구¹⁾는 대개도국 차관사업 관련 기술전문가 고용 및 EDCF 업무 관련 외부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원조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다. 동 기금은 2025회계연도 사업심사평가연구 계획액 52억 7,800만원 중 3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2,700만원을 불용한 가운데, 사업심사평가연구 내 사업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계획액 2억 6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이월,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심사평가연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사업심사평가 연구	5,278	5,278	462	-	5,740	3,208	405	2,127	2,105	2,105
정책연구	206	206	-	-	206	151	40	15	309	309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동 기금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기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2020년 이후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18건 중 15건(2025년은 3건 중 2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15건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1145-300

중 13건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바, 연구용역 계약이 근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이 2020년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은 총 18건이며 이 중 15건이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비중(83.3%)이 높은 상황이다. 2025년의 경우에도 3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15건 중 13건, 2025년 수의계약 2건 중 1건의 경우 입찰공고 없이 해당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

[2020~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업계약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 방식	계약 근거	계약상대방	공개여부
2020	DAC 가입 10년, EDCF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용역	2020.3~2020.9	50	수의	①	AA연구원	비공개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EDCF 활용 방안	2020.7~2020.12	50	수의	①	BB학회	비공개
	포스트 코로나 보건의료분야 EDCF 지원전략 연구용역	2020.9~2021.3	50	수의	①	CC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2021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구축	2021.7~2021.12	110	경쟁	-	DD회계법인	비공개
	유상원조(EDCF)의 경제성 효과 분석(2차)	2021.10~2022.1	25	수의	②	EE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2022	탄소배출권 사업연계를 위한 EDCF 활용방안	2022.6~2023.2	50	수의	①	FF연구원	비공개
	EDCF·DFI 협력방안 - BII 사례를 중심으로	2022.7~2022.12	50	수의	①	GG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내재화	2022.7~2023.11	50	수의	①	DD회계법인	비공개

연도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 방식	계약 근거	계약상대방	공개여부
2023	EDCF 외화조달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2023.4~ 2023.8	49	수의	①	HH 연구원	비공개
	EDCF를 통한 임팩트 투자 및 부가성 측정방안	2023.7~ 2024.1	50	수의	①	JJ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분석과 유상원조 시사점	2023.12~ 2024.5	30	수의	①	KK대 산학협력단	비공개
	EDCF 표준제안요청서 가이드북 작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23.12~ 2024.5	49.5	수의	①	LL연구원	비공개
202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체계와 전략 연구	2024.5~ 2024.12	50	수의	①	BB학회	비공개
	팬데믹 이후 유상원조 성과와 중기 발전전략	2024.6~ 2024.12	85	경쟁	-	AA연구원	비공개
	EDCF 본구매 표준입찰서류 가이드북 작성 및 표준입찰서류 개선방안 연구 (1차)	2024.10~ 2024.12	59	수의	③	MM연구원	비공개
2025	EDCF 본구매 표준입찰서류 가이드북 작성 및 표준입찰서류 개선방안 연구 (2년차)	2025.01~ 2025.06	39	수의	③	MM연구원	비공개
	수원국 소득수준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른 EDCF 지원방안 연구 (1차)	2025.07~ 2025.12	72	경쟁	-	NN연구원	비공개 (진행중)
	EDCF 공급망 핵심국 선정 및 연계 전략 연구	2025.12~ 2026.05	80	수의	①	XX연구원	비공개 (진행중)

주: ① 추정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②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③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동 기금은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모두 특수한 지식과 자격을 요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에서 명시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내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계약대상을 선정했고,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 연구를 위해 수의계약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 정책연구용역 과제들의 주제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체계와 전략 연구’, ‘EDCF 공급망 핵심국 선정 및 연계 전략 연구’ 등으로 극소수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특정 분야가 아니며 2020년 이후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기관 뿐 아니라 학계와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이 갖춰져 있는 분야의 주제들이다.

해당 법령조항에서 일부 정책연구용역에 예외를 두는 이유는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업체가 극소수여서 경쟁입찰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동 기금이 당초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주제가 없음에도 근거 법령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수한 지식과 자격 등 제한된 요건을 충족해 수의계약²⁾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라도,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계약에 경쟁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이는 경쟁입찰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기금은 2020년 이후 완료된 15건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용역보고서의 공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위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진행한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을 위탁받아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조4)의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재정을 활용해 재정경제부 동 기금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공정 경쟁에 근거한 계약 내용과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⁵⁾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 수출입은행은 동 기금의 관리 주체인 재정경제부에 용역계약 내용 및 결과물을 송부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국가계약법은 긴급 상황, 소액 계약, 특수한 지식 등 제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⁶⁾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공계약에 경쟁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의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동 기금은 정책연구용역 사업계약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부실·특혜 계약 방지 등을 위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계약 절차 및 연구용역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정책연구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

가. 현 황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¹⁾와 기타민간이자수입²⁾은 각각 기집행한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원금과 용자이자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말 기준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미수납원금은 1,127억 7,900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이자 240억 800만원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 기타민간용자원금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기타민간용자 원금회수	277,615	277,615	-	277,615	536,678	423,899	112,779	-	309,274	309,274
기타민간 이자수입	62,430	62,430		62,430	79,285	55,277	24,008	-	73,633	73,633

주: 미수납액은 당해연도가 아닌 누적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대내외경제 불확실성 및 글로벌 금융불안 확대 등으로 국가간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대개도국차관의 미수납 사례 및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대개도국차관 관련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2025년 대개도국차관 미수납 국가 및 미수납금(원금+이자)을 살펴보면, 대개도국차관사업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미수납한 국가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75-754

2)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54-544

이고 있다. 2020년에는 미수납 국가가 없었으나 2021년 예멘 1개 국가가 미수납하였고, 2022년 예멘, 스리랑카 2개국, 2023~2024년은 기존 2개국 뿐 아니라 가나를 포함 3개 국가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모잠비크, 카메룬, 케냐 등 3개 국가가 대개도국 차관을 미수납하여 미수납 국가가 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중 카메룬과 케냐는 일시적 미수납으로 2026년 3월말 기준 회수를 완료하였으며, 모잠비크도 2026년 6월 기준 회수를 완료하였다. 미수납액 규모도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미수납액(원금+이자)은 23억 2,9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250억 2,200만원, 2023년 357억 4,500만원, 2024년 343억 6,400만원, 2025년 393억 2,900만원을 기록하였다. 2025년말 기준 누적 총미수납액은 1,367억 8,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25년말 기준 국가별 미수납액은 스리랑카 871억 4,700만원, 가나 226억 9,600만원, 예멘 226억 900만원, 모잠비크 20억 1,200만원 순이다.

국가별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스리랑카(2022.4월), 가나(2022년말)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외환보유액 고갈 등으로 인한 디폴트(채무상환 중단) 선언이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모잠비크는 2024년 이후 외환부족, 예멘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전이 미수납의 주요 요인이다.

[미수납원금, 미수납이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잔액)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스리랑카	-	-	15,411	3,454	18,015	3,626	18,694	3,359	21,527	3,061	87,147
예멘	2,081	248	4,991	1,166	4,991	972	4,880	865	2,197	218	22,609
가나	-	-	-	-	5,620	2,521	4,517	2,049	6,040	1,949	22,696
코트디부아르	-	-	-	-	-	19*	-	-	-	-	-
모잠비크	-	-	-	-	-	-	-	-	1,728*	284**	2,012
카메룬	-	-	-	-	-	-	-	-	1,281*	97*	1,378
케냐	-	-	-	-	-	-	-	-	807*	140*	947
합계	2,329		25,022		35,764		34,364		39,329		136,789

주: * 중개은행 송금절차 지연에 따른 일시적 미수납 건으로, 차년도 전액 회수

** 모잠비크의 외채위기에 따른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26. 6월말 기준 전액 회수

자료: 재정경제부

동 기금은 이러한 대개도국차관 미수납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리랑카, 가나의 경우 각각 2024년 7월, 2025년 1월에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별 차관공여계약(L/A) 수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계약발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멘에 대해서는 예멘이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예멘 정부에 분기별로 연체를 통지하고 있으며 내전 종료시 예멘 정부와 채무 상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예멘, 스리랑카, 가나 등의 외환·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상환만기가 향후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가별 미수납액은 증가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대개도국차관 미수납 국가에 대한 조치 경과]

국가	주요 경과
스리랑카	○ 파리클럽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재조정 합의 도출 공동 대응 중으로, 스리랑카 정부-채권국협의회 간 채무재조정 MOU를 체결('24.7월)하였으며, 향후 사업별 차관공여계약(L/A) 수정체결할 예정('26년 중)
가나	○ IMF 구제금융(30억불) 승인 완료(2023.5.17) 후 가나 정부-파리클럽 채권국협의회 간 채무재조정 MOU를 체결('25.1월)하였으며, 향후 사업별 차관공여계약(L/A) 수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수원국에서 발효서류를 준비 중으로 발효 시 연체 해소
예멘	○ 예멘은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음. 이에, EDCF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예멘 정부에게 분기별로 연체를 통지하고 있음. 내전 종료시 타채권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예멘 정부와 채무 상환 협의를 추진할 예정
모잠비크	○ 모잠비크 정부 앞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25년말 기준 미수납금 20억원 전액을 회수 완료 ('26.1.6자, '26.2.3자, '26.2.10자, '26.2.13자, '26.6.5자 총 5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기금은 스리랑카, 가나, 예멘에 대한 채무재조정시 채무액을 탕감하지 않고 원금(명목금액 기준)과 경과이자를 더해 수령할 계획이며, 대출기한만 연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고금리 기초, 시간할인율을 고려한 해당 채권의 현재가치는 상환기간 연장기간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원리금의 탕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외환 및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간 합의로 채무조정이 진행될 경우, 이에 맞추어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개도국차관 미수납원금 및 이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융불안 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차관 공여국 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채무 미상환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수익금은 매년 35%가 법정배분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배분된다. 나머지 65% 중 복권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재원은 사행심 억제, 중독 예방·치유 및 교육,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중 법정배분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서는 직접사업 형태로 지원된다. 또한 법정배분사업의 용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배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¹⁾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2025회계연도 복권기금 자원 배분계획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			공익사업		
기금/사업명	'25년 계획	'25년 집행	기금/사업명	'25년 계획	'25년 집행
과학기술진흥기금	137,447	137,447	주택도시기금	450,040	450,040
국민체육진흥기금	92,044	92,044	보훈기금	21,553	21,306
근로복지진흥기금	61,699	61,699	양성평등기금	776,926	776,58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2,620	82,620	문화예술진흥기금	267,707	267,707
국가유산보호기금	144,815	144,815	청소년육성기금	151,259	150,507
			기후대응기금	107,593	107,593
			영화발전기금	4,497	4,497
			응급의료기금	6,440	6,440
지방자치단체지원	190,639	190,63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599	4,299
			입양아동 가족지원	21,347	21,347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190,825	190,825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2,117	2,11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76,473	114,873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80,127	80,127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1,285	3,885
			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876	87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47,401	47,401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5,000	5,000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5,738	165,738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지원	77,528	77,528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30,640	45,640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25,825	25,825
합계	1,105,145	1,105,145	합계	2,119,915	2,174,279

주: 2025년 계획은 당초 계획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각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배분비율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단, 법정배분기관의 자금소요 및 평가 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20%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²⁾

각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25년 예상 복권수익금의 35%인 1조 924억원을 각 기관의 배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기초법정배분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배분기관의 자금소요 및 복권기금 사용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³⁾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⁴⁾ 이후 2023년 결산상 복권수익금에서 이미 배분한 복권수익금을 제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결산차액을 더하여 2025년도 최종 법정배분금액을 산정한다.

2025년도 최종 배분안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908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 1,906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 1,4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4) 이때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하여 산정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5회계연도 복권기금 법정배분금]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최종배분액	25년 가감조정					2023년 결산차액 (E)	2025년 최종배분액 (A+B+C+D)
		기초 법정배분 (A)	1단계가감(B)		2단계 추가감액 (C)	3단계 추가가산 (D)		
			감액	증액				
산림환경 기능증진 자금지원	730	639	-	128	-	-	9	775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728	694	-	104	-	-	10	826
근로복지 진흥기금 전출	635	580	-	29	-	-	8	617
국가유산 보호기금 전출	1,526	1,561	△211	-	-	78	20	1,448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지원	1,796	1,886	-	-	-	-	22	1,908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417	468	△23	-	-	23	6	474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920	1,133	△204	-	△20	-	11	920
지방자치 단체지원	1,699	1,886	△151	-	-	149	22	1,906
과학기술 진흥기금 전출	1,251	1,375	-	-	△13	-	13	1,374
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701	702	-	70	-	22	7	801
합계	10,402	10,924	△589	331	△33	291	128	11,051

자료: 기획예산처

나. 분석의견

법정배분비율 완화, 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조정 폭 확대, 일몰제 도입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기획예산처는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정배분 대상 기관의 재정여건, 사업성과, 공익사업 재원 수요 및 일몰제 적용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 내 현행 법정배분비율은 2003년 8월 개최된 제6차 발행조정위원회에서 복권수익금의 30%를 당시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비율에 따라 10개 기관 및 기금에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공익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비율은 로또복권 총수익금의 50%를 모든 복권발행기관에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1999년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후 2009년 법정배분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現 국가유산보호기금)이 추가됨에 따라 법정배분비율은 35%로 상향되었다. 다만 이는 2003년에 설정된 1999년 기준 시장점유율에 따른 배분 구조가 유지되도록 전체 법정배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현재의 재정수요, 사업성과, 복권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정배분비율을 재검토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등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법령상 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성과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책수요와 재정운용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을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위원회 결산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경직적 운용을 해소하고, 복권수익금이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위원회 결산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2024년 기금존치평가결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 중장기 개선전략 마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에 정부는 현행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관별 재정여건과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복권수익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⁵⁾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향은 ① 법정배분비율 완화, ②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향]

구분	내용
법정배분비율 완화	현행 고정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
성과평가에 따른 조정폭 확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관행적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 공익사업으로 전환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개편 방향은 복권수익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원배분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정배분비율 완화, 성과평가 조정폭 확대, 일몰제 도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최종 정부안 확정이 지연될 경우 국회 내 입법 논의와 제도개선 추진도 함께 지연될 수 있다.

[개정방안 관련 「복권 및 복권기금법」 내용]

구분	법적 근거	현행법 내용
법정배분비율 완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본문	복권수익금의 35% 배분 ¹⁾
성과평가에 따른 조정폭 확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을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현행 법령에는 일몰제 부재	일몰 규정 부재

주: 1) 법제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배분비율 가감 조정 시에도 같은 항 본문의 법정배분총량인 복권수익금의 35%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안건번호 법제처-24-09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기획예산처, 「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 2026.2.6.

특히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는 법정배분 대상 기관의 재원운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안 확정이 지연될 경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 개편 취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성과 중심 배분체계 구축도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향과 세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논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법정배분 대상 기관의 재정여건, 사업성과, 공익사업 재원수요, 일몰제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복권수익금은 매년 35%가 법정배분사업 재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배분된다. 나머지 65% 중 복권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재원은 사행심 억제, 중독 예방·치유 및 교육,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2025회계연도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사업에 당초 계획 기준 1조 1,05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반면 공익사업은 당초 계획 기준 2조 1,19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대비 5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2조 1,74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당초계획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액	집행액
법정배분사업	1,105,145	1,105,145
공익사업	2,119,915	2,174,279

자료: 기획예산처

나. 분석의견

일부 교부사업에서 정산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복권위원회는 교부기관별 반납기한 준수 여부와 지연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 지연 사례에 대한 성과평가 및 배분 환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¹⁾는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 등이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권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한 내 불용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를 준용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불용액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용액의 반납대상 금액은 복권기금의 집행잔액(실집행액 기준)과 반납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복권기금 교부사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정부안 편성 시점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실제 반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산잔액이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적기에 계상되지 못하는 문제⁴⁾가 나타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2023년 집행분 중 지방자치단체지원, 양성평등기금 전출,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등에서 미반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집행분에서 발생한 반납대상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인 2025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되어 복권기금으로 환류될 필요가 있었으나, 2026년 4월 기준 미반납액이 317억 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집행분의 경우에도 2026년 중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나, 2026년 4월 기준 미반납액이 962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권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한 내 불용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불용액 금액을 상제한 사례도 없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3)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202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1.

4) 또한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정산이 대부분 하반기 정산 완료되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임

[복권기금 정산 잔액의 기금 미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미반납액
'22	지방자치단체지원	152,750	143,229	4,608	4,911	72
	양성평등기금 전출	595,576	554,053	179	41,344	891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135,750	129,881	-	5,869	280
'23	지방자치단체지원	175,329	166,680	2,694	5,953	907
	양성평등기금 전출	630,008	583,641	179	46,188	22,123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149,473	142,241	-	7,232	927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8,339	139,653	9,132	9,554	7,654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72,576	67,756	5,097	1,312	92
'24	지방자치단체지원	169,863	163,202	1,467	5,192	1,643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전출	91,954	76,661	-	15,293	290
	양성평등기금 전출	737,764	679,778	680	57,306	57,306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48,786	227,146	-	21,640	23,231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148,383	142,466	-	5,917	4,688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2,611	139,664	4,259	8,688	8,688
	입양아동 가족지원	20,843	19,824	-	1,019	256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72,967	69,653	7,254	1,157	132

주: 1. 미반납액은 집행잔액 외에 반납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불용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25년도 미반납액은 2027년까지 반납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반납금 추경예산 미편성, 기금 지출한도 등 반납금 지출을 위한 예산·기금운용 절차상 사유에 집중되어 있다. 정산 미확정과 같이 반납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미편성, 기금 지출한도 미확보 등은 확정된 반납대상 금액을 해당 기관의 예산·기금운용 절차에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

[복권기금 정산잔액 미반납 사유]

연도	사업명	미반납사유
'22	지방자치단체지원	추경예산 미편성('26.12월 편성 예정)
	양성평등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23	지방자치단체지원	반납금 추경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반납
	양성평등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기금 지출한도 등으로 미반납,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추가 반납 예정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일부 사업시행자(지자체) 반납금 추경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반납
'24	지방자치단체지원	반납금 추경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반납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전출	일부 보조사업 정산 미확정
	양성평등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기금 지출한도 등으로 미반납,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추가 반납 예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일부 지자체 추경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반납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입양아동 가족지원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일부 사업시행자(지자체) 반납금 추경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반납

자료: 기획예산처

특히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집행, 성과, 환류, 가·감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며, 원칙적으로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현재 정산잔액 반납 지연 문제 역시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으나⁵⁾,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반납 지연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5) 미반납액/불용반납 확정액 비중 30% 미만 0.1점, 30% 이상~70% 미만 0.2점, 70% 이상 0.3점 감점

최근 복권위원회는 법정배분비율을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확대하는 등 복권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⁶⁾ 이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재원배분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 교부사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적기 반납 여부도 집행관리 및 평가환류의 중요한 요소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산잔액은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발생, 사업비 절감, 정산 시점 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잔액 발생 규모 자체를 부정적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리의 초점은 정산잔액의 발생 여부나 규모보다는 정산잔액이 확정된 이후 반납기한 내에 실제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반납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과 사유가 불가피한지, 동일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복권위원회는 미반납액 비중을 통해 정산잔액 반납 현황을 성과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반납액 비중은 전체 반납대상액 중 아직 반납되지 않은 금액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에 그치므로, 반납 지연의 원인, 지연 기간, 동일 기관의 반복 지연 여부, 후속 조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반납 사유가 지자체 추경예산 미편성 등 예산 편성 절차상 사유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미반납액 비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정산잔액 확정 이후 반납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교부·전출기관별 정산잔액 발생 규모, 반납대상 금액 확정일, 반납기한, 실제 반납일, 지연 기간, 지연 사유,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 계상 여부 및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반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산잔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반납계획을 제출받고, 지자체 추경 편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반납기한 내에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기획예산처, 「“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 2026.2.6.

가. 현 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¹⁾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획예산처는 2025년도 예산현액 1,148억 7,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76,473	114,873	-	-	114,873	114,873	-	-	85,769

자료: 기획예산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3년 8월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입되었으나, 지속 시행 필요성에 따라 2017년까지 연장 운영되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을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지원 대상·기준·내용·절차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중심의 한시적 사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복권기금 6362-334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업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상시 제도로 전환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일수와 지원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료부담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의료부담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본인의료부담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50%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자료: 국민건강보험

나. 분석의견

최근 지원대상 확대, 의료비 부담기준 완화, 지원한도 상향 등 제도개편이 지속되고 신청 건수와 지급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권기금 부담분이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 보완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복권위원회는 제도개편 효과와 최근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의 재정소요 추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의료안 전망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최근 지원대상 확대, 의료비 부담기준 완화, 지원한도 상향 등 제도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1년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 내역]

기 간	내 용
'21.1월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 (기초·차상위계층) 100 → 80만원, (기준중위 50%이하) 200 → 160만원
'21.5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전 → 3일전까지
'21.11월	○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및 한도 상향
'22. 1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외래) 6대 질환 → 7대 질환 (중증외상 추가)
'22. 6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지정
'23.1월	○ 의료비 부담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 (의료비 부담기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15% 초과 시 → 10% 초과 시 지원 - (재산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합 5억 4천만원 → 7억원 이하
'23.3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입원·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별 합산(모든질환)
'23.5월	○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한도 상향
'23.7월	○ 한국신용정보원 가입내역 조회(가입내역 서류생략 가능)
'24.1월	○ 의료비부담수준 산정 및 지원기준 확대 - 동일질환별 합산 → 모든 질환 합산(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 단,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따라 신청 건수 및 지급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18,254건의 신청에 따라 16,913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2025년은 74,656건 신청이 이루어졌고 61,06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건수 및 지급 건수]

구분	(단위: 건)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청 건수	18,254	20,611	37,457	54,734	74,656
지급 건수	16,913	19,753	33,585	50,735	61,061

자료: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크게 복권기금·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건강보험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비 중 36%는 건강보험분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64%는 복권기금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는 건강보험 과징금 예상수입의 65%를 재원으로 편성하며, 64% 중 일반회계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복권기금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재난적 의료비 예산별 분담비율]

2025년 예산 기준 예시		
■ 합계 : 142,363백만원		
- 복권기금 : 76,473백만원	(53.7%)	64%
- 일반회계 : 14,639백만원 (과징금 예상수입의 65%)	(10.3%)	
- 건강보험 : 51,251백만원	(36.0%)	36%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 일반회계 부담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복권기금 추가 반영 규모는 2023년 48억 1,400만원에서 2024년 173억 1,800만원, 2025년 384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21~2025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정)				
2021	일반회계	3,595	-	3,595	3,595	-	-
	복권기금	25,216	-	25,216	25,216	-	-
	건보재정	17,132	-	17,132	17,065	-	67
2022	일반회계	3,684	-	3,684	3,684	-	-
	복권기금	39,975	-	39,975	39,975	-	-
	건보재정	22,966	-	22,966	20,785	-	2,181
2023	일반회계	3,791	-	3,791	3,791	-	-
	복권기금	56,754	4,814	61,568	61,568	-	-
	건보재정	34,045	2,888	36,933	36,663	-	270
2024	일반회계	16,984	-	16,984	16,984	-	-
	복권기금	68,451	17,318	85,769	85,768	-	-
	건보재정	48,057	9,800	57,857	57,472	-	385
2025	일반회계	14,639	-	14,639	14,639	-	-
	복권기금	76,473	38,400	114,873	114,873	-	-
	건보재정	51,251	21,600	72,851	72,312	-	539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일정 범위 이하 변경 등은 국회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다.³⁾ 이러한 제도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재정소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 재원을 사후적으로 보충할 경우,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 규모와 실제 운용 규모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소요와 자원 조달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사후 변경에 의존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복권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수요 변동성과 의료안전망 기능을 고려하되,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존하여 부족재원을 보완하는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개편 효과, 최근 신청·지급 추이, 1인당 평균 지원액, 건강보험분담금 및 일반회계 자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의 재정소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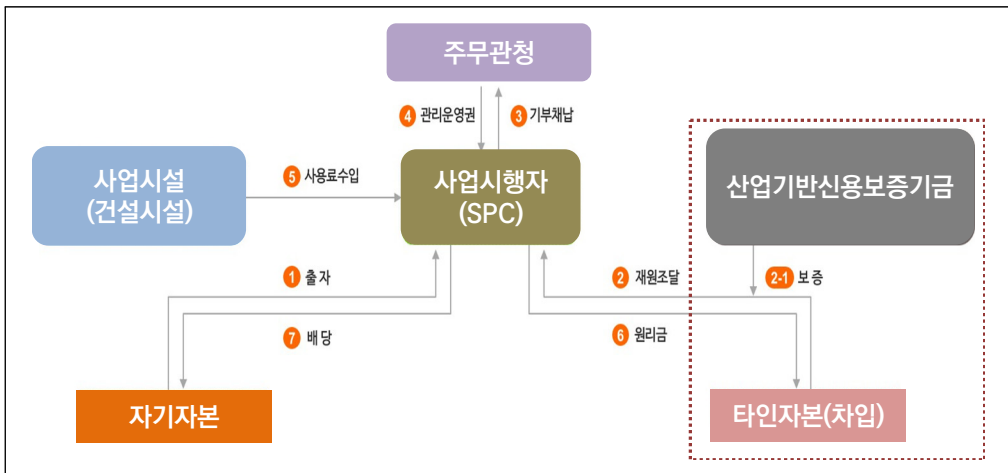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황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금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1994년 설치 이후 2025년까지 총 428건의 사업에 대하여 43조 7천억원의 보증을 제공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 사업구조]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①도로·철도·항만·하수도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유치원·학교·도서관·과학관·복합문화시설·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공공청사·보훈시설·방재시설·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 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생활체육시설·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시설²⁾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동일 사업에 대해 최대 2조원³⁾이며 보상자금 선투입제도에 따른 보증은 최대 3,000억원으로 별도 운용하고 있다. 보증료율은 상품에 따라 0.05~1.5%로 일반 보증료율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은 자금조달 방식 및 주체, 자금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분]

자금 조달 방식 및 주체	산업기반대출보증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민간선투자대출보증	계속비 예산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하고, 향후 지급받을 연부액 담보 조달 자금을 대한 보증
	사회기반시설 채권보증	사업시행자가 법 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산업기반유동화 회사보증	유동화전문회사가 법 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자금 용도	시설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주무관청으로부터 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리파이낸싱보증	기존사업을 인수하거나 저금리로 재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대한 보증
	브릿지 파이낸싱보증	토지보상비 부족예산을 선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정상화지원보증	부실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부실기업 또는 부실사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을 대한 보증
	투자위험 분담형보증	BTO-rs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험분담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대한 보증

자료: 신용보증기금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3) 2024년 12월부터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였다.

4) 2025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은 0.5~3.0%(중소기업 이외 기업 3.5%)

25-1.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가. 현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을 지원하였다.

펀드규모는 산업은행 자체 1,000억원 출자금을 포함해 총 2,000억원 규모를 조성하였으며,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SPC)' 출자지분이다. 또한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규정되며 투자 방식은 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내로 준공 시 투자금 및 적정수준의 출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¹⁾

한편 2026년에도 신규사업으로 5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동기금이 각각 500억원,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에 출자해 BTL 민자사업의 자기자본 마련뿐 아니라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특별인프라펀드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	-
BTL 특별 인프라펀드	-	-	-	-	-	-	-	-	50,000	50,000

자료: 기획예산처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민간투자사업의 최소 자기자본은 BTO의 경우 건설기간 15%, 운영기간 10%이며 BTL 사업의 경우 5%로 규정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²⁾에 이어 2026년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을 연속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례와 달리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확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제3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5호)을 특별인프라펀드 투자의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제시한 법률상 근거 조항은 구체적 내용없이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포괄위임규정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의 입법례와 같이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보증과 연계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동 기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민자사업의 자기자본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금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보증연계 투자 성격의 특별인프라펀드 내용을 반영함³⁾으로써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동 기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한 데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2026년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 규모로 출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에서 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4(보증연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6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기금의 운용)
 -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상품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관련된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04. 7월 발표)”과 (구)재정경제부의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05. 1월 발표)”에 따라 2005년 2월부터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 국회와 감사원이 보증연계투자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1년 7월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을 폐지하면서 신규 보증연계투자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2013년 3월과 2012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신설된 이후 보증연계투자를 재개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관련 국회와 감사원의 과거 지적사항 정리]

- '08년 감사원 감사결과
 -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상 신보 및 기보의 업무는 보증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
 - 기금 설립목적과 무관하며, 보증업무위축 등의 우려가 있음
- '09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손실을 방지하고 부실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개선이 필요
- '10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위 지적사항]
 - 신보와 기보에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폐지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2.9)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채무를 보증한 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의 경우 리스크 중복 등의 위험이 있어 보증연계투자를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증기업에 대한 주식 인수 등 직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도 특별인프라펀드 및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을 통해 출자, 대출 등 투자업무와 함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사례와 같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동 기금의 특별인프라펀드,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국회 논의 및 입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동 기금의 동 펀드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 적정성, 경제적 효과 및 위험 집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추가적 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근거가 신설된 이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25-2. 안정적 보증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가. 현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의미하며,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증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을 포함한다.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운용배수(보증잔액 / 기본재산) 한도는 기본재산의 20배²⁾이나, 기금의 적정운용배수는 기본재산의 12.5배로 정하고 있다. 이는 BIS자기자본 비율 최소한도인 8%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다.³⁾

동 기금의 운용배수는 최근 전반적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2025년 운용배수는 14.7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은 15.2배로 계획되어 있다. 동 기금의 운용배수는 적정운용배수 기준인 12.5배를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보증기금 운용배수 산정 산식

$$\text{운용 배수} = \frac{\text{보증잔액}}{\text{기본재산(보증료 등 자체 수입 + 정부 출연금)}}$$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BIS비율(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Ratio)은 '자기자본비율'이라고도 하며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결정된 국제적 기준이다. 금융권·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BIS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며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를 기록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권고규정에 따르면 신BIS협약을 반영하여 금감원에서 제정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자기자본비율 최소 8%이상)을 준용하고 있다.

$$\begin{aligned} \blacktriangleright \text{BIS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div \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8\%(=8/100) \\ \Rightarrow \text{보증운용배수} &= \text{위험가중자산(보증잔액)} \div \text{자기자본(기본재산)} = 12.5\text{배}(=100/8) \end{aligned}$$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 및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적)	2026 (계획)
보증잔액(A)	111,559	114,001	127,402	128,873	140,689	157,000	164,707	181,619
기본재산(B)	8,025	8,345	8,635	8,789	9,557	10,272	11,246	11,942
- 정부출연금	100	80	140	150	100	100	100	500
운용배수(A/B)	13.9	13.7	14.8	14.7	14.7	15.3	14.7	15.2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나. 분석의견

최근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 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및 이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민자사업의 재무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등으로 동 기금의 활용가능한 중기이용자산은 축소되고 있는 점, 동 기금이 보증한 민자사업에서 2025년 5월 최초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등과 같이 동 기금의 유동성을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외리스크 지속 등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2025년 말 기준 운용배수는 14.7배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한 상태이다. 동 기금의 수익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31조에 따라 정부 출연금, 보증료 수입,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2025년 기준 기본재산은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2024년 5.71%에서 2025년 8.12%로 상승하며 2025년 운용배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 15.3배에서 0.6배 하락하였으나 운용배수의 전반적 상승세는 지속되며 2026년 15.2배를 기록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건, 배, %)

구 분	보증 공급액	누계	보증 공급 건수	누계	보증 잔액 (A)	기본 재산 (B)	운용 배수 (A/B)	대위 변제액	구상 채권 회수액	회수율
2013	15,756	155,386	13	245	84,815	6,025	14.1	-	-	-
2014	19,994	175,380	12	257	81,464	6,462	12.2	-	-	-
2015	17,833	193,213	22	279	82,868	6,884	12.0	-	-	-
2016	25,905	219,118	17	296	93,325	7,183	13.0	-	-	-
2017	20,286	239,404	13	309	98,536	7,416	13.3	-	-	-
2018	20,832	260,236	16	325	105,539	7,753	13.6	-	-	-
2019	18,102	278,338	12	337	111,559	8,025	13.9	-	-	-
2020	20,513	298,851	14	351	114,001	8,345	13.7	-	-	-
2021	25,642	324,493	16	367	127,402	8,635	14.8	-	-	-
2022	23,106	347,599	13	380	128,873	8,789	14.7	-	-	-
2023	26,543	374,141	7	387	140,689	9,557	14.7	-	-	-
2024	31,399	405,540	21	408	157,000	10,272	15.3	-	-	-
2025	31,599	437,139	20	428	164,707	11,246	14.7	18	-	-
2026 (계획)	30,000	467,139			181,619	11,942	15.2	156	53	10.7

주: ~2025년 자료는 결산 기준, 2026년은 계획 기준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동 기금은 설립 이래 2024년 말까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고 보증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학교·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므로, 건설 및 관리·운영이 쉽게 중단되거나 폐지되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최초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동 기금이 2011년 보증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채권은행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25년 5월에 18.2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개요]

사업명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	주무관청	전라남도
운영기간	'12. 7월 ~ '23. 12월[기존 '30. 7월]	채권은행	광주은행
보증기간	'11. 10월 ~ '28. 7월	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발생 관련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동 기금이 2011년 6월 91억원 규모로 보증했던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19년 5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관리운영권을 당초 2030년 7월에서 2023년 12월로 조기종료하였다. 이후 2024년 7월 해지지지급금 및 사업시행자 잔여재산으로 상환할 수 없는 미상환원리금이 발생하며 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2025년 1월 채권은행의 보증의무이행 청구에 따라 2025년 5월 동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대위변제가 발생하였다.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주요 진행경과]

일 자	진행 경과
'11.6월	■ 산업기반신용보증서(91억원) 승인·발급
'24.7월	■ 채권은행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신용보증 부실통지
'25.5월	■ 보증채무 이행
'26.4월(현재)	■ 보증채무 이행 시 채권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관리운영권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 진행 중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또한 과거 동 기금은 실제 대위변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보증부실 리스크가 부각된 다수의 사례가 있었는데, 2022년 2월 덕송내각고속화도로(보증금액 1,968억), 2024년 1월 인제스피디움 사업(보증금액 768억원) 등이 건설사 워크아웃, 운영 수익 악화에 따른 원리금 연체 등으로 부실화됨에 따라 보증 이행범위 확대, 보증료 조정 등의 리스크를 부담하여 정상화를 지원한 바 있다.

최근 동 기금의 재무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 기금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1,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⁴⁾ 출자와 2026년 5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는 동 기금이 실제 활용가능한 중기가용자산을 감소시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인프라펀드 1천억원,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원은 동 기금이 산은인프라자산운용에 출자한 자금으로 투자존속기간이 10~27년에 달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재무적으로 활용이 어렵고 실제 대위변제 등에 사용할 수 없어 동 기금의 재무리스크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동 기금의 활용가능한 중기가용자산을 살펴보면, 동기금의 2025년, 2026년 중기가용자산은 특별인프라펀드 1,000억원,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분 500억원이 차감되며 각각 1조 246억원, 1조 442억원으로 나타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21~2026년 중기가용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자산	부채	기본재산	3년 이내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	잔존만기 3년이상 부채	중기 가용자산
2021년	9,335	701	8,635	-	-	8,635
2022년	9,574	785	8,789	-	-	8,789
2023년	10,415	858	9,557	-	-	9,557
2024년	11,139	867	10,272	-	-	10,272
2025년	12,126	880	11,246	1,000*	-	10,246
2026년	13,016	1,074	11,942	1,500*	-	10,442

주: *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1,000억원), 2026년 BTL 특별인프라펀드(500억원)

1. 2026년은 계획 기준

2. 중기가용자산 = 자산 - 부채 - 3년 이내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 + 잔존만기 3년이상 부채

3. 기본재산= 자산-부채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실제 동 기금은 2025년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은행 자체 1,000억원 출자금을 포함해 총 2,000억원 규모를 조성하였고,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SPC)' 출자지분이다. 또한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규정되며 투자 방식은 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내로 준공 시 투자금 및 적정수준의 출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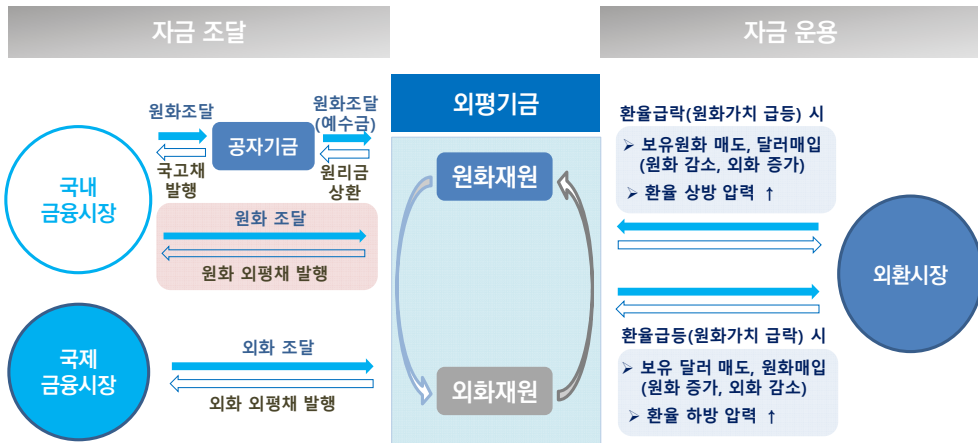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 수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데, 최근 정부의 민자사업 지원 정책에 따라 보증료를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등 추가적인 자체 수입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 기금은 통합리스크 및 위험 대비 자본보유량을 점검하는 등 중장기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 매 분기 통합리스크 측정 및 자본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 보증의 특성상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도 보증공급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 보증기간이 15~30년 수준으로 길고, 보증이 시작된 사업의 경우 부실우려가 제기되어도 보증 중단 및 보증계약의 조정이 어렵다는 점, 1건 당 보증규모가 2013~2015년 평균 1,230억에서 2023~2025년 평균 1,865억으로 확대되면서 부실시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25년 대위변제가 최초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시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보증배수가 적정운용배수 기준을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험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리하면, 동 기금의 보증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민자사업 보증 증가 속도가 기본재산 확충 속도를 상회하며 운용배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민자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동 기금의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등으로 활용가능한 중기가용자산이 축소되고, 2025년 5월 최초로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며 동 기금의 재무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 기금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자산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등 유동성의 제약이 큰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위기관리 모형 고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공공지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2025년부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13.7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였다.

[외국환평형기금 개요(2025년 기준)]



주: 외평기금은 2025년 이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이와 반대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 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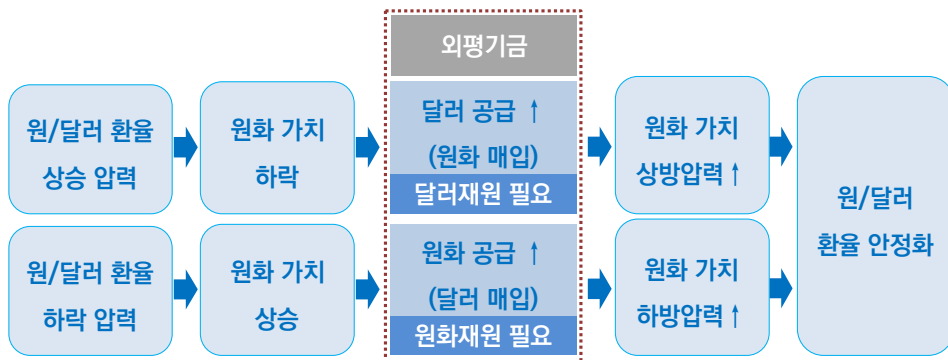
26-1. 외환시장 대응역량 제고 노력 필요

최근 고환율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평기금은 2023~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원화 보유재원 규모가 계획 대비 축소되었고 최근 국외주식 투자 확대,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이탈, 대미 전략적 투자 가시화 등으로 외화 대응역력 약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외환시장의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동 기금의 재원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역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고물가·고금리,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시 외환시장 대응 역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고환율 상태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란 전쟁의 방향성, 주요국 기준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 2025년 하반기 이후의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 등 고려시 환율의 상승압력뿐 아니라 하방압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이에 원화재원과 외화재원 확보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달러(원화)를 공급하고 원화(달러)를 매입하는 형태의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외평기금의 달러(원화)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 상승/하락시 외평기금 시장개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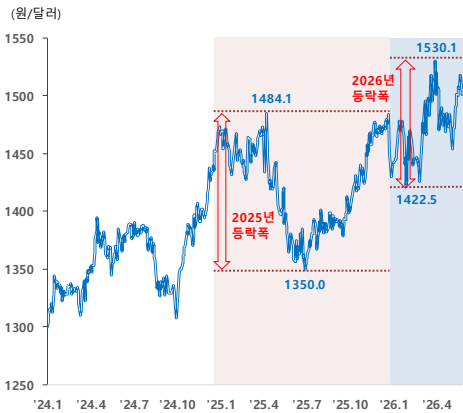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성 및 조정 속도, 물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불확실성 등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4월 1,430~148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6월말 1,350원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3월말 1,530.1원을 나타냈으며 5월 27일 기준 1501.2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3분기 환율 변동성은 0.35% 수준이었으나 4분기 0.37%로 상승하였고 2026년 1분기에는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며 0.60%를 나타냈다.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기간중 일평균, 원, %)

	2025년		2026년			
	3/4	4/4	1/4	1월	2월	3월
변동폭	4.9	5.4	8.8	6.6	8.4	11.4
변동률	0.35	0.37	0.60	0.45	0.58	0.76

자료: 한국은행

또한 최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하며 등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하방요인 경상수지 흑자는 2026년 3월까지 3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은 1,2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최근 대외불확실성 확대는 안전자산 선호를 높여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며,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이탈, 국외 주식투자 확대 등도 환율의 상방요인이다. 2025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매수액은 1,403억 달러로 2024년 723억 달러 대비 680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외국인은 2025년 KOSPI 시장에서 5조원을 순매도하였으나 2026년 1~5월 103조원을 순매도한 상황이다.

이에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을 상승뿐 아니라 하방 압력에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의 원화 가용재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¹⁾, 기금의 보유외환 매매분을 제외하고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증가요인은 공자기금 예수 및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황과 세수결손에 따른 예수금 축소 등이 있다.²⁾

동 기금의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원화재원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의 경우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를 5조 5,000억원 감축하고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14조 4,0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다. 또한 2024년의 경우 악화된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43조 5,000억원을 당초 계획 대비 조기상환하였으며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를 4조원 감축하여 2023~2024년 2년 동안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이 67.4조원이 감소하였다.³⁾

2025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20조원 한도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제2회 추경을 거치며 한도가 축소되어 13.7조원을 발행하였다. 또한 공자기금 예수(37.6조원),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32.9조원)을 고려할 경우 2025년 원화재원은 18.4조원 증가하였다. 2026년에는 공자기금 예수(34.1조원),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33.8조원) 고려시 0.3조원이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규모 5.2조원을 고려할 경우에는 원화재원은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2023~2026년 4년간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48.7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검토한 2025년 및 2026년의 원화재원 증가액 최대 18.7조원은 2023~2024년의 원화재원 감소액 67.4조원의 27.7%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1) 2025년 중 환율의 변동성 등을 고려시 기금의 외화재원과 원화재원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 금융시장 여건, 재정경제부가 기금의 원화 및 외화 재원 규모를 미공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화재원을 제외하고 원화재원 변화를 분석하였다.

2)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외평채 이자상환 역시 외평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상환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에 2년 연속 활용한 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의지·역량이 변화하였다는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주요 변동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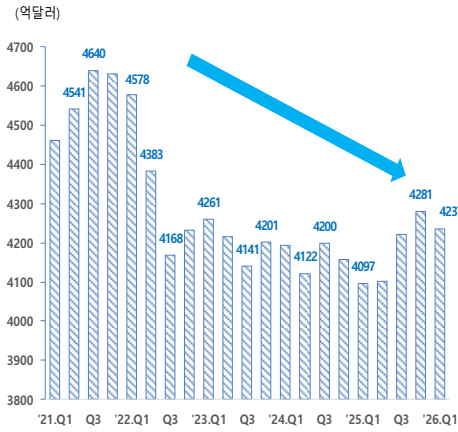
구분	변동	주요내용	비고
2023	△19.9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규모 감축 5.5조원 (당초계획 55.3조원 → 수납 49.8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14.4조원 (당초계획 49.8조원 → 상환 64.2조원)	-
2024	△47.5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규모 감축 4.0조원 (당초계획 56.6조원 → 수납 52.6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43.5조원 (중기계획 51.1조원 → 상환 94.6조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액 18조원 전액 미발행
2025	18.4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37.6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32.9조원 ③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최대) 13.7조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액 변경 (20조원 → 13.7조원)
2026 (계획안)	0.3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34.1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33.8조원	- 원화표시 외평채 13.7조원 차환발행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2조원 고려시 변동액 △4.9조원
합계	△48.7조원	-	

※ 2023~2026년 중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변동은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외환 대응여력을 살펴보면, 외환보유액은 2021년 3분기 4,6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 1분기 543억 달러 감소한 4,09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5년말 4,28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26년 1분기 4,237억 달러로 재차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일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환율 상승세에 따른 외환시장의 시장안정화 조치에 기인하며 2024년 중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11.7억 달러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4년의 2배 수준을 상회하는 △279.7억 달러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특히 2025년 4분기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1년 순매도액의 80.3%인 22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6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1,5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 외환당국의 외환시장의 달러 순매도세는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국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 대응여력도 일정부분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외환당국의 순거래액]

(단위: 억달러)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2/4	3/4	4/4
순거래	△111.7	△279.7	△8.0	△17.5	△224.7

주: 시장안정화를 위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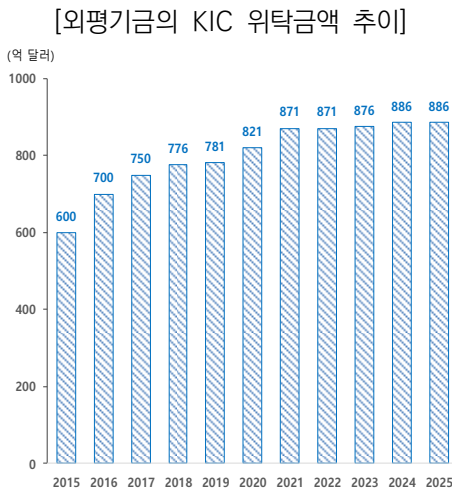
정리하며 2025년 중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금융불안 등으로 달러가치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의 여건을 고려시 시장대응을 위한 원화 및 외화의 가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금의 원화 재원을 축소하였고 외환보유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약화되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동 기금의 원화 및 외화 재원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결손 대응,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축소 등에 따른 원화 가용재원의 감소, 외환보유액 변화 등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역량과 기초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회심의 과정을 통해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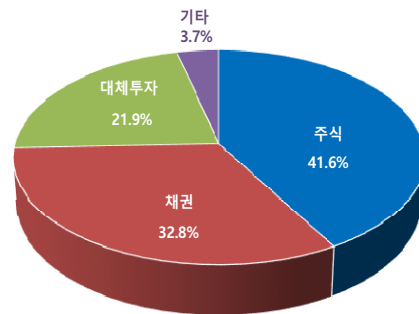
26-2. KIC 위탁자산 수익 회수 관련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필요

가. 현황

외평기금이 「투자공사법」¹⁾에 의해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외화자산은 2025년말 누계기준 885.6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2024년말과 동일한 규모이다. 2015년 이후 기금의 KIC에 대한 누계기준 위탁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6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885.6억 달러로 47.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0%를 기록하였다. 한편 KIC는 한국은행으로부터도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자산을 위탁받고 있으며, 위탁자산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총 운용자산 2,320억 달러를 2025년말 기준 주식에 41.6%, 채권 32.8%, 대체자산(부동산 등) 21.7%, 기타 3.9% 투자하고 있다.



[2025년 KIC 위탁자산 자산배분 현황]



주: 외평기금이 KIC에 위탁한 금액으로 운용수익은 제외
 자료: 한국투자공사
 자료: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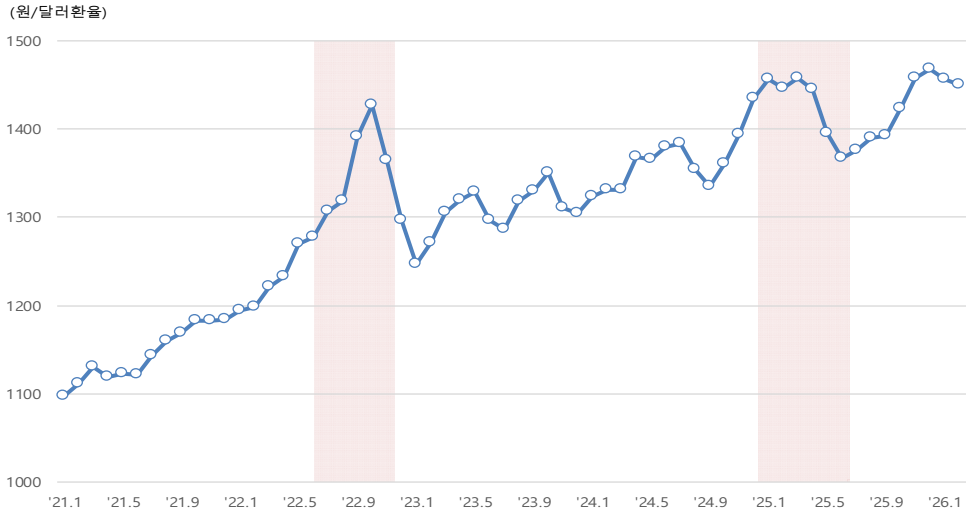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재정경제부는 2022년, 2025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당초 계획에 없었던 KIC 위탁자산 수익을 회수하여 외환시장 대응에 활용하였음에도 이를 국회보고 등의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결산 심사시에도 이와 관련된 금액 규모, 세부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보고 절차 신설, 결산시 관련 내역 제출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대응을 위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KIC에 위탁했던 외화자산 수익 중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0월 60억 달러(8~9조원 내외), 2025년 6월에 30억 달러(4조원 내외), 총 90억 달러(12~13조원 내외) 규모이다. 한편 KIC는 2025년 기준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의 위탁자산과 운용수익을 포함해 총 2,32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외평기금의 위탁자산 및 수익을 포함한 예치금은 1,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외평기금은 두 차례의 KIC 위탁자산 수익 인출에 대해 모두 대외 여건 악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2022년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이에 대응한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2022년 9월말 1,439.9원까지 상승하였으며, 10월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2025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美 경제에 대한 신뢰 우려로 원/달러 환율은 2025년 4월 9일 1,484.1원까지 상승하였으며 2025년도 1~5월 월평균 환율이 1,439.4원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월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통계시스템

외평기금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KIC에 대한 위탁한 자산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나, 외평기금의 KIC 위탁자산 수익 회수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외평기금이 KIC 위탁자산 회수시 한국투자공사법²⁾, 시행령³⁾ 등에서 회수 조건 등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위탁자산 운용수익 회수의 경우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⁴⁾에서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로 외평기금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평기금도 운용수익은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한국투자공사 간 지급절차 등을 협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2) 「투자공사법」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 3) 「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2.>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그외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
- 4) 「투자공사법」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외평기금 위탁자산 운용수익 회수 관련 법적 근거]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 ①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 ②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KIC에 위탁한 자산과 운용수익이 회계적으로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투자자산 운용시 실질적으로 위탁자산과 수익이 동시에 운용되기 때문에 외평기금이 KIC로부터 회수하는 자금을 위탁자산과 수익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8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KIC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외평기금이 자체판단에 따라 국회보고 등 별도의 절차없이 외평기금이 자유롭게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KIC 위탁자산 수익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도 국회보고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26년 2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투자공사 운용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⁵⁾

또한 외평기금이 KIC에 예치한 외화자산 수익 회수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서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 등에 KIC 외화자산 수익 회수와 관련된 세부 내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은 KIC 위탁자산의 수익을 2020년 이후 2차례 각각 60억 달러, 30억 달러 회수하였고, 2020년 40억 달러, 2021년 50억 달러 등 4차례에 걸쳐 104억 달러를 KIC에 위탁한 가운데, 이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자료에서는 이를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에 계상하고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는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한 수입(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한 지출)'이라는 사업목적에 의해 편성되며 주로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수행을 위한 원화자산의 매각(매입)에 주로 활용되어, 외평기금이 KIC에 장기적으로 외화자산을 위

5) 허영 의원 등 14인은 2026년 2월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대한 절차를 법제화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6월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탁·운용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해당 사업내 KIC 외화자산 위탁 및 운용수익 회수 뿐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원화 유가증권 매각(매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자료만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KIC 위탁자산 수익 회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규모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결산 분석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KIC 외화자산 수익 회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결산자료 등에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KIC 외화자산 수익은 외환보유액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예산안 자료 등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투기세력 및 시장참가자 등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산 자료에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 외평기금의 KIC 위탁수익 회수 및 집행 관련 흐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년			
		계획		결산(B)	집행률(B/A)
		당초(A)	수정		
85 정부예금회수	116,536,368	78,607,621	78,607,621	54,933,666	69.9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76,896,874	55,391,557	55,391,557	45,544,208	82.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6,346,746	6,442,802	6,442,802	5,265,658	81.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33,292,749	16,773,262	16,773,262	4,123,800	24.6

KIC 위탁자산 수익 회수: 30억 달러

구분	2024결산	2025년			
		계획		결산(B)	집행률(B/A)
		당초(A)	수정		
9700 여유자금운용	70,958,136	81,727,105	78,778,022	72,165,695	88.3
한국은행예치 (9703-970)	63,464,316	48,916,736	45,967,653	47,353,610	96.8
통화금융기관예치 (9703-971)	6,118,730	6,442,802	6,442,80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3-972)	1,375,090	26,367,567	26,367,567	19,546,427	74.1

회수된 KIC 위탁자산 수익 집행
(외화자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경제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따라서 정부는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KIC 위탁자산 수익의 회수시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외환 보유액과 관련된 정보의 사전 유출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KIC 위탁 자산 및 수익의 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결산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총 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이내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외평기금이 KIC에 위탁한 자산 수익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⁶⁾, 이러한 경우 외평기금의 KIC 위탁자산 수익의 회수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국회 자료 제출 및 보고절차 신설 등을 검토시 고려할 요인이다.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6. “자산위탁”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제16조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6-3. 원화표시 외평채의 조달비용 절감 노력 필요

가. 현황

국공채수입¹⁾은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동 기금은 2025회계연도 국공채 수입 계획액 21조 6,560억원 중 18조 3,894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다. 이중 원화표시 외평채는 13조 6,65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미국 달러 표시 외평채는 10억 달러,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14억 유로, 엔화 표시 외평채는 1,100억 엔 발행되었다.

한편 2025년도 원화표시 외평채 20조원 한도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제2회 추경을 거치며 발행한도가 13조 6,650억원으로 감액되었다. 2026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물량은 2025년과 동일한 13조 6,650억원으로 계획되었다.

[2025회계연도 외평기금 국고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국공채 수입	21,656,000	18,656,000	-	18,656,000	18,389,422	18,389,422	-	-	20,565,000	20,565,000

자료: 재정경제부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나. 분석의견

동 기금이 2025년부터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을 재발행²⁾하며 기존 공자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비용 대비 조달금리가 하락하였으나,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은 국채임에도 발행금리가 2025년뿐 아니라 2026년 1~4월 한국은행 통화안정채 1년물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6년 들어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과 통화안정채 1년물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바, 외평기금은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1년물로만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만기가 짧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통화안정증권³⁾을 91일물 등 일물 외에 2년물, 3년물 뿐 아니라 원화표시 외평채와 같은 1년물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화표시 외평채와 동일 연물인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의 비교를 통해 조달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025년 및 2026년 1~4월까지 원화표시 외평채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1년물은 월 1회씩 총 16회 발행되었다.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조달금리를 비교해 보면, 12월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1~11월 매월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발행금리가 원화표시 외평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되었다.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금리차이는 0.5~15.5bp로 나타났으며 2025년 연평균으로는 통화안정증권 1년물 조달금리가 원화표시 외평채 대비 3bp 낮게 발행되었다.

2026년 1~4월 중에도 원화표시 외평채 조달금리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조달금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5년 대비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조달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4월 중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조달금리 차이는 5~24bp까지 확대되었으며 1~4월 중 평균 조달금리 차이가 9.3bp로 2025년 평균 2.8bp 대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2) 재정경제부는 2003년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2025년 재개하였으며 2025년 13.7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였다.

3)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량 증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한국은행,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2023.).

[2025년 및 2026년 1~4월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1년물) 발행 현황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원화표시 외평채			통화안정증권(1년물)			발행금리 차이 (A-B)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A)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B)	
2025.1.	8,000	8,000	2.750	8,000	8,000	2.640	0.110
2025.2.	8,000	8,000	2.690	5,000	4,100	2.630	0.060
2025.3.	12,000	12,000	2.690	5,000	5,000	2.600	0.090
2025.4.	16,000	16,200	2.460	5,000	5,000	2.420	0.040
2025.5.	18,000	18,200	2.375	5,000	5,000	2.370	0.005
2025.6.	17,000	17,000	2.415	5,000	3,200	2.290	0.125
2025.7.	12,000	12,250	2.360	6,000	6,200	2.280	0.080
2025.8.	10,000	10,000	2.340	7,000	4,800	2.250	0.090
2025.9.	10,000	12,000	2.300	7,000	4,400	2.270	0.030
2025.10.	10,000	10,000	2.495	7,000	5,000	2.340	0.155
2025.11.	8,000	9,000	2.550	7,000	6,400	2.540	0.010
2025.12.	3,500	4,000	2.580	5,000	4,400	2.580	0.000
2025년 합계	132,500	136,650	2.474	46,000	41,300	2.448	0.028
2026.1.	13,000	13,000	2.760	5,000	4,200	2.550	0.210
2026.2.	12,000	13,200	2.750	5,000	5,000	2.700	0.050
2026.3.	12,500	12,500	2.940	5,000	4,000	2.700	0.240
2026.4.	8,000	8,000	3.010	5,000	5,000	2.900	0.110
2026년 합계	45,500	46,700	2.814	20,000	18,200	2.720	0.093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한국은행 공지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간 금리차이는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가 2003년 이후 처음 발행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 채권 투자자에게 시장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 등이 조달 금리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통화안정채권 1년물 대비 다소 많은 발행량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도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수요가 주로 증권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인지도가 제고되며 원화표시 외평채의 수요가 외국인뿐 아니라 은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채임에도 동년물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비 발행금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2026년 들어 한국은행 통화안정

증권과 금리 차이가 확대 양상을 보인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원화표시 외평채 도입 배경인 공자기금 예수 기준(국고 10년물) 대비 금리수준이 평균 53bp 낮은 수준으로 외평기금 비용절감 효과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재정경제부는 외평기금의 원화 자원 조달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발행 실적을 살펴보면,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의 금리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재정경제부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시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홍보 및 시장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채권시장의 수요 및 발행 여건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5억 7,900만 원이며, 32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6%인 32억 4,100만 원을 수납하고 1,300만 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3,579	3,579	3,254	3,241	13	-	99.6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29억 600만 원이며, 이 중 95.6%인 5,381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47억 1,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562,765	562,906	538,192	-	24,714	95.6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데이터처의 자산은 2,870억 5,800만원, 부채는 4억 1,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866억 4,800만 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42억 9,400만 원, 유·무형자산 2,706억 9,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0억 6,600만 원(1.4%) 감소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이 18억 5,200만 원 감소되고, 기타자산이 34억 8,100만 원 감소된 데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3억 9,000만 원, 총당부채 2,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900만 원(19.4%) 감소하였다. 이는 일부 소송종결로 인한 소송총당부채 등 2억 2,900만 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87,058	291,124	△4,066	△1.4
Ⅰ. 금융자산	14,294	13,027	1,267	9.7
Ⅱ. 유·무형자산	270,692	272,544	△1,852	△0.7
Ⅲ. 기타자산	2,072	5,553	△3,481	△62.7
부 채	410	509	△99	△19.4
Ⅰ. 차입부채	390	259	131	50.6
Ⅱ. 총당부채	21	250	△229	△91.6
순 자 산	286,648	290,615	△3,967	△1.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750억 1,300만 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이전비용 18억 4,100만 원, 국가운영비용 5,769억 8,3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국가운영수익 38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수익 - 비용)는 전년도 대비 1,413억 7,500만 원(32.6%) 증가한 5,750억 1,30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인구총조사 등으로 운영비, 외주 용역비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 밖에 인건비 2,357억 3,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수익	3,812	4,035	△223	△5.5
가. 이전수익	-	-	-	-
나. 국가운영수익	3,812	4,035	△223	△5.5
Ⅱ. 비용	578,825	437,673	141,152	32.3
가. 이전비용	1,841	1,846	△5	△0.3
나. 국가운영비용	576,983	435,827	141,156	32.4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575,013	433,638	141,375	32.6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906억 1,500만 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866억 4,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9억 6,700만원(1.4%)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년대비 재정운영결과가 1,413억 7,5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386억 1,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이전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전년도 수원청사 무상 이전에 따른 재평가 이익 감소분이 당년도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90,615	294,999	△4,384	△1.5
Ⅱ. 재정운영결과	575,013	433,638	141,375	32.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71,121	432,504	138,617	32.0
Ⅳ. 조정항목	△76	△3,249	3173	97.7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86,648	290,615	△3,967	△1.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60여년간 통계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통계청에서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를 기본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①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기능 강화 ②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위한 국가통계 작성 ③ 국가통계·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강화 ④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등과 관련된 예산을 전주기조사 대비 확대하였음에도 부재·불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사 부재·불응률이 높은 특정 가구 및 주거형태, 연령대 등 특정 표본 가구에 대해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비대면 조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한 비대면조사 활성화 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조사 비율이 전기 조사 및 계획 대비 하락한바 최근 2030세대의 전화통화기피(Call Phobia) 현상 확산 등을 고려해 실효성있는 비대면 조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생산대행 사업은 통계조직이 없거나 통계자료에 취약한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기에 작성 또는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으로 통계에 기반한 정책개발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시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 이후 사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2025회계연도 기준 사업실적이 1건으로 축소된 바 사업 목적, 통계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계조사 사업 관련 고용부담금은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불용규모도 증가세를 나타낸바,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

2025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 상승 문제 등

가. 현 황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 및 전체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¹⁾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 결과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립·평가, 각종 학술연구 등에 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는 예산 1,158억 2,600만원 중 1,05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구주택 총조사	115,826	115,826	-	△189	115,637	105,585	-	10,051	5,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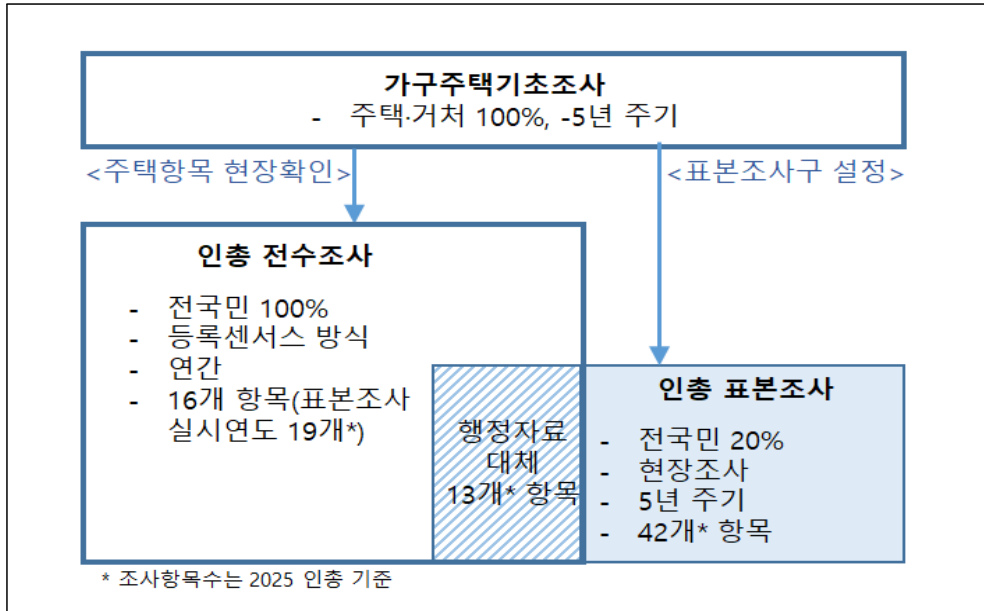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주기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015년부터 기본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 세부 특성항목 조사는 20%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결합(Combined) 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2025년에는 전체 가구 20%인 500만 가구(전국민 1천만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34-307

[인구주택총조사 구조]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분석의견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추진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등과 관련된 예산을 전주기조사 대비 확대하였음에도 부재·불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사 부재·불응률이 높은 특정 가구 및 주거형태, 연령대 등 특정 표본 가구에 대해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은 7.8%로 2015년 2.2%의 3.5배를 상회하며 2020년 3.7% 대비로도 4.1%p, 2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가구 500만 가구 중 39만 가구가 부재·불응한 것으로 2015년 조사대비 4.9배, 2020년 조사대비 2.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규모 및 부재·불응률 변화]

구분	2015	2020	2025	
			계획	실적
조사 규모	360만 가구 (20% 표본조사)	475만 가구 (20% 표본조사)	500만 가구 (20% 표본조사)	
부재·불응률	2.2%	3.7%	5.9%	7.8%
부재·불응 가구수	7.9만 가구	17.6만 가구	29.5만 가구	39.0만 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 맞벌이·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원룸·고시텔 증가 등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접근성을 낮추고 부재·불응률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23.9%에서 2023년 35.5%로 상승하였으며, 맞벌이 가구 비율이 동기간 44.6%에서 48.2%로, 외국인 비율이 1.2%에서 3.7%로 상승하였다. 또한 주택이외 거처 비율²⁾도 동기간 2.1%에서 6.2%로 약 3배 상승하였다.

[사회구조 변화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2023
1인 가구 비율	23.9	27.2	31.7	35.5
맞벌이 가구 비율	44.6*	44.2	45	48.2
외국인 비율	1.2	2.7	3.3	3.7
공동주택 ¹⁾ 비율	71.7	73.7	77.2	78.9
주택이외 거처 ²⁾ 비율	2.1	3.8	5.6	6.2

주: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2) 기숙·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일터 일부 공간, 조립식건물 등

* 2011년 조사 결과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2) 기숙·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일터 일부 공간, 조립식건물 등

2025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을 부재율³⁾과 불응률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가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을 의미하는 부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 부재율은 2015년 1.2% 수준이었으나 2020년 2.5%, 2025년 6.7%로 상승하였다. 실제 1인·맞벌이 가구 비율, 주택이외 거주 비율 상승 등이 조사표본과의 접근성을 낮춰 부재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재·불응률 추이]

(단위: %)

구분	2015	2020	2025
부재·불응률	2.2	3.7	7.8
부재율	1.2	2.5	6.7
불응률	1.0	1.1	1.2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에 사회구조 변화로 조사 접근성이 낮은 특정 지역·계층·가구 형태 등에 대한 조사표본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게 되고 통계조사의 접근이 용이한 표본 위주로 통계조사가 진행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의 대표성 및 정확성이 중요하며, 통계조사에 있어 높은 불응률은 조사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통계의 정확성을 감소시키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최근 저출산, 1인·청년 가구, 취업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시 인구주택총조사 불응률 상승은 관련 정책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부재율(Non-contact rate)은 조사 대상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연락 등 연결이 되지않아 조사를 하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4) 불응률은 표본 단위와 성공적으로 접촉은 이루어졌으나,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중간에 조사를 중단한 비율을 나타낸다.

[통계조사 부재·불응률 상승의 영향]

통계조사 부재·불응률 상승의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통계 조사 신뢰성 하락	부재·불응률 상승은 전체 모집단의 다양한 의견이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만들어(통계품질 하락),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하락
대표성 하락 및 편향 발생	특정 집단(예: 고소득층, 1인 가구, 맞벌이, 젊은 세대)에서 부재·불응률이 높을 경우 소수의 응답자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실제 상황과 다른 왜곡된 통계 결과가 산출 가능



부정적 영향	
구분	주요 내용
정책 결정 오류	국가정책 수립, 예산 배정, 복지정책 및 고용대책 등 다양한 행정·정책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식 통계의 신뢰성이 약화될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진단 및 정책 타깃팅 등에 오류 발생 가능성
행정적 비효율	예산 배분이나 정책 효과 분석 등에 오류 발생 가능성
추가비용 발생	무응답자를 임의 추정(대체)하거나, 조사 답례품 지급 증가, 조사 방식 고도화 등 추가 비용이 발생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 조사 대비 홍보 관련 사업의 예산도 확대하였으나 참여율은 하락하였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홍보 예산은 123억 6,000만원으로 2020년 전기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관련 예산 101억 2,500만원 대비 22.1% 증가하였다. 다만 2025년 국가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간 홍보비를 통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5년 통합 홍보비 집행 실적은 137억 3,700만원으로 2020년 전 주기조사 통합 홍보비 101억 9,500만원 대비 35억 4,200만원(34.7%) 증가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전주기(2020년, 2025년)과의 홍보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농림어업총조사와 통합 홍보 진행)	(인총)10,125 (농총)1,123	10,195	(인총)12,360 (농총) 1,308	13,737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부재·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인 조사 홍보 강화뿐 아니라, 특히 조사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계층·주거·가구형태에 특화된 홍보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2025년 동 조사 홍보 관련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관련 사업 내역과 유사하며 차이점은 센서스 전시관 4개 지역 운영, 드론라이트쇼, 센서스 100년 기념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인 가구, 외국인 등 조사접근성이 낮은 조사대상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디지털 숏폼 영상 등을 통해 대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홍보 사업이 대국민 대상의 광고, 전시행사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조사 등을 알리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조사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령·지역·계층·주거·가구 형태에 대한 특화된 홍보 전략 및 접근성 제고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 전주기(2020년, 2025년)과의 세부 홍보 사업 내용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뉴미디어 홍보	3,380	3,215	4,080	3,577
- 온라인포탈(네이버, 다음 등)	24종×100백만원	313	24종×120백만원	385
- SNS 소셜미디어(유튜브, 카카오 등)	98회×10백만원	2,901	100회×12백만원	3,192
■ 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5,375	4,245	5,520	5,616
- TV(지상파/중편/IPTV 등) 광고 제작 및 송출	4,275	3,630	4,320	4,377
- 라디오 광고 제작 방송 및 송출	225	168	300	282
- 언론사(신문) 매체	875	447	900	957
■ 옥외광고, 교통수단				
- KTX역사,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등	1,370	2,735	1,560	2,789
■ 지역별 홍보 등				
- 센서스 전시관 운영(4개 지역), 드론 라이트쇼(2개 지역), 농촌 홍보버스 등	-	-	700	1,546
■ 센서스 100년 기념사업				
- 국내 학술대회(인구/경제/주택/통계 학회, 포럼) 공동 개최, 센서스 100년 분석보고서 발간	-	-	500	209
합 계	(인총) 10,125 (농총) 1,123	10,195	(인총) 12,360 (농총) 1,308	13,737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기본통계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시 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부재·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사 부재·불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 특정 가구 및 주거 형태 등의 경우 해당 표본집단 특성에 특화된 홍보 및 인센티브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비대면 조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한 비대면조사 활성화 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조사 비율이 전기 조사 및 계획 대비 하락한바 최근 2030세대의 전화통화기피(Call Phobia) 현상⁵⁾ 확산 등을 고려해 실효성있는 비대면 조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근 1인·맞벌이 가구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조사 접근성이 낮아지고 부재·불응률이 확대되고 있어, 비대면 조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도 온라인·비대면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비중이 전기 조사 및 국가데이터처 계획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조사 및 모바일조사가 신규로 도입된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비대면 조사 비율은 43.9%를 나타냈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온라인·비대면 조사 활성화를 위해 전자조사 고도화, AI 기반 콜센터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조사 비중 전기 조사 대비 4.2%p 하락한 39.7%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는 당초 국가데이터처의 비대면 조사 비중 계획인 43~44%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별 비중]

구분		2015	2020	2025		
				계획	결산	
방문조사		49.2%	52.4%	51% 내외	52.5%	
비 대 면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	28.7%	38% 내외	31.4%
		PC	48.6%	9.5%		4.4%
		온라인 소계	48.6%	38.2%	38% 내외	35.8%
	전화조사	-	5.7%	6% 내외	3.8%	
	비대면 합계	48.6%	43.9%	43~44%	39.7%	
부재·불응률		2.2%	3.7%	5.9%(추정)	7.8%	

자료: 국가데이터처

5)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통화보다는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콜포비아는 2009년경 처음 등장한 스마트폰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대화·배달 등이 해결되다 보니 메신저나 문자는 익숙해진 반면 전화 통화는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온라인·비대면 조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조사참여번호, 응답방법 등을 사전에 명시하는 조사안내문 사전통지, 방문조사 사전요약 및 전자조사표에 항목별 설명자료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조사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콜센터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5 인구주택총조사 비대면 조사 활성화 방안은 비대면 조사 참여 유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조사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안내문 사전통지, AI 기반 콜센터 도입 등에서 응답자의 전화·방문조사 예약, 전화조사 시스템 고도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2020년과 동일하게 조사 대상 응답자가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를 활용하여 PC 또는 모바일로 직접 응답하거나, 조사대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된 조사안내문에 기재된 콜센터 또는 시군구 상황실과의 직접 전화통화를 거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기능 또한 비대면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30 세대의 전화통화 기피현상 확대 등으로 기존 비대면 조사 방식 외에 온라인 응답자들의 응답 접근성과 선호를 고려한 조사설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데이터의 2025년 활성화 방안은 2020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조사 및 전화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관련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상세내역
조사안내문 사전 발송	3,465	3,207	안내문 포함내용: 조사참여번호, QR코드, 응답방법 설명 등 (우편발송)
전자조사 고도화 ※ 총조사 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2031-310) 으로 편성	3,117	3,117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용되는 차세대 센서스 시스템 구축을 응답자 친화적으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의식 확산에 따른 응답거부를 줄이기 위해 조사관리시스템의 보안기능 강화 응답 편의를 위해 전자조사표에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 다양한 조사방법을 위한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전화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방문조사 사전예약 등 국민 참여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차세대 센서스 시스템 구축

구분	예산	결산	상세내역
AI 기반의 콜센터 도입 (일반용역비)	2,312	3,283	조사원 접촉을 꺼리는 경우의 전화응답,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 → AI 콜시스템은 24시간 응대가능, 상담원만 운영할 때 보다 처리 건 수 2.5배 증가 효과

자료: 국가데이터처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다문화·외국인 급증, 원룸 고시텔 증가 등으로 조사접근성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조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2030세대의 전화통화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기존 전화조사 보다는 온라인 조사 중심의 비대면 조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인구주택총조사가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시 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부재·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생활 보호 강화, 가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비대면 조사 비중, 특히 온라인 조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¹⁾」는 국가데이터처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매년 신규통계 작성이 필요하거나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대행 의뢰를 받아 통계생산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5년 예산 6억 2,5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1,5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25회계연도 통계생산대행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625	625	-		625	510	-	115	636

자료: 기획예산처

통계대행의 대상은 ① 통계작성기관 소관 통계 ② 승인통계 또는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 ③ 전국 대상 조사통계 ④ 면접조사를 수행하는 통계로서, 국가데이터처와 소관 기관 간 합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은 부처 간 업무대행 방식을 활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처 간 업무위탁 방식으로 수행한다.

또한 관련 예산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위탁기관에서 국가데이터처에 납입하는 방식(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운영된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생산대행수입대체경비는 통계생산대행 관련 통계조사를 위해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요원 등)의 인건비 등으로 주로 활용된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36-652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통계조직이 없거나 통계자료에 취약한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기에 작성 또는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으로 통계에 기반한 정책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시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 이후 사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2025회계연도 기준 사업실적이 1건으로 축소된 바 사업 목적, 통계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실적은 2020~2022년 기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16억 4,800만원(2건)에서 2021년 18억 6,000만원(4건), 2022년 33억 1,200만원(3건)으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6억 5,000만원(2건), 2024년 7억 3,800만원(2건), 2025년 5억 2,000만원(1건)을 기록하였다. 한편 2026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5억 9,100만원(2건)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조사명	위탁기관	수입액	
2020년 (2건)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80	1,648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068	
2021년 (4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	690	1,860
	산후조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16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50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예비조사 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고용노동부	604	
2022년 (3건)	보훈문화의식실태조사 시험조사	국가보훈처	162	3,312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50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교육부, 고용노동부	2,400	
2023년 (2건)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70	650
	한국수어활용조사	문체부 국립국어원	180	
2024년 (2건)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교육부	560	738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78	
2025년 (1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520	520

주 1) 당초 '20년 실시 예정이었던 "국제성인역량조사 예비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1년으로 연기
자료: 국가데이터처

다만 2023년 이후 동 사업의 실적 감소는 수요부진 보다는 인력축소 및 통계작성대행보다는 컨설팅 수요 대응 위주의 업무 변화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사업 진행을 위한 수요 조사시 7건의 지원 중 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도 5건의 지원 중 2건, 2025년은 4건 중 1건, 2026년은 3건 중 2건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대행 수요조사 미선정 사유에 대해 모집단 불명확, 예산 미확보, 표본수 대비 예산 부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3~2026년 통계대행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

구분	제출기관	통계명	수요 제출일	선정결과	비고 (미선정 사유 등)
'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사	'22.2.25.	선정 (22.12.21.)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조사	'22.8.5.	선정 (22.12.21.)	통계대행 철회('23.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활용 조사	'23.3.8.	선정 (23.3.27.)	통계대행 철회로 재선정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	'22.2.15.	미선정	국가보훈처 예산 미확보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	'22.2.16.	미선정	모집단 불명확
	해양수산부	어업법인 조사	'22.2.28.	미선정	해양수산부 예산 미확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매출 동향조사	'22.7.27.	미선정	신용카드 수집자료로 대행요건 미부합
	보건복지부	치매실태조사	'22.8.4.	미선정	보건복지부 중간 철회

구분	제출기관	통계명	수요 제출일	선정결과	비고 (미선정 사유 등)
'24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비조사 시험조사	'23.5.31.	선정 (23.8.29.)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3.8.9.	선정 (23.8.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23.5.24.	미선정	'23년 기실시 적정 후순위
	교육부	N수생 사교육비조사	'23.7.31.	미선정	조사대상 모호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시험조사	'23.8.10.	미선정	여성가족부 철회
'25년	성평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실태조사	'24.2.8.	선정 (24.9.10.)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	'24.4.29.	미선정	국가보훈부 예산 미확보
	교육부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24.5.9.	미선정	조사대상 모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동·청소년 게임 행동 종합실태조사	'24.5.10.	미선정	온라인조사로 대행요건 미부합
'26년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 실태조사	'25.2.5.	선정 (25.9.2.)	-
	한국수산자원공단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25.3.26.	미선정	한국수산자원공단 예산 미확보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활용 조사	'25.7.22.	선정 (25.9.2.)	-

자료: 국가데이터처

통계대행 실적 감소는 사업을 담당하는 통계대행사업 담당 조직의 축소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대행사업을 담당하던 통계대행과 조직이 2023년 2월 통계청 직제 개정으로 조사기획과로 통폐합²⁾되며 사업 담당 직원이 2022년말

2) 국가데이터처는 스마트조사센터 신설 과정에서 직제 개정 필요성이 있어 통계대행과를 폐지하고 조사기획과로 업무 이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준 10명(과장 제외)에서 현재 7명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인력 축소 규모 (10명→7명)에 비해, 2023년, 2024년 및 2025년 사업실적이 2020~2022년 기간 평균 22억 7,300만원 대비 각각 28.6%, 32.5%, 22.9%에 불과한 6억 5,000만원, 7억 3,800만원, 5억 2,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과도하게 축소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실적 감소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 및 맞춤형 컨설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조사 중심의 직접 통계대행 생산 체계로는 전문가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이에 사업구조 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사회구조 변화 분석,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통계 자료의 중요성 및 활용성이 높아지고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타 기관의 신규통계 작성 및 통계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업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통계조사 고용부담금¹⁾은 주로 통계조사 등을 위해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며,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지급을 위해 2025년도 예산현액 46억 6,500만원 중 3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년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고용부담금	4,665	-	-	4,665	3,341	-	1,324

주: 경제구조통계작성(3000-3031)~농림어업총조사(3000-3038)에 편성된 고용부담금 합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분석의견

통계조사 사업 관련 고용부담금은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불용규모도 증가세를 나타내며,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통계조사 사업에 편성된 고용부담금 예산액은 7개 사업에 46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집행액은 33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6%, 불용액은 13억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경제총조사, 사회통계작성, 인구주택총조사 등이 각각 51.7%, 61.5%, 67.9%로 낮게 나타난 상황이다.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요원)에 대한 4대보험 지급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320-09

을 위해 편성되며 국가데이터처는 조사관리요원의 고용부담금을 일용임금의 11%²⁾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실제 2025년 기준 경제구조통계작성(3000-3031)에서 농림어업총조사(3000-3035)에 편성된 일용임금은 415억 2,900만원이며, 고용부담금은 일용임금의 11.2%인 46억 6,500만원이 관련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이는 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 60세 이상 근로자의 가입 예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30일 미만 근무 근로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조사관리요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이 모두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다.

[2025년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세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경제구조통계작성	967	-	-	967	800	82.7	167
경제동향작성	13	-	-	13	10	76.9	3
사회통계작성	499	-	-	499	307	61.5	192
농어업통계작성	6	-	-	6	5	83.3	1
경제총조사	29	-	-	29	15	51.7	14
인구주택총조사	2,274	-	-	2,274	1,545	67.9	729
농림어업총조사	877	-	-	877	659	75.1	218
합 계	4,665	-	-	4,665	3,341	71.6	1,32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1개월 미만 근무로 인한 고용부담금 미집행, 60세 이상 근로자의 가입 예외 사유³⁾, 채용 인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2025년 본조사가 진행되어 고용부담금 예산액이 가장 많이 편성된 인구

2) 4대 보험 등 사용자(기관) 부담금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5%, 고용보험 0.8~1.3%, 산재보험 0.7~1.7%로 임금의 11% 내외이다.

3)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60~65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가입의무가 없다. 단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60세 이상도 가입 대상이다.

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고용부담금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관리요원의 2025년 계획 인원은 4,701명이었으나 실제 3,814명이 채용되어 계획 대비 81.1%가 고용되었으며, 60세 이상 조사관리요원이 841명으로 전체 조사관리요원 고용의 22.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관리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33.4일로 1개월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농림어업총조사는 2025년 조사관리요원의 채용 계획 인원은 2,616명이었으나 실제 2,590명이 채용되어 계획 대비 99.0%가 고용되었으며, 60세 이상 조사관리요원이 511명으로 전체 조사관리요원 고용의 19.7%로 나타났고 전체 조사관리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낮은 23.2일로 1개월 미만을 기록하였다.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관리요원 채용 관련 세부 내용]
(단위: 명, 일)

	조사관리요원			
	채용		평균 근무기간	가입예외(60세 이상)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편성	4,701	33.4	841 (비중 22.1%)
	실제	3,814		
농림어업총조사	예산 편성	2,616	23.2	511 (비중 19.7%)
	실제	2,590		
전 체	예산 편성	7,319	29.3	1,352 (비중 21.1%)
	실제	6,404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부담금 집행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2~2024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4년 집행률은 71.2%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사회통계작성,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경우 49.6~ 60.1%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2024년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세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경제구조통계작성	989	-	-	989	843	85.2	147
경제동향작성	8	-	-	8	7	77.8	2
사회통계작성	583	-	-	583	350	60.1	233
농어업통계작성	7	-	-	7	6	90.5	1
경제총조사	16	-	-	16	14	89.0	2
인구주택총조사	588	-	-	588	349	59.3	239
농림어업총조사	41	-	-	41	20	49.6	21
합 계	2,232	-	-	2,232	1,589	71.2	64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3년의 경우도 집행률이 78.8%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사회통계작성, 농림어업총조사 등의 경우 60% 대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2023년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세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경제구조통계작성	1,035	-	-	1,035	870	84.1	165
경제동향작성	7	-	-	7	6	87.0	1
사회통계작성	474	-	-	474	312	65.9	162
농어업통계작성	6	-	-	6	5	81.3	1
경제총조사	9	-	-	9	6	68.2	3
인구주택총조사	83	-	-	83	75	90.8	8
농림어업총조사	20	-	-	20	13	64.7	7
합 계	1,634	-	-	1,634	1,287	78.8	347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2년의 경우 집행률이 83.0% 수준이었으며, 세부 통계별로는 농림어업총조사 61.5%, 농어업통계작성 76.2%, 경제총조사 79.8%, 인구주택총조사 82.0% 등이 낮게 나타났다.

[2022년도 통계조사 관련 고용부담금 세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경제구조통계작성	1,032	-	-	1,032	846	82.0	186
경제동향작성	25	-	-	25	22	89.0	3
사회통계작성	308	-	-	308	272	88.3	36
농어업통계작성	6	-	-	6	5	76.2	2
경제총조사	72	-	-	72	57	79.8	15
인구주택총조사	87	-	-	87	71	82.0	16
농림어업총조사	18	-	-	18	11	61.5	7
합 계	1,548	-	-	1,548	1,285	83.0	263

자료: 국가데이터처

정리하면,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들어 조사관리요원의 1개월 미만 근무 증가, 고용부담금 지급 예외 사유인 60대 근로자 채용 증가 등으로 고용부담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는 조사관리요원의 고용부담금을 통계조사별로 전체 일용임금의 11%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다. 이에 통계조사원 근로기간,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비중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964억 2,000만원이며, 15조 9,366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인 3,093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14조 3,691억 2,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2,582억 1,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6,420	296,420	296,420	15,936,691	309,351	14,369,121	1,258,219	1.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40억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11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세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04,000	2,004,000	2,004,000	2,001,115	-	2,885	99.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세청의 자산은 12조 5,747억 9,700만원, 부채는 5조 9,738억 4,400만원으로 순자산은 6조 6,009억 5,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9조 3,919억 8,900만원, 유·무형자산 3조 1,754억 8,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8,879억 8,200만원(29.8%)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조 8,865억 9,6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718억 8,700만원, 총당부채 1조 7,254억 4,700만원, 기타부채 4조 1,765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795억 5,200만원(12.8%) 증가하였다. 이는 선수국세수익 증가 등에 따라 기타부채가 8,197억 6,7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2,574,797	9,686,815	2,887,982	29.8
Ⅰ. 금융자산	9,391,989	6,505,393	2,886,596	44.4
Ⅱ. 유·무형자산	3,175,484	3,178,947	△3,463	△0.1
Ⅲ. 기타자산	7,324	2,475	4,849	195.9
부 채	5,973,844	5,294,292	679,552	12.8
Ⅰ. 차입부채	71,887	70,223	1,664	2.4
Ⅱ. 총당부채	1,725,447	1,867,326	△141,879	△7.6
Ⅲ. 기타부채	4,176,510	3,356,743	819,767	24.4
순 자 산	6,600,953	4,392,523	2,208,430	50.3
Ⅰ. 기본순자산	1,843,246	1,843,246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309,047	1,098,233	2,210,814	201.3
Ⅲ. 순자산 조정	1,448,660	1,451,044	△2,384	△0.2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조 6,197억 6,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714억 5,3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9,773억 8,700만원, 비배분비용 9조 4,350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41억 4,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9조 2,405억 5,900만원(388.4%) 증가한 11조 6,197억 6,800만원이며, 이는 기타국가운영비용의 증가로 비배분비용이 전년 대비 9조 2,174억 1,7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 프로그램(1,397억 9,300만원),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728억 9,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4,294억 700만원과 경비 5,479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9조 4,350억 6,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71,453	261,984	9,469	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271,453	261,984	9,469	3.6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977,387	1,950,017	27,370	1.4
III. 비배분비용	9,435,068	217,651	9,217,417	4,235.0
IV. 비배분수익	64,140	50,443	13,697	27.2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1,619,768	2,379,209	9,240,559	388.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1,619,768	2,379,209	9,240,559	388.4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조 3,925억 2,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조 6,009억 5,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조 2,084억 2,900만원(50.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9조 2,405억 5,900만원 증가하였음에도,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02억 4,1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1조 6,399억 1,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4조 1,399억 3,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093억 5,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3억 8,700만원, 기타순자산의 증가 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4,392,523	4,593,688	△201,165	△4.4
II. 재정운영결과	11,619,769	2,379,210	9,240,559	388.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3,830,583	2,190,671	11,639,912	531.3
IV. 조정항목	△2,385	△12,626	10,241	81.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6,600,952	4,392,523	2,208,429	50.3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없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사업** 등이 있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조속한 이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국세청은 ①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세입 예산을 차질없이 조달, ②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 ③ 지능적 탈세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감정평가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법인이 제재 대상이 되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제도와 감정평가사 징계·감독 제도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제징수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환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소득구간에 대해서도 사후적 체납처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득구간별 완충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납관리 사업의 성과를 단순 회수실적 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사업이 없었더라도 기존 납부고지·독촉절차, 납세자의 자진납부, 일시적 자금사정 개선, 기존 분할납부 이행 등에 따라 회수되었을 체납액이 성과에 포함될 수 있어 그 성과가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납기간별·체납규모별 회수실적을 관리하고, 체납관리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체납자군을 식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제재대상 정합성 제고 필요

가. 현황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¹⁾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95억 9,200만원 중 100%인 95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9,592	9,592	-	-	9,592	9,592	-	-	6,714	6,714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²⁾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일부 자산가들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3-30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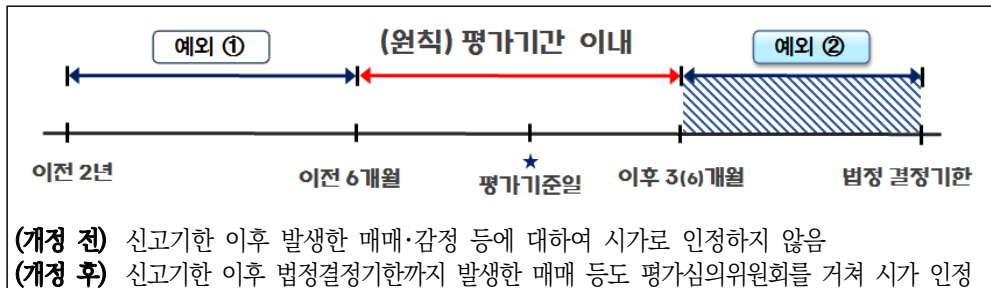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 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기한]



자료: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⁴⁾(이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가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 [(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⁵⁾의 차이가 크거나 차이의 비율이 큰 고가의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와 함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완료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집행절차]

절차	내 용
신고서 접수	○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세 신고서 전산입력 및 신고서 오류 검증 실시
감정평가대상 선정	○ 상속·증여세 신고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정평가 검토대상 물건 추출 ○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
조사착수 및 감정평가 실시	○ 신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 ○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협조안내문 발송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와 함께 감정평가 착수 ○ 감정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완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 심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고지

자료: 국세청

동 사업은 저평가된 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히 산정하여 이에 따른 과세를 하는 정책이기에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5년 내 감정평가를 통한 가치상승액을 비교해보면 그 평균이 78.6%에 해당하여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통해 산출함

[감정평가를 통한 가치상승액 비교표]

(단위: 억원, %)

구분	감정평가 건수	신고가액 (A)	감정평가액 (B)	가치상승액 (C=B-A)	증가율 (C/A)
2021	248	14,600	25,394	10,794	73.9
2022	174	10,961	19,325	8,364	76.3
2023	192	11,655	20,052	8,397	72.0
2024	169	10,467	19,303	8,836	84.4
2025	478	15,793	29,264	13,471	85.3
합계	1,261	63,476	113,338	49,862	78.6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현행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제도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감정평가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책임이 법인에 귀속될 소지가 있기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재 대상과 책임 주체 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재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⁶⁾ 이는 부적정한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 제도를 통해 2개 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⁷⁾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7) 최근 5년 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래와 같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기간
○○감정평가사사무소	2022.8.11.~2023.2.10.
(주)감정평가법인 □□ (본사 및 각 지사)	2022.8.11.~2023.2.10.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제도 개요]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준

- (재감정 기준) 납세자 신고 감정가액(2 이상의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 요건 : 신고한 원감정가액 < 기준금액*

* 기준금액 = MIN(㉠ 보충적 평가가액,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 90%)

* 다만,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

- (재감정 의뢰) 세무서장 등이 원감정기관을 제외한 2 이상의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재감정 결과 원감정가액(신고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원감정기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 지정효과 및 공지

- (시가불인정) 부실감정기관 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 최초로 다른 의뢰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시가 불인정
- (공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자료: 국세청

다만 현행 제도는 제재 대상을 감정평가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부적정 감정평가가 개별 감정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제재 효과가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법인에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감정평가 업무 참여 제한 등 책임주체별 관리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관련하여 201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사례는 부적정 감정평가가 발생한 경우 개별 감정평가사의 행위책임과 감정평가법인의 관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시행사 측과 입주자 측이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가 크게 차이 나면서 부실평가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4명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또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⁸⁾

8) 국토교통부, 「‘한남더힐 부실평가’ 업무정지·과징금 등 중징계, 감정평가사 최대 1년 2월 업무정지… 감정원·평가협회는 업무감사」, 2014. 7. 30.

해당 사례에서 보듯이 부적정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는 실제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귀책 여부와 감정평가법인의 내부심사·품질관리 책임은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관 단위의 지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별 감정평가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법인이 제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재 구조는 제재 대상과 실제 책임주체 간 정합성을 저해하고,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감정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정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감정평가법인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감정평가사가 다른 감정평가법인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동일한 책임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제도와 감정평가사 징계·감독 제도 간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은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일정 기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상 조치인 반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징계 및 감독 권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⁹⁾

이에 따라 국세청이 부적정 감정평가를 사유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 사유, 재감정 결과, 평가심의회위원회 심의자료 등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 또는 감정평가사 징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자료 통보 근거,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과세정보 보호조치, 국토교통부의 후속 검토 절차 등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현 황

징수위탁수수료 사업¹⁾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2)에 따라 국세 체납자增高액 체납자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고 징수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징수위탁 수수료	1,623	1,623	-	△121	1,502	1,502	-	-	1,379	1,379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³⁾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체납자의 주소 또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32-303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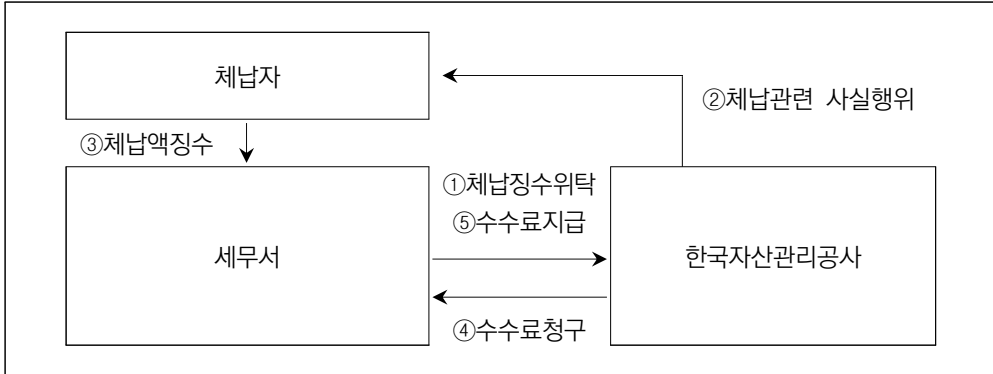
3)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의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일부를 징수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수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징수위탁수수료를 상향한 바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위탁수수료 비교 표]

징수금액	개정 전 위탁수수료	개정 후 위탁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	징수금액 × 10%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8%)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10%)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42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8%)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5%)	9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 (1억원 초과금액×2%)	8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5%)
5억원 초과	1,332만원	2,81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분석의견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에서 국세 체납관리단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대상 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 일부 수행업무 측면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과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법적 근거, 사업 목적, 확인 대상 및 수행 업무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및 징수위탁 사업비교]

구분	국세 체납관리단	캠코 징수위탁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국세징수법」 제11조
확인 인원	3,000명(추경에 따른 채용계획 기준)	50명(2026.4. 기준)
사업 목적	전화·방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확인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하여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납부 독려
확인 대상	모든 체납자 (납부의무소멸 대상 소액 체납자,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 실시)	①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자 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자
수행 업무	체납사실 안내, 방문일정 조율 및 현장확인,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등	전화·우편 등으로 납부 독려,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방문상담 등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양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목적은 구분되지만,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수위탁 수수료 사업과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간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모든 체납자를 실태확인하며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소액 체납자와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

인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대상에는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대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대상은 징수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관리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자와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대상 간 중복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대상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여부, 기존 위탁자의 위탁 유지 또는 해지 여부, 위탁 후 징수 여부 등을 전산상으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을 수행할 경우 체납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안내와 상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체납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 직접 실태확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관리가 병행될 경우, 징수 성과가 어느 사업의 활동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대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대상을 전산상으로 비교·점검하고, 중복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금액을 체납액 구간별로 집계·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 구간별 총 징수율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최근 5년 합계 기준 총 위탁금액은 29조 4,931억원이고, 이 중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총 금액은 2,180억원으로 총 징수율은 0.7% 수준이다. 체납액 1천만원 미만 구간의 총 징수율은 9.3%인 반면, 체납액 1억원 이상 구간의 총 징수율은 0.1%에 그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총 위탁금액 ¹⁾	총 징수금액 ²⁾	총 징수율	캠코 징수금액	캠코 징수율 ³⁾
2021	63,267	435	0.7	191	0.30
1천만원 미만	1,404	72	5.1	-	-
1천만원~1억원	29,662	305	1.0	-	-
1억원 이상	32,201	59	0.2	-	-
2022	62,519	477	0.8	229	0.37
1천만원 미만	2,144	233	10.9	-	-
1천만원~1억원	26,719	211	0.8	-	-
1억원 이상	33,656	33	0.1	-	-
2023	61,296	453	0.7	203	0.33
1천만원 미만	2,011	128	6.4	-	-
1천만원~1억원	21,654	262	1.2	-	-
1억원 이상	37,631	63	0.2	-	-
2024	57,644	413	0.7	187	0.32
1천만원 미만	1,318	124	9.4	-	-
1천만원~1억원	16,367	231	1.4	-	-
1억원 이상	39,959	58	0.1	-	-
2025	50,205	402	0.8	188	0.37
1천만원 미만	1,517	221	14.6	-	-
1천만원~1억원	14,604	163	1.1	-	-
1억원 이상	34,084	18	0.1	-	-
최근 5개년 합계	294,931	2,180	0.7	998	0.34
1천만원 미만	8,394	778	9.3	-	-
1천만원~1억원	109,006	1,172	1.1	-	-
1억원 이상	177,531	231	0.1	-	-

주: 1) 총 위탁금액 = 전년말 위탁금액 + 해당연도 위탁금액 - 해당연도 해지금액

2) 총 징수금액 = 총 위탁금액 중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연도에 징수한 총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금액은 구간별로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음

자료: 국세청

그러나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금액을 체납액 구간별로 별도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체납액 구간별 총 징수율 차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활동에 따른 것인지, 국세청의 자체 징수활동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통계 관리상의 미비에 그치지 않고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는 징수실적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체납액 규모별·위탁사유별·징수경로별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떤 유형의 체납에 대해 위탁 효과가 큰지, 위탁수수료 지급 수준이 적절한지, 위탁대상 선정·유지·해지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결과 위탁징수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기존 위탁범위와 수수료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집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체납액 1천만원 미만 구간의 총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더라도 해당 징수실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내문 발송, 전화·방문 상담, 재산 발견 통보 등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근거로 위탁대상을 조정하거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금액을 체납액 구간별로 집계·관리하고, 체납액 규모, 위탁사유, 징수경로, 징수주체별 실적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체납액 규모별 위탁 효과를 분석하고, 위탁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위탁대상 선정·유지·해지 기준, 국세청 직접관리 전환 여부 등을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체납자에 대한 상환능력별 단계적 징수관리 필요

가. 현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사업¹⁾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대출해 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원리금의 효율적인 상환관리와 상환 편의 제고를 통해 제도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2,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234	234	-	△13	221	221	-	-	199	199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임
자료: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한 후, 채무자의 소득 발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등록금 대출에 대한 한도는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따라 구분되며 최대 1억 2천만원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36-3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록금 대출 총 한도]

구분		총한도
학부		한도 없음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계열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¹⁾	일반·특수계열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 2천만원

주: 1)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자료: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는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 유형별로 연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이 발생한다. 상환기준소득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6 귀속연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2,056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연간소득금액 판단 기준	연도별 상환기준소득		
	귀속연도별	상환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 총급여환산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1년 소득	1,413만원	2,280만원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2년 소득	1,510만원	2,394만원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23년 소득	1,621만원	2,525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24년 소득	1,752만원	2,679만원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25년 소득	1,898만원	2,851만원
	'26년 소득	2,056만원	3,037만원

자료: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 체납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미상환 체납자는 5만 7,580명, 체납액은 813억 1,200만원으로, 2021년 3만 9,345명, 481억 1,500만원에 비해 각각 증가하였다. 미상환 비율도 2021년 14.4%에서 2025년 18.0%로 상승하여 상환대상자 중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및 미상환체납자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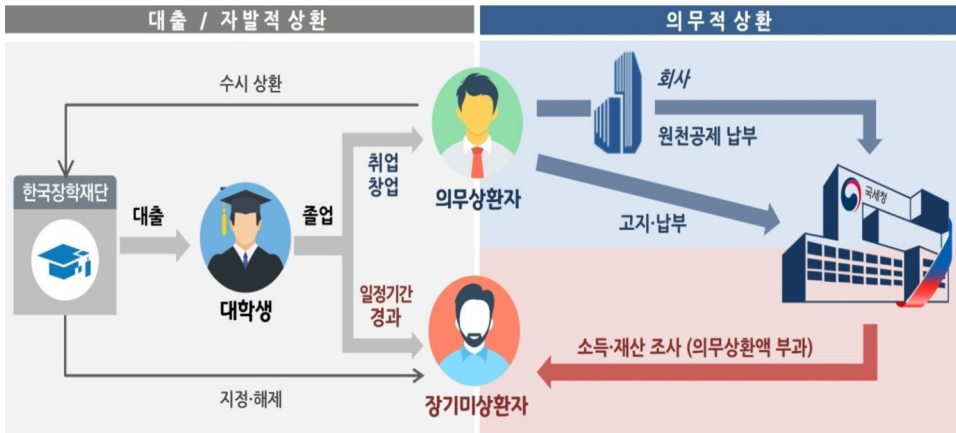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 대상		미상환체납		상환유예		미상환 비율	
	인원(A)	금액(B)	인원(a)	금액(b)	인원	금액	인원(a/A)	금액(b/B)
2021	273,322	333,696	39,345	48,115	7,681	10,814	14.4	14.4
2022	291,830	356,886	44,216	55,190	9,025	13,970	15.2	15.5
2023	318,395	403,693	51,116	66,145	12,017	19,272	16.1	16.4
2024	328,539	427,469	54,241	74,034	14,091	23,284	16.5	17.3
2025	319,648	419,836	57,580	81,312	14,721	24,011	18.0	19.4

자료: 국세통계포털

국세청은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 관리, 체납처분 및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시행 중에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한 의무상환자에 대해서는 회사를 통해 일정 상환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의무상환자에 고지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납부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자료: 국세청

2) 국세청은 미상환 비율 산정 시 상환대상자를 누적 개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누적 상환대상 인원에는 동일 채무자의 연도별 중복 산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모로 산정할 경우 상환대상 규모가 확대되어 체납자 비중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자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상환능력과 체납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 상담, 분할납부, 상환유예, 소득·재산 확인, 체납처분 등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출자의 소득 발생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산정·부과하는 제도이다.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은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에 상환율을 적용하고, 퇴직소득과 상속·증여재산은 각각 퇴직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산정한다. 또한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일정 기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의무상환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의무상환 대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 발생 대출자
의무상환액 산정	- 일반소득은 연간소득금액 중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에 상환율을 적용 - 퇴직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 적용 - 상속·증여재산은 과세표준에 상환율 적용
상환율	-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 대학원생 대출잔액 또는 학부·대학원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25%
상환 유예	대학생은 4년,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2년간 신청에 따라 상환유예 가능
장기 미상환자 판정기준	- 판정기준 1 : 2021년 이전 대출자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 - 판정기준 2 : 2022년 이후(추가) 대출자 ① 졸업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 ② 졸업 후 1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30% 미만인 채무자 ③ 졸업 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0% 미만인 채무자
미납 시 조치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분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미상환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소득구간별 상환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환기준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고소득 체납자와 상환기준소득을 소폭 초과한 체납자는 모두 의무상환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상환 여력과 생계 부담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상환대상자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상환기준소득 대비 소득수준, 체납기간, 체납액 규모, 반복 체납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구간별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강제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상환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가 체납자의 상환 가능성, 체납 규모 및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미상환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이며, 전체 강제징수 건수는 2021년 1,428건에서 2025년 1만 7,760건으로 5년간 12.4배 증가하였다. 특히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세환급금 압류 건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압류 등 전체 강제징수 건수	1,428	2,748	3,896	12,354	17,760
국세환급금 압류건수	1,107	2,476	3,254	10,490	15,176
기타 강제징수	321	272	642	1,864	2,584
압류 환급금액	359	559	676	1,974	2,755

주: 국세환급금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상환능력이 충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상환기준소득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미상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모도 2021년 182명, 8,200만원에서 2025년 2,647명, 6억 5,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환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소득구간에 대해서도 사후적 체납처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득구간별 완충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환기준소득 초과 직후 구간 강제징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환기준소득 총급여 환산 시 (만원)	2,280	2,394	2,525	2,679	2,851
해당 총급여 110% 수준 소득 ¹⁾ (만원)	2,500	2,650	2,750	2,950	3,150
미상환 체납자 수	7,629	8,303	9,367	10,003	10,302
강제징수 인원	182	582	775	1,887	2,647
강제징수 금액	82	110	158	414	653

주: 1) 아래 수치들은 해당 총급여 110% 수준 이하인 미상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 상환기준소득 2,851만원의 110% 수준인 총급여 3,150만원 미만 미상환 체납자수, 강제징수 인원, 강제징수 금액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특히 국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청년층 상환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산 시정요구³⁾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환기준 소득 상향, 연체금 인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되는 상환율 인하 건의 등 제도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상환기준소득 인접 구간의 저소득·일시적 미납자와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소득·고액·반복 체납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자에 대해 소득구간별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환기준소득 인접 구간의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상담, 분할납부, 상환유예 가능성 확인 등 완충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중간소득 구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과 체납액 규모를 고려하여 납부계획 제출, 분할납부, 소득·재산 확인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소득·고액·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확인과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가. 현 황

납부고지서 등 발송사업¹⁾은 납세의무 이행에 필수적 절차인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세금신고 및 세법개정 사항 등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671억 4,700만원 중 67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납부고지서 등 발송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납부고지서 등 발송	62,147	62,147	-	5,000	67,147	67,140	-	7	64,061	64,061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임
자료: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은 크게 우편발송과 모바일 발송으로 구분되는데, 대금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대금지급절차]

우편발송	납부고지서·독촉장·신고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 의뢰(국세청) → 우편물 발송(우정사업본부) → 우편요금 청구(우정사업본부) → 대금 지급(국세청)
모바일 발송	신고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 의뢰(국세청) → 모바일 발송(네이버·카카오·KT) → 모바일 요금 청구(네이버·카카오·KT) → 대금 지급(국세청)

자료: 국세청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33-300

나. 분석의견

납부고지서 등 발송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반복되는 이·전용은 등기우편·일반우편·모바일 안내문 등 발송방식별 수요 예측과 단가 산정의 정확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세부 산출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납부고지서 발송방식은 크게 등기우편, 일반우편, 모바일 발송, 전자고지로 구분된다. 등기우편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 법령상 강제된 방법이다. 일반우편은 모바일 우선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우편 송달대상 이외 법령상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발송하고 있다. 전자송달은 법령상²⁾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세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기준 비교]

구 분	등 기	일 반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대상	법령상 강제	고지서 (100만원 이하) 등	일반우편 (안내문 등)	납세자 신청
발송방법	등기, 전자송달	일반, 전자송달	모바일	이메일, 홈택스
효 과	송달확인 가능	송달확인 불가	송달효력 無	도달간주 (입력·저장)
사 례	고지서, 독촉장 등	소액 고지서 및 실물 동봉, 모바일 실패자 등	신고 안내문 등	고지서, 독촉장

자료: 국세청

자료상 단가는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센터 건당 2,830원, 지방청 및 세무서 건당 3,007원이고, 일반우편은 우편물센터 건당 430원, 지방청 및 세무서 건당 489원

2)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 안내문은 플랫폼과 열람 여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며, 전자고지는 발송·열람 비용이 없다.

[납부고지서 등 발송 평균단가 비교내역]

구분				단가	
등기우편	우편물센터			건당 2,830원	
	지방청 및 세무서			건당 3,007원	
일반우편	우편물센터			건당 430원	
	지방청 및 세무서			건당 489원	
모바일	카카오페이 /네이버	전자문서	발송	건당 16.5원	예산 편성 시 건당 평균단가 50원으로 산정
			열람	건당 77원	
		알림톡(문자)		건당 11원	
	KT	전자문서	발송	건당 147.4원	
			열람	건당 55원	
	전자고지	발송, 열람			

자료: 국세청

납부고지서 등 발송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186억 6,500만원, 2024년 88억 100만원, 2025년 50억원의 이·전용이 이루어졌으며, 3년간 이·전용 규모는 총 324억 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발송방식별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등기우편은 54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563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우편은 26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69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다. 반면 모바일 안내문은 4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31억 3,600만원으로 편성액을 하회하였다.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내 발송방식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³⁾]

구분		내역
2023	편성	우편물센터 및 지방청·세무서 등기우편 37,541백만원 일반 우편 7,079백만원 모바일 안내문 2,370백만원
	집행	우편물센터 및 지방청·세무서 등기우편 55,985백만원 일반 우편 6,568백만원 모바일 안내문 3,063백만원
2024	편성	우편물센터 및 지방청·세무서 등기우편 44,445백만원 일반 우편 10,432백만원 모바일 안내문 4,475백만원
	집행	우편물센터 및 지방청·세무서 등기우편 55,996백만원 일반 우편 7,486백만원 모바일 안내문 4,642백만원
2025	편성	우편물센터 및 지방청·세무서 등기우편 54,054백만원 일반 우편 2,608백만원 모바일 안내문 4,650백만원
	집행	우편물센터 및 지방청·세무서 등기우편 56,359백만원 일반 우편 6,934백만원 모바일 안내문 3,136백만원

자료: 국세청

이는 동 사업의 예산 부족이 단순히 총액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우편·일반우편·모바일 안내문 등 발송방식별 수요 예측과 단가 산정의 정확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세청은 전년도 집행액이나 총 발송량 기준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우편요금 인상률, 모바일 실제 단가, 전자고지 신청률 등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3) 최근 3년 내 납부고지서 등 발송사업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47,704	-	18,665	66,369	66,295	-	74
2024	60,066	-	8,801	68,867	68,838	-	29
2025	62,147	-	5,000	67,147	67,140	-	7

자료: 국세청

둘째,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전자송달, 반송관리 등 우편발송 비용 절감 수단별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비용절감 효과와 납세자 권리보호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전환하고, 납부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확대하는 한편, 고지서 반송률을 축소하기 위해 반복 반송 세척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우편요금 절감과 송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바일 안내문, 납부고지서 반송관리는 대상 서류와 비용절감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바일 안내문은 신고안내문 등 안내성 서류를 우편이 아닌 방식으로 발송함으로써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에는 기존 일반우편 발송분의 대체 효과뿐 아니라 신규 안내문 발송 확대 효과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바일 발송 건수 증가만으로 우편발송 비용 절감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뿐만 아니라 모바일 발송 성공률, 실패 후 우편전환 건수, 잔여 일반우편 발송 건수 및 비용 등을 함께 관리하여 모바일 안내문 확대가 실제 우편발송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납부고지서 반송관리는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송달절차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된다. 납부고지서는 불복기간, 체납처분 등 후속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법정 송달서류이므로, 국세청은 납부고지서의 반송 사유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19.1%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5개년 납부고지서·모바일 안내문 반송률 및 실패율]

(단위: 천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납부고지서	발송 건수(a)	8,807	12,234	12,269	12,398	12,432
	반송 건수(b)	1,388	2,004	2,198	2,263	2,374
	반송률(b/a)	15.8	16.4	17.9	18.3	19.1
모바일 (안내문 등)	발송건수(a)	27,063	32,579	47,757	72,150	76,913
	실패건수(b)	2,790	2,332	2,813	5,975	4,220
	실패율(b/a)	10.3	7.2	5.9	8.3	5.5

자료: 국세청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2월 27일부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소액 납부고지서의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⁴⁾ 이는 등기우편 반송률 상승과 우편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납부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우편은 등기우편에 비해 발송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는 반송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납세자가 실제로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확인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납부지연가산세, 독촉, 체납처분 등 후속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우편 확대 이후 반송률이 하락하더라도 이는 등기우편 반송 감소에 따른 통계상 효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송달 실효성 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감소액 등 비용절감 효과뿐 아니라, 일반우편 송달 대상자의 납기 내 납부율, 독촉 전환율, 체납 전환율, 고지서 미수령 민원 건수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납부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확대를 통해 우편 송달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전자송달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⁵⁾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상향은 조세지출 확대를 수반하므로 실제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와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송달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상시적 확대보다는 일정 기간에 한한 한시적 상향을 검토하고, 납세자 1인당 연간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액공제 등 혜택과 더불어 전자송달 미신청자 대상 맞춤형 안내 강화 등 홍보 확대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가. 현황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세금포인트 혜택을 홍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5회계연도의 경우 추경예산은 4억 2,5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2억 7,8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1,312	1,312	-	△298	1,014	1,014	-	-	1,115	1,115
	425	425	-	△147	278	278	-	-	254	254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구분되며 1년에 인당 1,000포인트 한도가 부여된다.

[세금포인트 제도 적립 기준]

구분	개인	법인
대상	개인납세자	중소기업
부여세목	소득세	법인세
소멸기한	5년 ¹⁾	
부여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포인트 부여	
부여한도	1년에 인당 1,000포인트 한도 부여	
부여시점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까지 부여 (원천징수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세액까지 부여)	

주: 1) 개인은 '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적용(법인은 '14년부터 적용)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33-300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근 확대 실적은 아래와 같다.

[세금포인트 활용처 확대 현황]

연도	확대 분야	활용처
2004	담보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2020	징수유예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할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운영
	기타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2022	할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 입장료 할인
2023	할인	국립생태원 입장료 할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행복한 백화점 물품 구매금액 할인
	기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2024	할인	경주 사적지(10개) 입장료 할인, 국립자연휴양림(46개) 입장료 감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CGV 영화관 관람료 할인, 파주 평화누리캠핑장 이용료 할인, 세종 베어트리파크 입장료 할인, 청주 청남대 입장료 할인, 서산 버드랜드 입장료 할인, 경주 엑스포대공원 입장료 할인, 경주 버드파크 입장료 할인, 부산 아홉산숲 입장료 할인, 세종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입장료 할인, 예천 천문우주센터 입장료 할인, 광주 국립광주과학관 관람료 할인,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퇴실 연장, 세종 라고바움관광호텔 퇴실 연장
2025	할인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할인, 서울 목동아이스링크 입장권 할인, 제주 상호원수목원 입장료 할인, 제주 훈데르트바서파크 입장권 할인, 제주 라온더마파크 이용료 할인, 제주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승선료 할인, 제주 서귀포JS호텔 숙박료 할인, 단양 온달동굴 입장료 할인,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입장료 할인, 화성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이용료 할인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 확대를 위해 홍보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이용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홍보 방식의 개선만으로 제도 활성화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의 수요 기반과 운영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활용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의 누계 사용률은 0.65%에 그쳤으며, 법인 납세자의 누계 사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 및 법인납세자 부여 및 사용 현황(누계)]

(단명, 백만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	부여 인원	3,598	3,664	3,733	3,811	3,881
	부여 포인트(A)	7,431	8,768	9,851	10,844	11,577
	사용 포인트(B)	42	49	58	66	75
	잔여 포인트(A-B)	7,389	8,719	9,793	10,778	11,502
	사용률(B/A)	0.57	0.55	0.59	0.61	0.65
법인	부여 인원	72	82	89	90	95
	부여 포인트(A)	694	772	920	979	894 ¹⁾
	사용 포인트(B)	14	17	19	22	23
	잔여 포인트(A-B)	680	755	901	957	871
	사용률(B/A)	2.02	2.20	2.07	2.25	2.57

주: 1) 2025년부터 세금포인트 부여 시 1,000포인트 한도를 적용하여, 2025년에 부여한 세금포인트보다 2020년에 부여되어 소멸기한 5년이 도래한 세금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누계 포인트가 감소함
자료: 국세청

이에 따라 세금포인트 제도의 운영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내 지적을 검토한 결과, 세금포인트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세금포인트 사용처 발굴·확대 필요, 제도의 지속 운영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세금포인트 제도 관련 주요 지적사항]

구분	내용
2022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2022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산 기획재정위원회 2026회계연도 예산 기획재정위원회	세금포인트 사용처 발굴·확대 필요
2022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운영 필요성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 부진에 대응하여 2025년 홍보 예산을 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 증가한 규모이다. 다만 해당 예산 중 1억 4,700만원은 인건비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용되었다. 최근 5년간 홍보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은 뚜렷한 개선 없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금포인트 홍보사업별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중매체 홍보	-	-	-	206	96
역사 등 스크린 홍보	-	-	55	-	120
전국 시내버스 홍보	-	-	-	-	-
포스터, 리플릿 홍보	11	11	20	-	12
홍보물품	-	-	45	5	50
합계	11	11	120	211	278

자료: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순히 제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금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고, 활용처 역시 국가시설 입장료 할인 등 일부 혜택에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이 제한적이다. 또한 세금포인트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분을 국세청이 보전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민간기업이나 외부기관의 참여 유인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²⁾ 해당 연구용역은 세금포인트의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용처 확대 없이 홍보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세금포인트 활용처 성격이 주로 박물관·수목원 등과 같은 특정 시설 이용 할인에 집중되어 있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홍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보다 현행 제도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금포인트의 사용처, 혜택 수준, 이용 편의성, 참여기관 확대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방안 또는 제도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음

연도	연구수행기관	연구용역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가. 현 황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누계체납액은 14.2% 증가한 반면, 정리중체납액은 96.2% 증가하여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¹⁾ 같은 기간 누계체납인원은 4.9% 증가하였으나, 정리중체납인원은 29.3% 증가하였다.

[2021~2025년 세목별 누계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계체납액	998,607	1,025,140	1,060,597	1,107,310	1,140,969
부가가치세	268,128	278,639	295,630	304,895	323,679
소득세 ¹⁾	225,046	238,499	251,547	251,009	269,648
법인세	85,079	92,483	98,642	99,835	107,583
양도소득세	118,596	120,296	124,739	124,950	130,132
상속·증여세	27,812	28,694	33,977	29,717	31,032
종합부동산세	8,014	9,966	12,163	13,777	17,569
기타	265,932	256,563	243,899	283,127	261,326
체납인원	1,275,513	1,325,937	1,336,759	1,329,622	1,337,920

주: 1)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2021~2025년 세목별 정리중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리중체납액	114,536	155,673	177,491	193,562	224,742
부가가치세	51,365	67,750	77,106	84,236	95,995
소득세 ¹⁾	24,405	34,035	38,007	40,355	47,629
법인세	9,188	14,835	18,501	21,294	24,939
양도소득세	9,268	15,369	17,072	20,934	25,415
상속·증여세	5,205	6,349	9,864	9,204	10,523
종합부동산세	3,899	5,701	6,782	8,012	10,735
기타	11,206	11,634	10,159	9,527	9,506
체납인원	849,700	985,792	1,027,916	1,061,643	1,098,550

주: 1)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누계체납액은 전체 체납 잔액 개념이며, 정리중체납액은 체납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임

체납규모별로 보면 체납자는 주로 1천만원 미만 소액 체납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구간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2025년 정리중 체납액 기준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84만 2,387명으로 전체 정리중체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해당 구간의 체납액은 1조 7,504억원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만 6,983명이었으나, 체납액은 13조 8,018억원으로 전체 정리중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2021~2025년 체납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천만원 미만	체납액	18,427	19,588	20,240	20,211	20,283
	체납인원	716,733	766,775	772,820	753,919	761,927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액	146,129	145,732	145,888	148,646	146,439
	체납인원	402,125	401,288	402,510	407,670	406,215
1억원 이상	체납액	834,051	859,820	894,469	938,453	974,247
	체납인원	156,655	157,874	161,429	168,033	169,778
합계	체납액	998,607	1,025,140	1,060,597	1,107,310	1,140,969
	체납인원	1,275,513	1,325,937	1,336,759	1,329,622	1,337,920

자료: 국세청

[2021~2025년 체납규모별 정리중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천만원 미만	체납액	12,698	15,472	16,269	16,822	17,504
	체납인원	685,675	782,442	807,605	824,459	842,387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액	43,829	54,650	59,647	64,303	69,220
	체납인원	147,083	178,460	191,899	205,056	219,180
1억원 이상	체납액	58,009	85,551	101,575	112,437	138,018
	체납인원	16,942	24,890	28,412	32,128	36,983
합계	체납액	114,536	155,673	177,491	193,562	224,742
	체납인원	849,700	985,792	1,027,916	1,061,643	1,098,550

자료: 국세청

체납기간별로 보면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주로 3년 미만 체납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3년 이상 체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정리중체납액 기준 3년 미만 체납건수는 281만 5,372건으로 전체 체납건수 358만 1,558건의 78.6%를 차지하였고, 해당 구간의 체납액은 18조 3,8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2

조 4,742억원의 81.8% 수준이었다. 특히 1년 미만 체납은 156만 8,108건, 10조 1,819억원으로 단일 구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3년 이상 체납건수는 76만 6,186건, 체납액은 4조 907억원으로, 2021년 41만 4,495건, 1조 3,138억원에 비해 각각 84.9%, 211.4% 증가하였다.

[2021~2025년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액 현황²⁾]

(단위: 억원,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년 미만	체납액	64,627	87,152	96,022	93,660	101,819
	체납건수	1,028,010	1,351,965	1,502,108	1,537,282	1,568,108
1년 이상~ 2년 미만	체납액	24,182	32,674	39,268	45,008	50,374
	체납건수	480,627	461,753	597,046	705,110	766,202
2년 이상~ 3년 미만	체납액	12,589	15,754	18,255	25,083	31,642
	체납건수	306,604	295,379	290,137	392,368	481,062
3년 이상~ 5년 미만	체납액	8,653	13,578	16,592	19,374	27,362
	체납건수	277,240	342,929	362,021	365,908	455,002
5년 이상~ 10년 미만	체납액	3,766	5,625	6,495	9,354	12,249
	체납건수	119,525	144,149	185,844	237,194	267,298
10년 이상	체납액	719	890	859	1,083	1,296
	체납건수	17,730	21,754	26,824	35,470	43,886
합계	체납액	114,536	155,673	177,491	193,562	224,742
	체납건수	2,229,736	2,617,929	2,963,980	3,273,332	3,581,558

주: 동일 체납자가 여러 건의 체납액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건수로 파악함
자료: 국세청

이와 같은 체납 규모 확대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납부안내 강화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등 체납액을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국세청은 누계체납액에 대한 기간별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 않음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단순 총 회수액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체납기간별·체납규모별 회수실적을 관리하고, 체납관리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체납자군을 식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독촉, 압류·공매, 징수위탁, 실태확인 등 다양한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체납관리 사업의 성과를 단순 회수실적 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사업이 없었더라도 기존 납부고지·독촉절차, 납세자의 자진납부, 일시적 자금사정 개선, 기존 분할납부 이행 등에 따라 회수되었을 체납액이 성과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2026년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체납국세 100억원³⁾을 징수하여 42억원의 투입예산 대비 2배 이상의 회수실적을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실적 추이(누계, 2026.3.5.~5.22.)]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4주차 (3.5~4.3)	5~6주차 (4.6~4.17)	7~8주차 (4.20~5.1)	9~10주차 (5.4~5.15)	11주차 (5.18~5.22)
실태확인	10,540	18,110	24,276	31,347	36,532
납부인원	1,003	1,907	3,413	5,012	6,022
분납희망	2,440	4,086	5,503	7,927	10,230
납부금액	1,194	2,483	4,506	7,971	9,977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체납관리단이 운영되지 않았던 2025년 체납국세 정리실적을 검토한 결과 전체 체납국세 현금정리실적은 11조 9,583억원이고, 체납관리단 실적 발표와 동일한 기

3)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회수실적 산정 시 최초 접촉 후 실제 납부된 금액만을 성과로 산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접촉 전 납부액, 분납약정액, 환급금 추당액,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회수분 및 정리보류·불납결손 등 비현금 정리실적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4)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한자리에, 1만 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위한 준비상황 꼼꼼히 점검」, 2026.5.27.

간인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 기간의 2025년 체납국세 현금정리실적은 2조 6,969억원이었다.⁵⁾ 즉 체납관리단 접촉 여부와 별개로 기존 징수절차, 납세자의 자진납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납국세가 회수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체납관리단과 접촉했다는 사유만으로 성과를 측정할 경우 그 성과가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납관리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 회수액뿐만 아니라 사업이 없었더라도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체납관리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회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군을 식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납기간과 체납규모는 체납관리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그룹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체납기간이 짧거나 체납규모가 작은 체납액은 기존 독촉절차,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할납부 이행 등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장기·고액 체납액은 실태확인, 재산추적, 압류·공매 등 적극적인 관리 없이는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체납관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 총 회수액이 아니라 체납기간별·체납규모별 회수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어느 체납자군에서 사업 투입에 따른 추가 회수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세청은 체납액의 분할납부 등으로 인해 체납기간별·체납규모별 회수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분할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납부 시점마다 체납기간과 잔여 체납액이 변동하므로 회수실적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재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 목적상 체납기간 및 체납규모는 평가대상 확정 시점의 출발조건으로 설정하고, 이후 일부 납부, 체납기간 경과, 잔여 체납액 변동 등에 따라 당초 성과평가 분류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수실적을 추적하면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초 등 기준시점에 고액·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체납자가 일부 납부로 잔여 체납액이 감소하더라도, 해당 회수액은 당초 고액·장기 체납자 집단의 회수실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체납관리

5) 2026년도 동기간에 대한 체납국세 현금정리실적은 아직 통계 생성 마감 전임

6) 체납관리 관련 기존 사업인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을 검토한 결과 2021년~2025년간 체납액 1천만원 미만 구간의 징수율은 9.3%인 반면, 체납액 1억원 이상 구간의 징수율은 0.1%로 체납액 규모가 낮을수록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이 없었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단순 총 회수액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체납기간별·체납 규모별 회수실적을 관리하고, 체납관리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체납자군을 식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2억 9,100만원이며, 8,225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1%인 585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7,592억 5,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6억 9,7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0,291	100,291	100,291	822,523	58,576	759,251	4,697	7.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586억 9,100만원이며, 이 중 98.9%인 6,512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관세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 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58,250	658,250	658,691	651,234	1,854	5,603	98.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관세청의 자산은 1조 5,432억 100만원, 부채는 1,499억 3,3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 3,932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226억 900만원, 유·무형자산 1조 5,104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말 대비 191억 4,000만원(△1.2%) 감소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이 전기 말 대비 61억 2,5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금융자산이 127억 6,700만원, 기타자산이 124억 9,800만원 각각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938억 3,900만원, 충당부채 558억 9,400만원, 기타부채 2억 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말 대비 60억 7,200만원(4.2%) 증가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 증가 등에 따라 충당부채가 129억 1,000만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543,201	1,562,341	△19,140	△1.2
Ⅰ. 금융자산	22,609	35,376	△12,767	△36.1
Ⅱ. 유·무형자산	1,510,451	1,504,326	6,125	0.4
Ⅲ. 기타자산	10,141	22,639	△12,498	△55.2
부 채	149,933	143,861	6,072	4.2
Ⅰ. 차입부채	93,839	100,670	△6,831	△6.8
Ⅱ. 충당부채	55,894	42,984	12,910	30.0
Ⅲ. 기타부채	201	208	△7	△3.4
순 자 산	1,393,268	1,418,480	△25,212	△1.8
Ⅰ. 기본순자산	691,124	691,124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78,869	89,568	△10,699	△11.9
Ⅲ. 순자산 조정	623,275	637,787	△14,512	△2.3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749억 1,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822억 4,800만원, 관리운영비 5,462억 200만원, 비배분비용 786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22억 2,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127억 600만원(△1.6%) 감소한 7,749억 1,100만원이다. 이는 관리운영비가 전년 대비 257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나, 비배분비용이 295억 7,300만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총 6개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프로그램 1,045억 9,800만원, 수출입통관 프로그램 357억 3,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727억 9,800만원, 경비 1,734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82,248	180,505	1,743	1.0
가. 프로그램 총원가	182,248	180,505	1,743	1.0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546,202	520,456	25,746	4.9
III. 비배분비용	78,687	106,260	△27,573	△25.9
IV. 비배분수익	32,226	19,605	12,621	64.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74,911	787,617	△12,706	△1.6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774,911	787,617	△12,706	△1.6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4,184억 8,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3,932억 6,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52억 1,200만원(△1.8%) 감소하였다.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전년 대비 127억 6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각각 전년 대비 106억원, 286억 9,400만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8,274억 1,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632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45억 1,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관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418,480	1,417,103	1,377	0.1
Ⅱ. 재정운영결과	774,911	787,617	△12,706	△1.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64,212	792,906	△28,694	△3.6
Ⅳ. 조정항목	△14,512	△3,912	△10,600	△271.0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1,393,268	1,418,480	△25,212	△1.8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① 보호무역 장벽 해소, ② 경제회복 총력 지원, ③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④ 경제안보 및 공정 무역 질서 확립, ⑤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과태료 체납관리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미수납액 중 체납정리중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은 체납관리 대상을 세분화하고, 체납유형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통관감시장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통관감시장비 도입 전 현장 적용 가능성, 일선 직원의 운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비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통관애로가 일부 국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통관애로를 국가별·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현지 설명회 주제 선정, 해외 주재 관세관 활동,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의제 설정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과태료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황

과태료 과목¹⁾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수납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887억 7,700만원 중 29.8%인 264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다.

[2025회계연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10,917	10,917	10,917	88,777	26,442	61,620	715	29.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여러 법령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규정 및 그 부과 요건은 아래와 같다.

[관세청 과태료 부과 요건 사례]

법령	조문	부과요건
관세법	제277조	자료제출·신고·보고·반입반출·유통이력·적재화물목록 등 관세행정상 의무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지급·수령, 자본거래, 지급수단·증권 수출입 관련 신고·절차 의무 위반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 양도, 사업개시, 외국물품 반출·양도, 공장 사용 관련 의무 위반 등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56-563

법령	조문	부과요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원산지 관련 서류제출, 서면·현지조사, 용도세를 적용 등 FTA 특례 관련 의무 위반 등
대외무역법	제59조	원산지표시 등 대외무역 관련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관세사법	제31조	관세사의 신고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과태료 미수납액 중 체납정리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금액·체납기간·재산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체납관리 대상을 세분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에는 재산조회·압류·공매 등 징수조치를, 소액·생계형 체납에는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등 납부여건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최근 5년 내 과태료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5년 과태료 수납액은 264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5% 상승하였으며, 수납률은 2021년 12.7%에서 2025년 기준 29.8%까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납률이 개선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9,247	9,247	-	9,247	41,469	5,279	57.1	12.7	34,992	1,198
'22	4,813	4,813	-	4,813	54,887	10,421	216.5	19.0	44,273	194
'23	7,426	7,426	-	7,426	64,433	10,780	145.2	16.7	53,515	138
'24	8,892	8,892	-	8,892	87,678	12,156	136.7	13.9	74,980	542
'25	10,917	10,917	-	10,917	88,777	26,442	242.2	29.8	61,620	715

자료: 관세청

이에 따라 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은 616억 2,000만원으로 전년 749억 8,000만원 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 미수납액의 감소가 과태료 체납관리 부담의 완화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수납액 중 납기미도래·징수유예 등은

일시적 또는 절차상 미수납의 성격이 있는 반면, 체납정리중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적극적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의 과태료 미수납액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체납정리중 미수납액은 2023년 216억 2,700만원에서 2024년 351억 7,700만원, 2025년 551억 4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의 경우 체납정리중 금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미수납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 이후의 징수관리 실효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과태료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납 정리중	시효완성
2021	34,992	6	653	2	1,011	33,320	1,198
2022	44,273	286	1,729	444	2,233	39,581	194
2023	53,515	628	6,305	362	24,592	21,627	138
2024	74,980	-	15,422	168	24,212	35,177	542
2025	61,620	-	2,054	163	4,300	55,104	715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국회는 최근 5년 중 4차례 결산 심사에서 관련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과태료·과징금 정리기간 운영, 체납정리활동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납정리중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조치만으로는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 관련 국회 시정요구 내역]

회계연도	관련 내용	
2020	시정요구명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시정요구유형 및 시정요구사항	○ (제도개선)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실적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
	후속조치	-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체납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명단공개 등 법령 개정안 마련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

회계연도	관련 내용	
2021	시정요구명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
	시정요구유형 및 시정요구사항	○ (제도개선) 납세의무자 재산조사 강화, 미수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등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
	후속조치	- 미수납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기간 시행 - 체납자 명단공개, 가산금 신설 등 법령 개정안 마련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
2023	시정요구명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징수실적의 제고 필요
	시정요구유형 및 시정요구사항	○ (제도개선) 납부독려, 재산조사 강화,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후속조치	- 명단공개·체납자 출국금지 조항 등 법령 개정안 마련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 -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과세자료 공유 확대
2024	시정요구명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시정요구유형 및 시정요구사항	○ (제도개선)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TF 구성을 통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과중한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
	후속조치	-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설 등 법령 개정안 마련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 및 의원입법발의

자료: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관세청의 저조한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고액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신설 내용이 담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²⁾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³⁾이 발의된 점은 관세청의 저조한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은 아직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관세청은 법률 개정 여부와 별개로 현행 제도하에서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체납액의 징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⁴⁾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10.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4.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24.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공매 등 매각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납된 과태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압류	압류건수	70	54	44	62	49
	체납금액	9,762	17,318	19,360	33,373	37,352
공매	공매건수	1	1	-	-	1
	금액	45	5	-	-	7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기존 조치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금액·체납기간·재산 보유 여부·반복 체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체납유형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액·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통한 집중관리와 재산조회·압류 등 징수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소액 또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납 전담팀 운영, 분할납부, 납부 기일 연기 등을 병행함으로써 징수 실효성과 납부자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의 정보 공유 및 업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과태료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가. 현황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 사업¹⁾이란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고 마약류·총기류 등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감시장비 등을 도입·교체하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157억 1,900만원 중 147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0%였으며, 5억 1,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	15,666	15,666	152	△99	15,719	14,780	429	510	19,287	19,287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열화상카메라와 같은 신규 통관감시장비 도입 전 현장 적용 가능성, 일선 직원의 운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비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크게 ①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과 ②공항만장비 도입 사업으로 구분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X-ray 검색기 및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다양한 감시장비를 도입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예산 편성을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으로 54억 4,600만원, 공항만장비 도입으로 10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443-300

[2025년도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 내역]

사업명	편성 근거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p>○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 5,446백만원 (△65백만원)</p> <p>① 컨테이너검색기 임차료 : 4,973백만원(△44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감만) : 555백만원 × 4회분 = 2,220백만원(+15백만원) - (광양항) : 224백만원 × 4회분 = 896백만원(+16백만원) - (군산항) : 363백만원 × 4회분 = 1,452백만원(+1,127백만원) - (부산신항) : 405백만원 × 1회분 = 405백만원(+355백만원) <p>②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지원 : 123백만원(+3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업무여비 : 30백만원(전년동) - 유관기관 업무협약 : 13백만원(전년동) - 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검수용역비 : 80백만원(순증) <p>③ 컨테이너검색기 철거비용 : 350백만원(순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연구비 : 22백만원, 공사비 : 328백만원
공항만 장비 도입	<p>○ 공항만장비 도입 : 10,220백만원(△10,171백만원)</p> <p>①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2,517백만원(+1,77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 2,080백만원(순증) - 부산항 확장구역 CCTV 설치 : 237백만원(+47백만원) - 소규모(CCTV, 광케이블 선로교체 등) 노후교체 : 200백만원(전년동) <p>② X-Ray검색기 도입 : 4,787백만원(+1,07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ZBV) 임차료 : 2,138백만원(+324백만원) - 인천공항 대형 항공화물용 X-Ray검색기 임차료 : 384백만원(전년동) - 소형 X-Ray검색기 임차료 : 1,875백만원(+418백만원) - 중형 X-Ray검색기 임차료 : 390백만원(+306백만원) <p>③ 기타 장비 도입 : 2,056백만원(△4,85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폭발물 탐지기 도입 : 400백만원(△600백만원) - UHF 통신장비 등 교체 : 40백만원(전년동) - 금속탐지기 도입 : 30백만원(전년동) - APIS 관련장비 : 64백만원(전년동) - 라만분광기 4대 도입 : 400백만원(전년동) - 공항만 열화상탐지기 15대 도입 : 330백만원(순증) - 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2대 도입 : 792백만원(△3,564백만원) <p>④ 인천공항 T2 확장 : 840백만원(△6,79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X-Ray검색기 임차료 : 840백만원(+420백만원) <p>⑤ 평택항 新 여객터미널 개장 : 20백만원(△1,3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X-Ray검색기 임차료 : 20백만원(+15백만원)

주: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 내역

자료: 관세청

관련된 예산의 집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은 예산현액 54억 8,600만원 중 50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공항만장비 도입사업은 예산현액 102억 3,300만원 중 97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5년도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사업 예산 집행 내역]

사업명	집행 내역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 (예산현액) 5,486백만원 → (집행) 5,033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이월	불용
	컨테이너검색기 임차료	4,973	4,550	405	18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지원	163	139	24	-
	컨테이너검색기 철거비용	350	344	-	6
	합 계	5,486	5,033	429	24
* 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429백만원 이월 (임차료 : 405백만원, 검수용역비 : 24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광양항 임차료 18백만원, 공사비 5백만원 등)					
공항만 장비 도입	○ (예산현액) 10,233백만원 → (집행) 9,747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이월	불용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629	2,565	-	64
	X-ray 검색기 도입	4,787	4,719	-	68
	기타 장비 도입	1,957	1,603	-	354*
	인천공항 T2 등 확장	840	840	-	-
	평택항 新 여객터미널 개장	20	20	-	-
합 계	10,233	9,747	-	486	
* 자산취득비에서 열화상카메라 집행잔액(330백만원)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낙찰차액(24백만원)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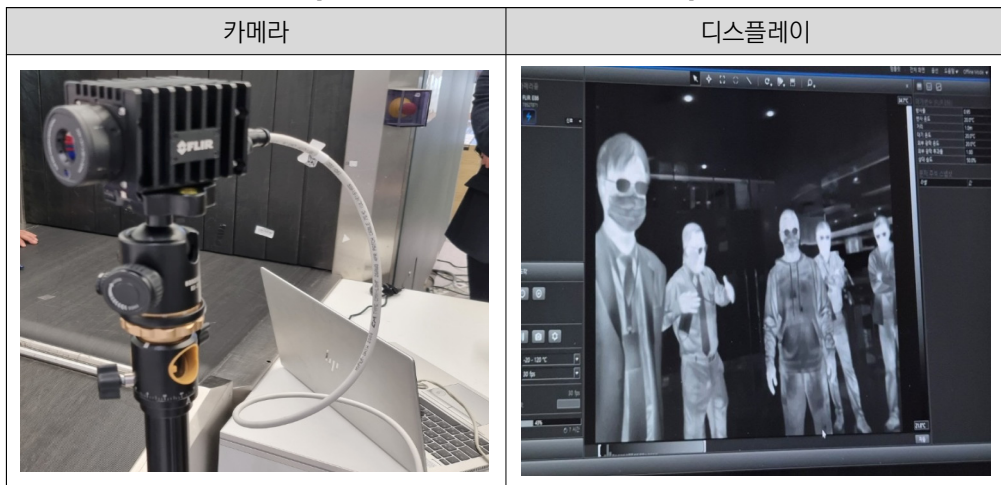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열화상카메라²⁾ 도입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 열화상카메라는 물체에서 발산되는 적외선, 즉 열복사를 감지하여 온도 차이를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장비로, 검역 및 질병 검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가 개인 소비 목적의 소규모 밀수에서 kg 단위의 대규모 밀수로 변화하고 있고, 여행자의 신체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열화상카메라 도입을 검토하였다. 특히 여행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세관의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온도 양상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신체 은닉 마약 적발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열화상카메라 기기 및 디스플레이]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열화상카메라의 본격 도입에 앞서 기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시중에 판매 중인 열화상카메라를 대상으로 두 차례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였다.³⁾ 그 결과 관세청은 시판 중인 대다수 열화상카메라가 가격 수준과 관계 없이 여러 변수⁴⁾의 영향을 받아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 여부를 적발·선별하는 성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동 장비의 마약 적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구매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은 불용되었다.

물론 관세청이 성능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장비의 활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3) 단 관세청은 1차적인 성능 테스트를 2023년 11월에 실시한 바가 있다는 입장임

4) 관세청에 따르면, 외투를 입은 상태이거나 소량의 물품을 지닌 상태에서 식별이 어려웠고, 특히 일정 시간 몸에 해당 물품을 지닌 경우 체온이 물체에 전달되어 음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능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 중 일부는 장비의 기술적 원리와 실제 검사환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열화상카메라는 인체 표면의 온도 차이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외투 등 의복을 착용한 경우 신체 은닉 물품의 식별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마약류를 신체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검사 직전에 은닉하기보다는 장기간 은닉 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은닉 물체에 체온이 전달되어 열화상카메라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장비의 기술적 원리, 실제 검사환경, 은닉 유형별 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측면이 있으므로 장비 도입 검토 단계에서 현장 적용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 장비에 대한 성능테스트가 2025년도 예산 편성 이후인 2025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장비 도입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기본 성능, 현장 적용 가능성,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예산 편성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및 위해물품의 은닉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통관감시장비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신규 장비 도입이 실질적인 단속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장비의 기술적 원리, 은닉 유형별 탐지 가능성, 실제 검사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및 현장 운용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장비의 성능이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성능검증 또는 소규모 시범운용 결과를 예산요구 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FTA 및 국제협력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업은 해외주재 관세관의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 및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주요국 해외통관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현액 1억 5,2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백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수출기업 해외 통관애로해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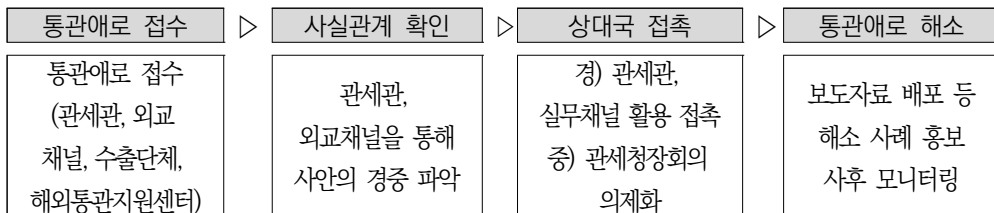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FTA 및 국제협력	2,149	2,149	-	30	2,119	1,985	-	134	1,950	1,950
수출기업 해외 통관애로해소	152	152	-	-	152	145	-	7	152	152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업은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관세관, 실무채널 등을 통한 접촉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세청장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해외통관애로 해소 절차]



자료: 관세청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531-300

최근 5년간 해외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애로 유형은 FTA 협정 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 등 특혜관세 적용 관련 사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해외통관 애로에 대응하여 매년 90% 이상의 해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통해 약 54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통관애로 현황]

(단위: 건,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건수(A)	161	150	151	151	122
FTA	115	131	113	132	103
통관절차	26	10	27	14	12
품목분류	13	6	9	-	5
기타	7	3	2	5	2
해소건수(B)	145	137	142	140	114
FTA	112	123	111	121	100
통관절차	25	9	25	14	11
품목분류	6	3	4	-	2
기타	2	2	2	5	1
해소율(B/A)	90	91	94	93	93
비용절감액	665	521	547	487	548

- 주: 1. FTA: FTA협정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또는 시스템 전산 오류를 이유로 FTA 특혜 관세 적용을 배제
 2. 통관절차: 현지 세관의 검사 또는 선적 작업 지연에 따른 통관절차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
 3. 품목분류: 관세당국 간 품목분류 해석 및 적용 이견으로 품목분류 코드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저세율 또는 고세율 적용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를 국가별·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현지 설명회 주제 선정, 해외 주재 관세관 활동,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의제 설정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 1억 5,2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주재국 통관환경 보고회 개최, 해외통관 애로 현지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 해외통관애로 해소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1) 수출기업 해외통관 애로 해소	152	145
(1-1) 주재국 통관환경 보고회	117	111
책자발간, 행사진행 등	41	41
행사장 임차료	34	34
행사참석 여비	35	29
오만찬 등	7	7
(1-2)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지지원	35	34
책자발간, 행사진행 등	9	9
파견관 사무실 임차료	10	9
국외여비	16	16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국제협력업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지원, 정보수집 및 제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²⁾하기 위해 2025년 말 기준 중국 3명, 미국 2명 등 8개 국가에 11명의 관세관을 두고 있다.

2)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임무)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담당지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담당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
2. 우리나라 휴대품 및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통관지원
3. 정보수집 및 제도 조사 등
4.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활용 지원 업무
5.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지원 및 이행관리
6. 해외 민원 처리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

[2025년 말 해외 관세관 배치 현황]

연번	주재국	지역	재외공관	인원(직급)
1	중국	북경	대사관	1명(4급)
2	중국	홍콩	총영사관	1명(4급)
3	중국	청도	총영사관	1명(5급)
4	미국	워싱턴	대사관	1명(4급)
5	미국	LA	총영사관	1명(4급)
6	일본	동경	대사관	1명(4급)
7	EU(벨기에)	브뤼셀	대사관	1명(4급)
8	태국	방콕	대사관	1명(4급)
9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1명(4급)
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사관	1명(4급)
11	인도	뉴델리	대사관	1명(4급)

자료: 관세청

한편 국가별 해외통관애로 현황을 보면 최근 애로 발생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집중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베트남 26건, 인도네시아 31건, 인도 48건으로 세 국가의 접수건수는 총 105건이며, 이는 전체 해외통관애로 122건의 86.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별 해외통관애로 현황]

(단위: 건)

구분		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인니	태국	EU	인도	일본	기타
'21	접수	39	1	1	23	30	1	4	52	-	10
	해소	37	1	1	20	28	1	4	48	-	4
'22	접수	12	1	1	26	26	6	3	63	4	8
	해소	12	-	-	24	25	5	3	59	4	5
'23	접수	30	4	1	34	27	9	2	34	1	9
	해소	29	4	1	34	27	9	2	31	-	5
'24	접수	9	3	1	15	40	3	1	75	-	4
	해소	9	3	1	14	37	3	1	69	-	3
'25	접수	6	-	-	26	31	6	4	48	-	1
	해소	6	-	-	24	30	6	4	43	-	1

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2016년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해외통관애로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료: 관세청

그러나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의 유형별 현황과 국가별 현황을 각각 관리하고 있을 뿐, 국가별·유형별 교차 현황은 별도로 분류·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FTA 관련 애로가 많고 국가별로는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에 애로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각 국가별로 어떤 유형의 애로가 반복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통관애로는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 배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절차,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심사 관행, 자료교환 시스템 운영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통관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인 경우에는 현지 세관의 검사·선적 지연 사례, 통관서류 요구 관행, 처리기간 등을 중심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분류 이견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HS 코드 해석 사례와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협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별·유형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 애로 발생국에 대한 대응이 일반적인 설명회 개최나 개별 사건 해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주재 관세관을 통한 상대국 접촉, 실무채널 활용, 현지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5년 설명회 개최 현황을 보면 주요 애로 발생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설명회 개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명회 내용도 상대국 통관제도 설명, 품목분류 분쟁 대응, FTA 활용 안내 등 일반적인 사항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점은 해외통관애로 대응이 국가별로 반복되는 애로 유형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기보다는 개별 애로 해소와 일반적인 제도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세청은 국가별·유형별 애로 현황을 교차분석하여 설명회 개최 국가, 설명 주제,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의제를 선정하는 등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통관애로 해소 관련 설명회 개요]

구분	내용
개최 국가	(‘21년) 멕시코(온라인) (‘22년) 이집트(온라인), 인도 (‘23년) 캄보디아(온라인), 브라질(온라인), 인도 (‘24년) 우즈베키스탄(온라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25년) 인도, 베트남
참여 대상	해외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참여 기업 수 및 참여 인원	(‘21년) 온라인 개최로 파악 불가 (‘22년) 인도(60명) (‘23년) 인도(22개사) (‘24년) 베트남(40개사 70명), 말레이시아(40개사 65명) (‘25년) 인도(79명), 베트남(58개사 70명)
설명 내용	해외 관세당국에서 자국의 통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관세청 관세행정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출기업 대상 품목분류 분쟁 대응 및 FTA 활용 안내

자료: 관세청

최근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³⁾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접수 단계부터 국가, 유형, 세부 원인, 관련 품목, 상대국 세관의 조치 사유, 해소 방식, 소요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유형별 교차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애로 발생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애로 유형을 분석하여 현지 설명회 주제, 기업 안내자료, 해외 주재 관세관의 활동계획,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양자협의 의제에 반영함으로써 해외통관애로 대응을 사후 해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2026.3.13.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 목표시간 단축 및 복구체계 강화 필요

가. 현황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¹⁾이란 국가 무역 물류 핵심 인프라인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와 관세행정 지능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638억 7,900만원 중 98.9%인 63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관세행정 정보관리	63,638	63,638	241	±21	63,879	63,160	-	719	63,129	63,129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 내에는 노후장비교체, 시스템 구축,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도입 및 세관 정보화 지원이 포함된다.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 내 내역사업 및 2025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내용	편성액	집행액
노후장비교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장비 교체	21,373	21,373
시스템 구축	전자통관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9,224	8,897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 등 도입	936	936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	8,045	8,045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441-500

내역사업명	내용	편성액	집행액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관 홈페이지, 정보분석, 내부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9,427	9,083
전산장비 도입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 정보 인프라 도입	5,436	5,421
세관 정보화 지원	통신망 사용 요금, 네트워크 공사 등 정보화 환경 지원	9,197	9,164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전자통관시스템의 대민·대외 서비스 성격과 최근 장애 발생 현황, 공공정보시스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복구목표시간 관리 강화 등을 고려하여 핵심 서비스별 복구목표시간(RTO)과 복구목표시점(RPO)을 설정·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등급 재분류 결과에 부합하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 요건확인,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대민·대외 서비스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시스템이다. 최근 5년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실적을 보면 전자문서 송수신 건수는 202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20억 건에 달하였다.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통관업무가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 내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실적]

(단위: 천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용 건수	9,380	9,882	11,191	12,934	12,887	
전자 문서	수신	503,452	481,328	528,676	610,407	650,515
	송신	1,023,935	991,456	1,158,620	1,331,555	1,370,973
합계	1,527,387	1,472,784	1,687,296	1,941,962	2,021,488	

자료: 관세청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²⁾하고, 공공정보시스템 등급체계를 국민영향도 중심으로 개편³⁾하였다. 개편된 등급체계는 A1부터 A4까지 구분하여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A1은 실시간 또는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편
분류기준	○1등급 : 90점 이상 ○2등급 : 85점 이상 ○3등급 : 80점 이상 ○4등급 : 80점 미만	○A1(국가 핵심) : 90점 이상 ○A2(대국민 필수) : 80점 이상 ○A3(행정 중요) : 80점 이상 ○A4(국민·행정 일반) : 80점 미만
측정치표	○업무 영향도 40% ○사용자 수 50% ○서비스 파급도 10%	○국민 영향도 70% - 서비스 중요도 50%, 서비스 연속성 20% ○사용자 수 10% ○서비스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
등급 확정	항목 합산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항목 합산 이후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자료: 행정안전부

[개편 등급 정의 및 재해복구 목표시간]

구분	정의	재해복구 목표시간
A1 (국가 핵심)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시스템	실시간~1시간 이내
A2 (대국민 필수)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어 상시적·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시스템	3~12시간 이내
A3 (행정 중요)	국가 핵심 또는 대국민 필수 서비스와 연계되어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사용자가 이용하는 행정 중요 시스템	1~5일 이내
A4 (국민·행정 일반)	국민·행정의 편의 증진과 정보를 제공하나, 사용 빈도가 적고,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진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	3주 이내

자료: 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 「'중단없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실현한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 2026.03.16.

3) 행정안전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2026.4.14

현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40개 정보서비스 중 기존 1등급 서비스가 18개이고, 수입통관·수출통관·수출입화물통관·징수·환급·여행자·FTA 등 대민·대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은 개편 등급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 서비스별 복구목표시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정보서비스 등급 현황]

구분	정보서비스
1등급 (18)	수입통관, 수출통관, 수출입화물통관, 특수통관, 통관위험선별, 심사, 징수, 환급, AEO, 조사, 공항만감시, 여행자, FTA, Mycustoms, 유관기관포털, 전자통관서고, 문서유통, 쟁송
2등급 (9)	통관단일창구, 통합고객부호관리, 품목분류분석, CIQ, 통합정보(CDW), 서비스운영관리, 모바일서비스, 전자통보, 사전검증
3등급 (9)	무역통계, 업무별 고유부호관리, 통합위험분석, 통합법규준수도, 정보자원관리, 정보화사업관리, 빅데이터플랫폼, 업무포털, 통합법령정보
4등급 (4)	국가간 자료교환, 고객관계관리 기술지원센터, 사후정제

- 주: 1. 업무 영향도(40%), 사용자 수(50%), 서비스 파급도(10%) 등을 지표로 1등급(90점 이상), 2등급(85점 이상), 3등급(80점 이상), 4등급(80점 미만)으로 구분함
 2. 현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을 통해 등급체계가 개편되었으나, 개편된 등급은 2026년 하반기 각 부처의 등급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자료: 관세청

특히 최근 3년간 관세정보시스템 장애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연계정보 송수신 불가 상태가 3,885분 지속되었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급증으로 접속 지연이 2,413분 발생하였다.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자체의 복구체계뿐만 아니라 외부 연계기관, 통신망, 접속량 급증 등 장애 유형별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3년 내 관세정보시스템 장애 현황]

연도	장애	장애내용	중단시간	원인 및 후속
2023	1	(1월) 유니패스 접속 지연	49분	SSL CPU 과부하에 따른 암복호화 지연 / SSL 정책 조정(국정자원)
	2	(2월) 관세행정 서비스 지연	11분	세션 WAS 비정상 동작으로 OOM 발생 / WAS 노드#2 재기동
	3	(3월) 유니패스 전자문서 송수신 지연	266분	웹방화벽 오류로 MAC 충돌 / 웹방화벽 정책 조정
	4	(4월) 전자문서 송수신 처리 지연	80분	세션서버 비정상 동작 / WAS 재기동
	5	(6월) 공항만감시 접속 불가	80분	배포 오류 / 소스 원복
	6	(10월) 전자문서 송수신 지연	275분	외부기관 다량의 신고서 전송 / 해당 기관에 건수 조정 요청
2024	1	(1월) 유니패스 접속 지연	156분	행안부 DDoS 공격의심 패턴 탐지 / 행안부 DNS 공격패턴 차단 정책 5→10자리로 완화
	2	(9월) 무역통계 홈페이지 접속 불가	28분	배포 중 DB Connection 에러 / DB Connection 정보 수정
	3	(11월) 무역통계 홈페이지 접속 장애	10분	특정 IP에서 파일 다운로드 중복 호출로 메모리 과다 사용 / WAS 재기동
2025	1	(4월) KT망 서비스 장애로 관세정보시스템 접속 불가	35분	KT망 장애 / KT에서 긴급 조치
	2	(9월) 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연계 정보 송수신 불가	3,885분	우정국 서버 소실 / 우정국 G-클라우드 서버를 구 서버로 복구
	3	(12월) C社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급증으로 접속지연	2,413분	접속 급증 / 자원 증설

자료: 관세청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애 발생 후 서비스를 어느 시점까지 복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RTO(Recovery Time Objective, 목표 복구 시간)와 장애 발생 시 어느 시점의 데이터까지 복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RPO (Recovery Point Objective, 목표 복구 시점)가 있다.⁴⁾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해 상시 운영 가능한 별도의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별 RTO와 RPO를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RTO와 RPO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후에야 설정할 수 있는 지표라기보다 장애 발생 시 허용 가능한 서비스 중단 시간과 데이터 손실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관리기준이므로,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이전이라도 핵심 서비스별 복구 우선순위와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결과, 재해선포 후 전자통관 프로그램 기동 시작까지 2시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서비스 확인을 거쳐 대민·관세행정 서비스 시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복구 훈련은 사전에 절차가 예정된 상태에서 실시되므로 실제 장애 상황보다 신속하게 대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단순한 프로그램 기동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주요 서비스가 재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훈련 과정에서 프로그램 기동, 데이터 정합성 검증, 주요 서비스 시연 및 대외 연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RPO와 RTO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개념	측정 요소	예시
RPO	장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얼마 전 시점의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어야 하는지	데이터 백업 주기, 동기화 주기, 로그 저장주기 등	RPO 1시간: 장애 발생 시 최대 1시간치 데이터 손실까지 허용
RTO	장애 발생 후 업무·서비스를 목표 수준까지 복구하는 데 허용되는 최대 시간	장애 인지 시간, 복구 절차 수행 시간, 서비스 재개 시간 등	RTO 4시간: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 서비스 재개 필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결과]

항 목		세 부 내 용	시간	주관
재해 선포	재해선포	• 재해선포 및 재해복구 가동 결정 국자원과 영상회의를 통해 재해선포사항 공유	10:00	정보데이터 정책관 (관세청)
재해복구 시스템 전환	전자통관 프로그램 기동 시작	• 재해복구 기동 완료 및 프로그램 구동 시작	12:00	시스템관리자 (국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정상가동 및 데이터 확인	• 재해복구 정상 가동 시작 - DBMS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서비스 확인 재해복구 정상 가동 유무 확인	12:00 ~ 14:00	시스템담당자 (관세청)
	재해복구 시연	• 대민·관세행정 서비스 시연 - 적재화물목록 및 수입 신고 등 주요업무 시연	15:00	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재해복구 종료	재해복구 훈련 종료	• 재해복구 훈련용 네트워크 제거	16:30	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단기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핵심 서비스별 RTO와 RPO를 설정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외부 연계기관 장애, 통신망 장애, 접속량 급증 등 장애 유형별 재해복구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의 중요도에 부합하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방안과 단계별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관세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376억 9,800만원이며, 8,379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2.3%인 7,730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649억 4,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737,698	737,698	737,698	837,956	773,016	64,940	-	92.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410억 8,8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7,27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737,698	737,698	741,088	727,378	1,259	12,450	98.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총수입 · 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19억 6,700만원 (6.0%)이 증가한 3,883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338억 4,800만원(△ 8.0%)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422,200	366,385	366,385	388,352	21,967	△33,84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9억 300만원(△ 2.0%)이 감소한 2,40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64억 6,800만원(△ 2.6%)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246,733	245,168	245,168	240,265	△4,903	△6,46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다.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조달청의 자산은 2조 5,826억 6,800만원, 부채는 115억 8,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5,710억 8,4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조 6,824억 2,000만원, 유·무형자산 8,939억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9억 900만원($\Delta 0.3\%$)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은행국가예금 감소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6억 9,700만원 감소하였고,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대체로 인한 선급금 감소 등으로 인해 기타자산이 843억 2,1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07억 3,300만원, 기타부채 8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8억 1,000만원(32.0%)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금융리스 계약 증가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27억 5,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582,668	2,589,577	$\Delta 6,909$	$\Delta 0.3$
Ⅰ. 금융자산	1,682,420	1,685,117	$\Delta 2,697$	$\Delta 0.2$
Ⅱ. 유·무형자산	893,931	813,821	80,110	9.8
Ⅲ. 기타자산	6,318	90,639	$\Delta 84,321$	$\Delta 93.0$
부 채	11,584	8,774	2,810	32.0
Ⅰ. 차입부채	10,733	7,974	2,759	34.6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851	800	51	6.4
순 자 산	2,571,084	2,580,802	$\Delta 9,718$	$\Delta 0.4$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2억 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180억 3,100만원, 관리운영비 316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익 2,933억 5,400만원, 비배분수익 812억 9,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710억원(36.2%) 증가한 △1,249억 6,600만원이며, 이는 조달사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 대비 217억 7,100만원 증가하였고,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49억 9,5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5,323	△112,315	36,992	32.9
가. 프로그램 총원가	218,031	196,260	21,771	11.1
나. 프로그램 수익	293,354	308,575	△15,221	△4.9
II. 관리운영비	31,655	32,642	△987	△3.0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81,298	116,293	△34,995	△30.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24,966	△195,966	71,000	36.2
VI. 비교환수익 등	△132,171	△213,399	81,228	38.1
VII. 재정운영결과(V-VI)	7,204	17,433	△10,229	△58.7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5,808억 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조 5,710억 8,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7억 1,800만원(△0.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102억 2,9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이익 △25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580,802	2,600,821	△20,019	△0.8
II. 재정운영결과	7,204	17,433	△10,229	△58.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	-	-
IV. 조정항목	△2,514	△2,586	72	2.8
V. 기말순자산(I-II+III+IV)	2,571,084	2,580,802	△9,718	△0.4

자료: 조달청

라.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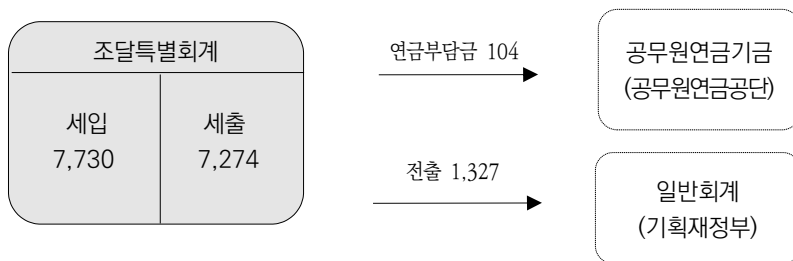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327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연금부담금 104억원을 전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자본계정 전출 사업**, ②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자본계정 전출 사업은 손익계정의 세입 감소를 감안하여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2,723억 6,400만원→2,639억 9,600만원)되었고,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 지연을 감안하여 관리용역비를 감액함에 따라 14억 600만원이 감액(158억 4,200만원→144억 3,600만원)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조달청은 ①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조달기업 Scale-Up, ② 공공조달 성장 사다리를 활용한 글로벌 도약 촉진, ③ 공공비축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2025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시설계약사업수입의 경우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납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기관별 미수납 발생 사유와 납부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납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소비축 재고순환비용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물량 대비 실제 비축량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26년에도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조달청은 품목별 수요, 유통구조 및 업체 참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소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운영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제품 시범사용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방식과 임차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실증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결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조달청 세입예산 관련 문제점 검토

1-1. 시설계약사업수입 장기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필요

가. 현황

시설계약사업수입 과목¹⁾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로서,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616억 5,000만원 중 90.1%인 555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시설계약사업수입	52,869	52,869	52,869	61,650	55,565	6,085	-	90.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시설계약사업수입 중 납부기한 도래 후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납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기관별 미수납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납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최근 5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 세입예산은 2021년 378억 6,900만원에서 2025년 528억 6,900만원으로 39.6% 상승하였다. 징수결정액 역시 2025년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4

동기간 대비 34.8% 증가한 616억 5,000만원이다. 다만 미수납액의 경우 2021년 22억 6,000만원이었으나 2025년 60억 8,500만원으로 169.2% 상승하였다.

[최근 5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2021	37,869	37,869	37,869	45,709	43,449	2,260	-	95.1
2022	38,917	38,917	38,917	46,321	43,023	3,298	-	92.9
2023	39,306	39,306	39,306	49,752	45,355	4,397	-	91.2
2024	40,686	40,686	40,686	61,033	55,189	5,844	-	90.4
2025	52,869	52,869	52,869	61,650	55,565	6,085	-	90.1

주: 추경은 추경 없을 시 본예산, 추경이 있는 해의 경우 각 연도 마지막 추경 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전체 미수납액 중 납부기한 도래 후 1년이 경과한 장기 미수납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수납액 대비 장기 미수납액 비중은 2021년 2.6%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어 2025년에는 34.7%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미수납액이 단기간 내 회수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장기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미수납액(a)	2,260	3,298	4,397	5,844	6,085
장기 미수납액(b)	59	69	647	1,496	2,112
비중(b/a)	2.6	2.1	14.7	25.6	34.7

주: 장기미수납액은 납부기간 도래 후 1년 이상 미납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2025년 기준 장기 미수납 상위 5개 기관의 미수납 사유는 모두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82건의 미수납 건수가 있고 이를 합산한 금액은 총 15억 8,600만원 수준이다.

[2025년 장기 미수납 상위 5개 기관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순번	수요기관명	건수	금액	사유
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2	1,586	시설부대비 부족
2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8	305	시설부대비 부족
3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1	82	시설부대비 부족
4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4	54	시설부대비 부족
5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44	시설부대비 부족

자료: 조달청

시설부대비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수용비, 여비, 감정평가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조달수수료 등 각종 부대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공사 규모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공사비 규모가 클수록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시설부대경비 요율표]

(단위 : %)

구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도로)	실시설계비(도로)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5천만원까지	3.35	6.42	3.02	1.08
1억원까지	3.19	6.09	2.85	0.90
2억원까지	2.69	5.11	2.26	0.72
3억원까지	2.53	4.78	2.06	0.72
5억원까지	2.36	4.46	1.89	0.72
10억원까지	2.17	4.07	1.66	0.63
20억원까지	1.97	3.71	1.53	0.36
30억원까지	1.88	3.54	1.48	0.36
50억원까지	1.80	3.41	1.45	0.27
100억원까지	1.71	3.24	1.41	0.25
200억원까지	1.61	3.06	1.37	0.23
300억원까지	1.57	3.01	1.35	0.23
500억원까지	1.50	2.90	1.33	0.23
1,000억원까지	1.45	2.79	1.30	0.23
2,000억원까지	1.39	2.70	1.28	0.21
3,000억원까지	1.37	2.64	1.25	0.19
5,000억원까지	1.32	2.58	1.23	0.17

자료: 조달청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의 조달수수료는 총공사비가 아니라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총공사비의 공사라도 계속비 공사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수수료가 산정되는 반면,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계약마다 조달수수료가 반복적으로 산정되어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2)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국가, 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공사계약 계약금액	~10억원	0.4	0.35	0.3	0.2	0.3	0.25	0.2	0.1
	10억 초과~ 50억원	0.3	0.25	0.2	0.1	0.15	0.12	0.1	0.05
	50억 초과~ 100억원	0.15	0.12	0.1	0.05	0.07	0.06	0.05	0.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0.07	0.06	0.05	0.02	0.04	0.03	0.02	0.01
	500억원 초과	0.06	0.05	0.045	0.015	0.035	0.025	0.015	0.01

주: 1. 초과분 체감 적용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4. C Type: 비PQ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자료: 조달청

특히 시설부대비는 조달수수료뿐만 아니라 공고료, 여비, 감정평가료, 측량수수료 등 다양한 부대경비를 함께 충당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조달수수료 부담 증가는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달청 역시 시설부대비 예산은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장기계속공사의 조달수수료는 차수계약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발생하므로 계속비 공사에 비해 시설부대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 (조달수수료 비교 예시)
 전체 1,000억 공사의 계속비 공사 : 0.82억
 7년 장기계속공사 : 1.68억 (1차 10억, 2차 50억, 3차 140억 4~7차 200억으로 발주된 경우)

미수납액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8년 이후 계속비 사업이 중단되고 장기 계속공사 방식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조달수수료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설부대비 효율은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제도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의 장기계속공사 발주 확대 역시 2018년 이후 지속되어 온 사항이다. 반면 조달청의 장기 미수납액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달청과 관계기관이 미수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달청의 장기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조달청은 장기 미납기관에 대한 별도 납부 촉구³⁾와 함께 2024년 및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미수납액 납부 방안을 협의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해소 방안은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기존 장기 미수납액의 해소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달청은 기관별 미수납액 규모, 발생 원인 및 장기화 가능성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장기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납부 대상, 납부 가능 시기, 재원 확보 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납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규 미수납액이 장기 미수납액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기관별 수수료 납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미납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수료 납부 여부를 조달계약 절차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최근 3년간 조달청은 2023년에 2회, 2024년에 3회, 2025년에 1회 등 총 6회 장기 미납기관에 별도로 공문을 보냄

4) 조달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미수납액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단기간 내 전액 납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시설공사계약 수수료는 우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이 종료된 장기 미납 건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시설부대비 증액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음

1-2.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과목⁵⁾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⁶⁾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제1항⁷⁾에 따라 조달전문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수요기관, 민간업체)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얻는 수입으로서,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억 3,4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730	730	730	534	534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전임교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관련 집합교육에 따른 예상세입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세입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 당시 대면교육 및 온라인교육에 따른 교육

5) 코드: 조달특별회계 69-691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7)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비 6억 5,200만원과 집합교육생 기숙사 제공에 따른 기숙사비 7,800만원을 합산하여 총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730	○교육비 : 652 (세부내역 870 × (1-0.25), 취소율 25%) - 30,000원×2일×11,000명(대면, 온라인) = 660 - 30,000원×3일×1,250명(대면, 온라인) = 112 - 30,000원×5일×650명(대면) = 98 ○기숙사비(예상) : 1일 사용단가 26,000원 × 연간 사용 횟수(3,000회)= 78
2026	730	2025년과 동일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4년까지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으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조달관리사⁸⁾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25년부터 유료 집합교육과 무료 이러닝교육을 병행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교육 교육비 1억 6,500만원과 기숙사비 1,100만원 등 총 1억 7,600만원의 세입을 추가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공공조달관리사 교육 관련 예상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세입	산출 내역
교육비	165	- 30,000원×2일×2,000명(대면, 온라인) = 120 - 30,000원×3일×250명(대면, 온라인) = 22.5 - 30,000원×5일×150명(대면) = 22.5
기숙사비	11	- 1일 사용단가 26,000원×예상 이용 연인원(420명)= 11

자료: 조달청

그러나 조달청의 계획과 달리 전임교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전임교수 인력만으로는 추가 집합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

8)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으로 2025년 3월 4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최초로 도입되었다.

달관리사 집합교육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교육비 및 기숙사비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조달교육수입은 예산액 7억 3,000만원 대비 1억 9,600만원 부족한 5억 3,4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6년에도 전임교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청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던 공공조달관리사 집합교육은 개설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조달교육수입 중 일부가 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달청은 집합교육 미개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상 교육비 및 기숙사비 수입을 세입예산안에 계속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전임교수 충원 여부, 집합교육 개설 가능성 및 실제 교육 운영 규모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조달교육수입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비축창고 재건축 집행관리 강화 및 유사 문제 발생 방지 필요

가. 현 황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¹⁾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축재고 확대 및 비축기지를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7,700만원 중 57.9%인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700만원을 이월하고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급망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477	477	-	-	477	276	117	83	3,072	3,072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7년까지 비철금속 비축목표 달성 및 야적 중인 알루미늄 창고 보관을 위해 필요한 총 실 비축 가능 면적을 약 95,000㎡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조달청은 실 비축 가능 면적으로 약 58,000㎡ 규모의 비축창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창고 재건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면적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비축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력과 비축사업 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경남 창원시에 연면적 6,000㎡ 규모의 비축창고를 재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최초 설계 당시 총사업비는 121억 2,7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7162-510

[경남 비축창고 최초 사업 설계 당시 사업 추진 계획]

사업배경	국가비상사태 시 물가안정과 수급 조절 및 원자재의 안정적 보관과 효율적 비축 사업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 확장 재건축
사업규모	○ 사업비 예산 : 12,127,000,000원 - 시 설 비 : 10,481,000,000원 - 설 계 비 : 473,000,000원 - 감 리 비 : 1,147,000,000원 - 시설부대비 : 26,000,000원
공사규모	○ 현장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부지면적 : 17,470.5㎡ ○ 연 면 적 : 6,000㎡ ○ 공사내용 : 창고시설 재건축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당초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차질이 발생하였기에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인허가 요건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안정적 관리와 장기 야적 원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5년 4월부터 경남비축창고 재건축사업의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상 설계용역은 2025년 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협의 등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2026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이후 조달청은 2026년 공사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일정을 계획하였다.

[조달청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 최초 추진 계획]

업 무 내 용	'25년				'26년				'27년				비고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약정체결	■													
용역 발주 협의, 입찰공고 및 계약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진행
설계용역 및 기타 기술용역			■	■										○용역기간 : 8개월 ¹⁾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							○공사 및 용역발주 협의
시설공사									■	■	■	■	■	○공사기간 : 15개월 (철거기간 포함)
건설사업관리 용역										■	■	■	■	○용역기간 : 16개월

주: 1) 사업비 협의(설계적정성 검토, 예산 등) 기간은 별도 반영됨
 자료: 조달청

다만, 경남비축창고 재건축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제2항²⁾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³⁾에 따라 지정된 중심상업지역이며,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⁴⁾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인허가 및 심의 요건 검토가 필요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창원시 경관조례」에 따르면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⁵⁾ 이에 따라 창원시 경관위원회는 경남비축창고 재건축사업에 대해 야간경관을 고려한 경관조명 설치를 조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조달청은 해당 조건 이행을 위해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⁶⁾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⁷⁾에서는 국가기관이 건축주인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⁸⁾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남비축창고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는 중심상업지역 내 창고시설의 건축 가능 여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7호는 중심상업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조달청은 해당 시설을 업무시설의 부속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창원시 경관조례」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2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해당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이에 따라 동 재건축사업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조달청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 공사 필요 사유 및 내용]

구분	사유	주요 내용
경관조명 공사	경관심의 조건 이행	경남비축창고 재건축 부지가 시가지경관지구에 위치하여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창원시 경관위원회가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조건으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경관조명공사 반영 필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중심상업지역 내 창고시설 단독 건축이 제한되어 업무시설의 부속건축물로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필요

자료: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조달청은 경관조명 및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에 필요한 추가 설계와 소요 예산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2026년 2월 3일 완료 예정이던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총사업비는 121억 2,700만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조달청은 경관조명 및 태양광 발전장치 관련 관급자재 구매비와 공사비 등으로 약 21억 4,9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예상 필요 증액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증액	변경	비고
공사비	10,481	2,004	12,485	경관조명 관급자재 33백만원, 태양광 관급자재 1,325백만원, 공사비 646백만원
감리비	1,147	143	1,290	
시설부대비	26	2	28	
설계비	473	-	473	
합계	12,127	2,149	14,276	

자료: 조달청

경관조명 및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필요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및 건축심의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면 사전에 확인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설계용역 기간 연장 및 공사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달청은 실시설계 변경, 인허가 협의 및 추가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건축심의 조건 및 추가 설비 설치 의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¹⁾의 내역사업인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사업은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비축기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7,600만원 중 61.6%인 1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000만원을 이월하고 6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5,007	15,007	171	±86	15,178	13,785	433	960	15,625	15,625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2,069	2,069	171	△64	2,176	1,341	230	605	3,483	3,483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비축물자의 특성상 장기 보관 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재고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업체 창고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타소비축 제도’²⁾를 운영하고 있다. 타소비축은 해당 비축물자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를 비축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가 조달청 비축물량을 추가로 보관하면서 제품 생산 시 이를 사용한 뒤 새로운 물품으로 다시 비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2023년부터 특정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의 일부를 무상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의 타소비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타소비축 참여 및 유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재고순환 비용³⁾을 지원하고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2)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수요기업에서 일정 비율 사용하고 보충하는 조건으로 보관하는 비축방식

3) 품목을 일정 기간 이상 창고에 보관해두면 결정생성 등 제품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주기적인 재고순환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이 지급하는 비용임

또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2025년~2027년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는 공공비축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타소비축 및 민간 자발적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제도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타소비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나. 분석의견

2025년 타소비축 재고순환비용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량 대비 실제 비축량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26년에도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조달청은 품목별 수요·유통 구조와 업체 참여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타소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운영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글로벌 공급망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발굴·비축하고 있다. 이 중 일정 기간 경과 시 제품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 보관이 어렵고 재고순환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비축기지가 아닌 민간업체 창고 등을 활용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타소비축 대상으로 관리·계획 중인 품목은 총 4개이다. 이 중 1개 품목은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비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비축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타소비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소비축품목 실적 및 계획 현황]

(단위: 톤)

품목	2025년 목표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2026년 계약 비축량	26년 5월 현재 비축량
○○○	13,500	6,000 ¹⁾	17,500	25,400	9,090
△△	6,000	6,000	6,000	-	-
□□□□	5,000	5,065	5,065	-	5,065
▽▽▽	10,000	-	7,500		-

주: 1) 25년 10월까지 13,508톤을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 2개사(7,508톤) 사업종료로 실적 감소

1. 경제안보품목은 보안상 기호로 기재함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타소비촉 계약을 체결한 비촉사업자에게 매년 재고순환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타소비촉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11억 901만원 중 5억 4,781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9.4%였고, 5억 6,120만원은 불용되었다.

[2025년도 타소비촉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재고순환비용	938,000	171,010	1,109,010	547,812	561,198	1,335,520
보관료	-	-	-	-	-	962,515

주: 조달청은 2026년부터 타소비촉 업체의 비용지원을 위해 보관료를 추가로 편성함
 자료: 조달청

타소비촉 계약상 비촉사업자는 평상시 비촉물량의 30% 이내에서 상시 대여가 가능하다. 이에 조달청은 당초 계약물량 중 상시 대여 가능 물량을 제외한 70%를 재고순환 대상 물량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재고순환비용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2025년 품목별 재고순환비용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불용액은 실제 비촉량이 당초 계획물량에 미달하거나 재고순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부 품목은 실제 비촉량이 계획 대비 낮아 재고순환비용 지급액이 감소하였고, 일부 품목은 지급 시기가 2026년으로 지연되었다. 또한 재고순환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업체 미참여로 타소비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지급 대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재고순환비용의 불용이 단순한 집행시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비촉물량 확보, 재고순환 이행, 업체 참여 여부 등 타소비촉 운영 여건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품목별 재고순환비용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구분 (단위)	2025년 예산편성(백만원)						2025년 예산집행(백만원)		
	계약 수량 ¹⁾ (톤)	재고순환 물량 (톤)	입· 출고료 (원)	입·출고 횟수 (회)	연지급 횟수 (회)	합계	집행	불용	비고
○○○	12,300	8,600	9,500	2	3	486	377	109	비측실적 저조
△△	6,000	4,200	9,500	2	1	80	-	80	26년 지급 ²⁾
□□□□	5,000	5,000	9,500	2	1	95	-	95	순환 미실시 ³⁾
▽▽▽	10,000	7,000	6,600	2	3	277	-	277	업체 미참여

- 주: 1) 당초 예산편성 당시 계약 목표량을 의미함
 2) 사업기간(25.11.~26.2.)이 만료되는 2026년에 재고순환 비용 집행(2026년 예산)
 3) □□□□은 품목 특성상 재고순환의 필요성이 적고 중국산 불산과의 가격경쟁력이 없어 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재고순환 미실시
 1. 재고순환비용은 재고순환물량(계약수량의 70%)×입·출고료×입·출고횟수×연지급 횟수로 편성
 자료: 조달청

따라서 타소비촉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규모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품목별 수요·유통 구조, 재고순환 가능성 및 업체 참여 유인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공모가 유찰되는 품목은 현행 타소비촉 방식이 해당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 미체결 품목⁴⁾의 경우 2024년 11~12월과 2025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비촉사업자 공모가 실시되었으나, 응찰 업체가 없어 현재까지 타소비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4년 공모는 주요 수입국의 비공식 수출 제한 조치로 신규 물량 구매가 어려워 유찰되었고, 2025년 공모는 향후 수출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고순환이 어렵고 비촉물자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유찰되었다.

4) 해당 품목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 등과 함께 화학비료의 핵심 원재료이며, 주로 복합비료에 많이 사용됨

[▽▽▽ 비축 공모 관련]

- (24.11.~12.) 7천톤(30일분) 2차례 비축사업자 공모 무응찰
 - 유찰사유 : 중국의 비공식 수출 제한 조치로 신규물량 구매 불가

- (25.6.~7.) 7천톤(30일분) 2차례 비축사업자 공모 무응찰
 - 유찰사유 : 중국의 수출 제한 가능성에 따른 재고순환 불가(비축물자 품질 저하)

자료: 조달청

이러한 사례는 특정 품목의 비축 부진이 단순히 업체 참여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의 수입 구조와 현행 타소비축 방식 간 정합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타소비축은 비축사업자가 일정 물량을 보관하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물량을 신규 물량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므로 안정적인 공급 경로와 주기적인 재고순환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반복 유찰 품목은 대외 공급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물량 확보와 재고순환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 비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⁵⁾

한편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조달청은 타소비축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관료를 신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는 재고순환비용 3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관료 9억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6년 5월 기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며, 일부 품목은 당초 계획 대비 실제 보관 재고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도 재고순환비용 및 보관료 등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물량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시로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어 현재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임

[2026년 타소비축 품목별 비축량 및 예산 집행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목표 비축량 ¹⁾	5월 기준 비축량	2026년 예산편성		5월 현재 기준 예산집행액	
			품목	예산액	품목	집행액
○○○	17,500	9,090	순환비용	931	순환비용	49.4 (5.3)
			보관료	632	보관료	47.2 (7.4)
△△	6,000	- ²⁾	순환비용	79.8	순환비용	79.8 (100.0)
			보관료	89	보관료	35 (39.3)
□□□□	5,000	5,065	순환비용	66	순환비용	- (0.0)
			보관료	121.9	보관료	41 (33.6)
▽▽▽	7,000	-	순환비용	258.7	순환비용	- (0.0)
			보관료	119.5	보관료	- (0.0)

주: 1) 목표 보유량은 예산 편성 당시 조달청이 제시한 수치임

2) 2026년 11월에 다시 비축할 예정

1. 괄호는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타소비축 사업의 집행 부진은 단순히 비용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품목별 수입 구조, 수요 변동성, 재고순환 가능성 및 민간 업체의 참여 유인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보관료 및 재고순환비용 지원 확대만으로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공모가 유찰되거나 비축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타소비축 방식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정부 직접 비축 등 대체적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결핵진단 ODA 사업의 KOICA 이관에 따른 성과 연계관리 필요

가. 현 황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¹⁾의 내역사업인 필리핀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은 혁신제품 지원을 통해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와 혁신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축적으로 국제 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2,000만원 중 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아태지역 전자 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644	2,644	-	-	2,644	2,399	214	31	4,534	4,534
필리핀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720	720	-	-	720	506	214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조달시장에 특화된 혁신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보유 조달기업을 ODA 사업과 연계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ODA 사업 참여 실적을 해외시장 레퍼런스로 축적하고, 향후 국제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신규로 내역사업을 편성하였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2

조달청은 결핵진단에 활용되는 휴대용 X-ray, AI 진단장비, 방사선보호 가운 등 혁신제품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할 경우, 수원국 내 보건의료 수요 대응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해외 사용 실적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외국 현장에서 혁신제품이 실제 활용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해외 조달 시장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업 취지는 2024년 비상경제장관회의²⁾에서 각 부처 ODA 사업에 혁신제품 매칭 및 지원을 확대하고, ODA 컨설팅 및 개발협력 혁신솔루션 기업 선정 시 혁신제품 기업을 우대하도록 한 정책 방향과도 연계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이 KOICA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달청 내역사업은 폐지되었으나, 2025년에 이미 집행된 사업성과와 당초 수립된 3개년 사업계획이 후속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 투입 예산의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달청은 KOICA와의 역할분담 및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5년부터 필리핀 보건부가 해외에 실증을 위해 공급되는 국내 혁신제품 중 결핵 진단에 활용성이 좋은 휴대용 X-ray 등의 확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요청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체계조사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결핵진단을 위한 기자재 공급, 관련 담당자를 위한 역량강화 비용을 반영한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 대한민국정부,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2024.2.26.)

[2025년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

사업내용	산출내역	편성액
1. 전문가 파견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경력 적용)		210,000
PM (전문가 등급 2급)	• 7,800,000원 x 6개월 x 1명 * 항공료, 체제비(현지 숙박, 식비 포함)	46,800
PL (전문가 등급 3~4급)	• 5,050,000원 x 6개월 x 4명 * 항공료, 체제비(현지 숙박, 식비 포함)	121,200
사업관리자 (전문가등급 5급)	• 4,200,000원 x 10개월 x 1명 * 항공료, 체제비(현지 숙박, 식비 포함)	42,000
2. 기자재 공급		450,000
혁신제품 등 구매 및 해외 통관·관리비용	• (휴대용X-Ray) 15,000,000 x 6개	90,000
	• (검출기) 12,000,000 x 6개	72,000
	• (보호가운) 378,000 x 20개	7,560
	• (노트북) 2,000,000 x 12개	24,000
	• (데이터) 17,150,000 x 1개	17,150
	• (AI진단장비) 80,000,000 x 3개	240,000
3. 역량강화		60,000
전문가 초청 경비	• 765,000 x 6일 x 5명 x 1회 * 항공료, 체제비(현지 숙박, 식비 포함)	22,950
연수경비	• 1,837,084원 x 20회 * 다과, 연수자료, 통역, 강사료 등 포함	36,741
총계		720,000

자료: 조달청

당초 조달청은 동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면서 1차년도에는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2차년도에는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전문가 교육, 3차년도에는 유관기관 교육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³⁾ 그러나

3) 관련 사업진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예산계획은 아래와 같다.

년도	주요 사업 내용
2025년도 (1차년도)	· 720 백만원 - 결핵진단 운영 고도화(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2026년도 (2차년도)	· 1,200 백만원 - 시범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 수립, 적용확산을 위한 전문가 대상 교육 운영
2027년도 (3차년도)	· 480 백만원 - 관련 유관기관 등 대상 교육 및 사업 평가

자료: 조달청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KOICA로 이관 편성됨에 따라 후속 사업의 주관기관이 변경되었다.⁴⁾

ODA 사업의 분절화를 완화하고 KOICA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KOICA로의 사업 전환은 무상원조 추진체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 다만 동 사업은 2025년에 이미 조달청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당초 3개년 계획에 따라 후속 시범운영 개선, 교육, 사업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주관기관 변경 과정에서 기존 실태조사 결과, 기자재 공급 내역, 수원국 협의사항, 제품 선정 기준, 성과지표 등이 KOICA 후속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청은 KOICA 이관 후에도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KOICA와 공문 송부, 기관 방문, 유선 협의 등을 통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한 협의 여부를 넘어, 기존 조달청 사업의 산출물과 집행성과가 KOICA 후속 사업의 사업계획, 제품 구매, 현지 적용, 성과평가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내 ODA 제품 공급액 및 혁신제품 공급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제품 공급 금액(a)	11,332	7,431	4,657
혁신제품 공급 금액(b)	339	3,442	2,338
비중(b/a)	3.0	46.3	50.2

주: 「법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2024.2.26.)의 주요 과제인 혁신제품 ODA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혁신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함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청에 따르면 사업 이관 검토에 따라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 컨소시엄 간 계약은 1차년도 과업⁵⁾을 대상으로 한 단년 계약으로 변경되어 KOICA가 이를 그대로 승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KOICA는 이관받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 수립, 과업범위 확정,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 발주, 사업수행자 선정 등 신규 계약

4) KOICA에 2026년도 관련 사업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됨

5) 조달청은 ① 사업수행자 선정, ② 현지조사, ③ 수원국과 협의의사록 체결 추진, ④ 시범 기자재 구매 등을 1차년도 과업으로 선정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므로 기존 과업내용, 수행체계 및 사업수행자 연속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차년도 핵심 과업인 협의의사록(R/D)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기 구매 기자재의 수원국 이양 등 1차년도 과업 종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KOICA에 따르면, 유사 사업의 통상 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 기획부터 사업수행자 선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2026년 내 예산 집행 및 실질적 사업 착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달청은 2025년도에 추진한 현지조사, 협의의사록 체결 협의, 시범 기자재 구매 등 1차년도 과업의 추진 경과와 산출물을 KOICA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후속 사업에서 기존 사업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¹⁾의 내역사업인 다수공급자 물품 계약 및 관리사업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한 가격·품질·계약을 관리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억 3,4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다수공급자 물품 계약 및 관리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5,007	15,007	171	±86	15,178	13,785	433	960	15,625	15,625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134	134	-	-	134	127	-	7	99	99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물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복수의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와 조달청이 협상을 거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해당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MAS 대상이 되는 품목은 ①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이며 많은 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제도 개요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대상 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목적	○ 수요기관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보장 ○ 많은 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 제공 ○ 조달기업 간 경쟁의 확대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자료: 조달청

MA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무구매제도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구매제도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려고 할 때, 해당 물자가 MAS가 체결된 경우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MAS를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²⁾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의무구매제도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구분	법적 근거	내용
의무구매제도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조달청장이 체결한 MAS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우대가격 유지의무	「조달사업법」 제13조	MAS 가격이 수요기관에 직접 공급 또는 시장 공급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하며, 우대가격을 위반한 경우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거래정지 및 환수 실시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해당 물품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단가 인하, 계약금액과의 차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거래정지 제재의 경우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이상 적발 시 6개월 거래정지가 이루어진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제재]

구분	거래정지(대상)	비고
1차 적발	1월(세부품명)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 3차 이상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횟수만큼 차기 계약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
2차 적발	3월(세부품명)	
3차 이상 적발	6월(세부품명)	

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

그리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나. 분석의견

MAS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모니터링 체계와 의무구매 구조만으로는 시중가격과의 괴리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조달청은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구매 범위와 가격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MAS 도입 초기부터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업체의 자율적 가격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되어 왔다.³⁾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시중가격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등 모니터링 필요성

3) 2026년 2월 감사원 정기감사 당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의무구매에 따른 고가 구매 등 수요기관 선택권 제약 발생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됨

이 높은 품목을 선정한 후, 해당 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단가와 시장거래가격을 비교·점검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⁴⁾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단가와 시장거래가격 간 차액이 계약단가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계약부서에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MAS 시중가 모니터링 관련 내용]

구분	내용
모니터링 인원	3명
모니터링 절차	매년 MAS 물품 중 대상 품명을 선정하여 시중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¹⁾ 등 연 2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품명 수	(‘21년) 57 → (‘22년) 60 → (‘23년) 65 → (‘24년) 66 → (‘25년) 72
품목 선정 기준	① 시중가격 변동성이 큼 ② 시중거래가 활발 ③ 규격이 단순·비교 가능 ④ 쿠폰 등 할인행사가 빈번 ⑤ 민원·감사·신고 등 이슈가 있는 품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의심 기준	{ (계약단가-시장거래가격)/계약단가 } × 100 > 3%

주: 1) 가격비교사이트(네이버, 에누리, 다나와), 시중오픈마켓(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시중 종합몰(롯데ON, 신세계몰, 갤러리아몰, 현대H몰, GS SHOP, CJ온스타일, SK스토아, KT알파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AK몰, 동원몰) 등을 모니터링
자료: 조달청

그러나 현행 가격 모니터링은 대상 범위와 사후조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조달청의 2025년 기준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는 15,048개로 전체 MAS 품목 수 대비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고가 의심 건수는 109건이었으며, 해당 의심 건수 중 단가인하 26건, 거래정지 4건 등 총 30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MAS 품목 수가 2025년 기준 96만 4,559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된 인력과 예산만으로 전체 MAS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최근 5년간 MAS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조치 실적]

(단위: 개,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MAS 품목 수	649,416	722,817	751,873	874,553	964,559
MAS 품명 수	904	957	956	968	1,012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	14,673 (2.3)	13,218 (1.8)	13,338 (1.8)	12,939 (1.5)	15,048 (1.6)
모니터링 대상 품명 수	57 (6.3)	60 (6.3)	65 (6.8)	66 (6.8)	72 (7.1)
고가 의심 건수	56	71	85	124	109
단가인하 건수	7	20	12	35	26
거래정지 건수	-	1	-	-	4

주: 괄호는 MAS 전체 품목 수·품명 수 대비 모니터링 대상의 비율을 의미
자료: 조달청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외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직권 모니터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센터의 총 신고건수는 연평균 27.2건이며, 이 중 실제 신고조사로 이어진 건수는 연평균 11건에 그치고 있다.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⁵⁾하였음에도, MAS 제품의 경우 수요기관이나 일반 소비자가 계약단가와 시장거래가격을 직접 비교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외부 신고를 통한 가격관리 보완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5) 제재 분야 포상금 단가를 20% 인상하는 내용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를 개정함(2026.4.30 시행)

유형	당초	변경	인상액
거래정지·과징금 또는 제재 3개월 이하	50만원	60만원	10만원
제재기간 3개월~1년	70만원	85만원	15만원
제재기간 1년 초과	100만원	120만원	20만원

[최근 5년간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센터 신고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신고건수	32	22	11	58	13
신고조사 건수	14	11	4	17	9
포상금 지급액	-	1,457,950	953,300	9,164,730	7,392,460

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시점과 포상금 지급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달청

또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수요기관이 체감하는 가격 적정성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달청은 할인행사가 빈번하거나 시중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단가와 시장거래가격 간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런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시장거래가격을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직접 판매가격 또는 총판 공급가격이 MAS 계약단가와 유사한 수준인 경우, 시중 온라인몰 등에서 일시적으로 더 낮은 소비자가격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고가 의심 건수 검토 사례]

물품명	계약단가	시중가	납품수량	납품금액	이미지
도구보관캐비닛 (HCB-5, 900×535× 1835mm)	105만원	73만원	3	315만원	
계약부서 검토 결과					
<p>우대가격 위반 아님</p> <p>총판과의 계약 단가는 MAS 단가와 유사한 수준</p>					

자료: 조달청

이러한 점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모니터링만으로는 MAS 가격 적정성 논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계약상대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적정성을 관리하는 장치이나, 수요기관의 구매 관점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즉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구매 가능성이 확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의무구매 구조로 인해 시중에서 더 낮은 가격의 물품을 확인하더라도 별도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단순히 가격 모니터링 인력 확대나 신고 활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품목별 특성, 가격 변동성, 민간시장 경쟁 여건, 수요기관의 구매 선택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의무구매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시범사업은 118개 세부품명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의무구매가 아닌 자체구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MAS 가격관리의 사후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선택권 확대를 통해 가격경쟁 및 품질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자체구매가 확대될 경우 공공조달의 통합 계약관리 기능이 약화되거나, 품질·납품 안정성·사후관리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구매 허용 품목에서 실제 구매가격이 MAS 계약단가보다 낮아졌는지, 수요기관의 만족도와 구매 편의성이 개선되었는지, 품질·납품·사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자율계약 전환 시범운영 내역]

대상 기관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포함)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년간)
대상 품목	118개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¹⁾
프로세스	

주: 1) 데스크톱컴퓨터, 레이저프린터, 공기청정기 등 전기전자제품군 위주 품목
 자료: 조달청

한편 조달청은 2006년 MAS 도입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의 조달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MAS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국 사례와 제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주요국의 유사 조달제도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MAS 계약 품목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를 의무화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캐나다와 영국 등은 집중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구매 방식을 적용하고, 그 외 품목은 수요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조달제도는 각국의 조달시장 구조, 공공기관 구매 자율성, 계약 관리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내 MAS 제도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MAS 제도가 도입 이후 장기간 운영되어왔고 가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만큼, 조달청은 주요국의 조달제도 운영 방식, 국내 MAS 가격관리 실태, 품목별 경쟁 여건, 수요기관 구매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의무구매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MAS 계약 품

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무구매를 적용하기보다는 집중 조달을 통한 가격·품질 관리 필요성이 큰 품목과 민간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수요기관이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MAS의 의무구매 범위 조정 및 가격 관리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사업¹⁾의 내역사업인 공공혁신 조달사업은 제안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을 평가하여 지정한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494억원 중 99.4%인 49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다.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²⁾의 내내역사업인 혁신제품 임차료 사업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따른 혁신제품을 다년도에 걸쳐서 임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조달청이 임차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원 중 3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공혁신 조달사업 및 혁신제품 임차료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49,706	49,706	-	-	49,706	49,391	314	1	82,706	82,706
공공혁신 조달사업	49,400	49,400	-	-	49,400	49,086	314	-	82,400	82,400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5,007	15,007	171	±86	15,178	13,785	433	960	15,625	15,625
혁신제품 임차료	3,500	3,500	-	-	3,500	3,363	137	-	1,500	1,500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2026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jmh@assembly.go.kr, 6788-4663)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7-433

2)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하며 진행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주: 유형1은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을 의미하며 유형2는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혁신제품 지정 및 임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특성과 실증 목적에 따라 구매 방식과 임차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기술성·시장성·혁신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하여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시범구매계약 금액은 2021년 440억원 수준에서 2025년 529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21~2025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지정유형	지정 수	시범구매계약		
			제품 수	기관 수	계약금액
2021	소계	623	166	392	440.6
	유형1	458	69	154	190.0
	유형2(공급자)	136	79	209	196.9
	유형2(수요자)	29	18	29	53.7
2022	소계	606	166	436	460.5
	유형1	414	83	236	213.7
	유형2(공급자)	173	75	188	226.3
	유형2(수요자)	19	8	12	20.5
2023	소계	284	245	478	478.6
	유형1	172	143	261	230.6
	유형2(공급자)	97	84	192	206.9
	유형2(수요자)	15	18	25	41.1
2024	소계	422	236	455	526.2
	유형1	282	119	217	274.4
	유형2(공급자)	116	100	210	196.4
	유형2(수요자)	24	17	28	55.4
2025	소계	494	302	549	529
	유형1	303	161	293	262.4
	유형2(공급자)	176	125	228	218.1
	유형2(수요자)	15	16	28	48.5

자료: 조달청

다만 조달청은 직접 구매 방식만으로는 일부 혁신제품의 실증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임차 방식을 도입하였다.³⁾ 조달청에 따르면 임차 방식은 ①고가 제품, ②다수 기관의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③유지관리 부담이 큰 제품 등 구매 방식만으로는 공공부문 실증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 활용될 수 있는 보완적 지원방식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혁신제품 구매 예산을 330억원 증액(전년 대비 66.8% 증액)한 반면, 혁신제품 임차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원 감액(전년 대비 57.1% 감액)하는 등 구매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임차 방식의 경우 사용기간 종료 후 제품 회수, 반납, 설치 해체 및 재배치 등의 절차가 수반되고,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실증 종료 후 지속 사용이 제한되어 만족도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임차 방식의 운영상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임차 방식은 수요기관의 계속 사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제품 회수·원상복구·유지관리 책임·장애 대응 등 구매 방식과는 다른 사후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 방식의 운영상 한계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임차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차 방식은 제품 특성과 실증 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될 경우 고가 장비, 다기관 시범사용 제품, 기술 변화가 빠른 제품, 유지관리·운영지원이 필요한 제품 등의 공공부문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임차 방식의 확대 또는 축소 여부가 아니라, 임차 방식이 구매 방식보다 실증 효과가 큰 제품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있다.

2025년 혁신제품 임차계약 51건을 검토한 결과, 임차 혁신제품은 대부분 계약 금액이 5억원 미만이었으며, 제품 설치·해체 및 회수가 필요한 하드웨어 기기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일부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 방식과 임차 방식 간 실증기관 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임차 방식을 통해 다수 기관의 시범사용 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적외선 카메라, 공기살균기, 휴대용 정전기 측정기, 전기 자전거, 얼음 정수기 등 일부 제품은 조달청이 당초 제시한 ①고가 제품, ②다수 기관의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③유지관리 부담이 큰 제품이라는 임차 방식의 적용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조달청, 「조달청, 임차 시범구매 본격 시행…혁신제품 실증기회 확대」, 2025.3.17.

[혁신제품 임차계약 내역 현황]

(단위: 개)

구분	내용		
고가 장비 여부	5억원 이상 ¹⁾		
	5억원 미만		
HW/SW 여부	HW 제품		
	SW 제품		
제품별 평균 실증기관 수	HW 제품	구매	평균 1.9개 기관 실증
		임차	평균 2.5개 기관 실증
	SW 제품	구매	평균 1.6개 기관 실증
		임차	평균 1.5개 기관 실증

주: 1) 고가 장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조달청은 내부적으로 5억원 이상의 제품을 고가 제품으로 보고 있음

자료: 조달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달청은 2025년 임차계약의 운영 성과와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품 가격, 다기관 실증 필요성, 기술 변화 속도, 설치·회수 비용, 유지관리 부담, 지속 사용 가능성, 후속 구매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활용 가능성이 높고 수요기관의 계속 사용이 예상되는 제품은 구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고가 장비, 다기관 단기 실증이 필요한 제품, 기술 변화가 빠른 제품, 유지관리·운영지원이 필요한 제품은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제품의 특성과 실증 목적에 따라 구매 방식과 임차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구매방식과 임차방식의 우선순위 검토 비교]

구분	구매방식 우선 검토	임차방식 우선 검토
수요 특성	특정 수요기관의 장기·상시 사용 필요성이 명확한 제품	다수 기관의 단기 실증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제품
제품 특성	설치 후 해체·재배치가 곤란하거나 원상 복구 비용이 큰 제품	이동·재배치가 쉽게 가능하거나 실증 장소 변경에 따른 효용이 큰 제품
기술 변화	기술 변화 속도가 완만하고 장기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	기술 변화가 빠르거나 성능 검증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제품
비용 구조	구매 후 장기 사용 시 총비용이 낮은 제품	고가 제품으로 구매 시 예산 부담이 크고 단기 실증 수요가 큰 제품
유지 관리	수요기관이 자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품	공급자의 유지관리·운영지원이 실증 성과에 중요한 제품
후속 활용	실증 이후 동일 기관의 지속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	실증사례 축적 후 다른 기관의 후속구매 연계가 중요한 제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조달청은 2025년 임차계약의 운영 성과와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품 가격, 다기관 실증 필요성, 기술 변화 속도, 설치·회수 비용, 유지관리 부담, 지속 사용 가능성, 후속 구매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활용 가능성이 높고 수요기관의 계속 사용이 예상되는 제품은 구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고가 장비, 다기관 단기 실증이 필요한 제품, 기술 변화가 빠른 제품, 유지관리·운영지원이 필요한 제품은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제품의 특성과 실증 목적에 따라 구매 방식과 임차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개별 계약의 집행관리 기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매 예산과 임차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구매 방식이 적합한 제품군과 임차 방식이 적합한 제품군의 예상 수요, 제품 유형별 실증 필요성, 전년도 집행성과 및 후속 구매 연계 실적 등을 분석하여 구매 예산과 임차 예산을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산정 근거가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특정 방식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증감하기보다 전년도 집행성과와 제품 유형별 실증수요에 근거하여 구매 예산과 임차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르면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⁴⁾ 그리고 동 규정 제37조에 따라 혁신제품평가 심의회를 통해 시범사

4)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일 시작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차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5)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는 혁신제품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당초 기대한 성능과 효과를 발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완료보고서에는 제품의 활용 실적, 사용성과, 개선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단순한 사후 제출자료가 아니라 시범사용 성공판정, 후속 구매 확산, 제품 개선, 소유권 이전 등 사후관리 절차의 전제가 된다.

그런데 최근 5개년 완료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기한 내 제출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는 68.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시범사용 종료 이후에도 완료보고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성과확인 및 성공판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완료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해당 제품의 시범사용 결과가 적기에 정리되지 못하고, 성공판정 이후 필요한 후속 구매 확산, 제품 개선사항 반영, 소유권 이전 등 사후관리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완료보고서 제출대상(a)	96	391	466	464	474
기한 내 제출(b)	96	391	455	367	323
기한 후 제출	-	-	11	97	135
미제출	-	-	-	-	16
기한 내 제출률(b/a)	100.0	100.0	97.6	79.1	68.1

주: 2024년 이전 미제출건은 전부 처리완료(기한 후 제출)되었으며, 2025년 미제출건은 진행 중임
자료: 조달청

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5)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37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36조에 따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최초 연차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②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될 때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시범사용기관의 현장 여건, 제품별 실증기간의 차이, 사용실적 정리 및 내부 검토 절차 등으로 인해 일부 완료보고서 제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제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출 지연 사유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시범사용 종료 전 사전 안내, 제출 예정일 관리, 지연기관 대상 독촉 및 보완 요청, 반복 지연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단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출 지연 사유를 분석하여 기한 내 제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가 적시에 평가되고, 후속 구매 확산 및 사후관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서 수요기관별로 상반된 실증 결과가 제시된 사례가 확인되어 다른 수요기관의 구매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은 실증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결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혁신제품의 규격과 단계별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테스트 항목별 충족 여부, 효율성·실효성·편의성·안전성·혁신성에 대한 평가, 시범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능 및 사용환경상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다른 기관에서의 활용가능성과 성능만족도에 대한 종합의견이 수록된다. 이러한 내용은 시범사용을 하지 않은 다른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자체예산으로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해야 하고 최대한 일관되고 충실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수록 내용]

- 완료보고서 요약
 - 혁신제품명, 규격명, 기업명
 - 시범사용 단계별 진행사항
 - 시범사용 단계별 결과검토
- 성능 테스트 결과
 - 테스트 항목별 충족 여부
- 혁신제품의 우수성 평가
 - 제품의 효율성 및 실효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혁신성
- 시범사용 중 문제점
 - 혁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사용환경 및 조건, 편의성
 - 공급기업의 지원사항
- 종합의견
 - 향후 다수 공공기관에서의 활용가능성
 - 제품에 대한 성능 만족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일부 제품의 경우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서 해당 제품의 성능, 향후 활용가능성, 성능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실외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가로등과 같은 실외 구조물에 설치하여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제품인데, 동 제품에 대한 결과보고서 3건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시범사용 한 후 A 기관, B 기관, C 기관이 2022년 또는 2023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3건을 살펴보면, 동일 제품에 대한 성능 실증 결과가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A, B 기관은 동 제품이 실외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혁신성이 없고, 다른 기관에서의 활용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성능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43점, 30점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C 기관의 경우 동 제품이 미세먼지 저감성능을 충족하며, 혁신성이 있으므로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성능만족도는 90점을 부여하였다.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내용 비교]

구분	A 기관	B기관	C 기관
시범사용 진행상황기록	충실함	충실함	보통
성능 테스트	실외에서 미세먼지 저감 zone을 형성하지 못함	미세먼지 저감효과 거의 없음	미세먼지 저감성능 충족
혁신성 평가	실외 미세먼지 저감효과 낮음	실외 저감효과 거의 없고 실내용 공기청정기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혁신성 없음	야외 활동이 많은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주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음
사용환경 및 사용자 편의성	편의성은 높으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필요	우수함(시공 간편)	우수함(시공 간편)
향후 활용가능성	없음	없음	있음
성능만족도 (100점 만점)	43점	30점	90점

자료: 각 수요기관,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사용 결과보고서」(2022, 2023)를 요약

물론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특성상 테스트 환경과 시점에 따라 제품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제품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시범사용을 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에서 제품의 성능과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할 경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려는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한 기관은 제품을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다른 기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면, 수요기관으로서는 구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 자체를 보류하거나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결과보고서의 상반된 의견이 테스트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능 테스트 방법·조건 등을 표준화하여 그 결과의 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는 수요기관에서 성능 테스트 절차가 부적절하였거나 실제보다 관대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 몇 개의 제품만 선별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경우 이와 같이 실증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시범사용 결과보고서가 후속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 방법의 표준화와 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결과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